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5. 9.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목 차

I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 1

1. 구성경위	1
2. 구성현황	3
(1) 위원명단	3
(2) 직원명단	4

II 국정조사 활동개황 / 5

1. 조사목적	5
2. 조사범위	6
3. 조사방법	7
4. 조사대상기관	8
5. 조사기간	10
6. 소요경비	10
7. 기타	10
8. 조사일정	11
9. 증인 및 참고인	12
(1)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2
(2) 증인 및 참고인 세부 현황	14
(3) 증인 고발 현황	24

1. 기관보고 (9월 10일)	25
(1) 국무조정실	25
(2) 행정안전부	35
(3)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47
(4)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60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6
(6)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75
(7) 청주시	98
(8) 대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포함)	112
(9)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129
(10) 소방청	138
(11) 금호건설	147
(12) 일진건설산업	155
(13) ㈜이산	156
2. 현장조사 (9월 15일)	162
(1) 궁평2지하차도	162
(2) 충북도청	177
(3) 유가족 간담회	190
3. 청문회 주요 신문(질의)·답변 요지 (9월 23일)	199
(1) 미호강 기존 제방 절개 및 임시제방 관련 사항	199
(2) 미호강 하천관리 책임 관련 사항	204

(3) 참사 직전 지하차도 교통통제 관련 사항	207
(4)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체계 관련 사항	208
(5)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대책 관련 사항	222
(6) 검찰 수사 관련 사항	227
(7)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사항	243
(8)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사항	246
(9) 기타 사항	252

IV | 종합의견 / 258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위	258
2.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	260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270
4.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279
5. 시정·처리요구 사항	283
6. 위증 및 불출석등 고발의결사항	286
7. 기타 논의사항	28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국정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I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 가. 2024년 8월 28일 이연희·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됨.
- 나. 2025년 7월 23일 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회부함.
- 다. 2025년 8월 27일 제42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함.
- 라. 2025년 8월 27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행정안전

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승인함.

2. 구성 현황

(1) 위원 명단

(2025. 8. 기준)

구 분	위 원	비 고
더불어민주당 (13인)	신 정 훈 윤 건 영 권 칠 승 김 성 회 모 경 중 박 정 현 양 부 남 위 성 곤 이 광 희 이 상 식 이 연 희 이 해 식 채 현 일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인)	서 범 수 고 동 진 박 덕 흙 박 수 민 이 달 희 이 성 권 주 호 영	간사
조국혁신당(1인)	정 춘 생	
기본소득당(1인)	용 혜 인	

※ 위원 사보임 현황

· 한 병 도 → 이 연 희 (2025.08.29, 더불어민주당)

(2) 직원 명단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행정안전 위원회 (23인)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정 순 임	
	전문위원(이사관)	조 문 상	
	전문위원(이사관)	나 아 정	
	행정실장(서기관)	윤 여 문	
	입법조사관(부이사관)	황 지 현	
	입법조사관(부이사관)	김 현 숙	
	입법조사관(서기관)	홍 선 기	
	입법조사관(서기관)	이 영 주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조 명 식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상 준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기 연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재 승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구 진 회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동 길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 다 영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김 경 훈	
	입법조사관(행정주사)	황 아 람	
	행정관(행정주사)	백 승 운	
	행정관(행정주사보)	조 예 린	
	주무관(행정주사)	이 화 자	
	주무관(사무주사)	권 현 라	
	주무관(사무주사)	임 현 숙	
	실무원	박 소 연	

1. 조사목적

2023년 7월 15일 오전, 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10여 분 만에 약 6만 톤의 물이 약 5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급속히 유입되었음. 이로 인해 차량에 타고 사람들은 탈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하지만 참사 이후 이뤄진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및 검찰조사는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고, 참사의 원인과 지휘, 책임을 밝히기 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참사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유가족,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 가.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다.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 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 라.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 마.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바.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역 주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 사.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 청주시
- 대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포함)
-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홍덕경찰서 포함)
- 소방청
-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o 기타기관

- 금호건설
- 일진건설산업
- (주)이산

-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 2025. 8. 27. ~ 2025. 9. 25. (30일)

가. 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청문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6. 소요경비

○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7. 기타

○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8. 조사일정

회의차수(일시)	주요 활동	비고
제428회 제1차 (‘25. 8. 27.)	○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제429회 제1차 (‘25. 9. 1.)	○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의결 ○ 기관보고 요구의 건 의결 ○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결 ○ 청문회 실시의 건 의결 ○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 실시의 건 의결 ○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	
기관보고 (‘25. 9. 10.)	○ 기관보고 -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충청북도(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 청주시 -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포함) - 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청주홍덕경찰서 포함) - 소방청 - 금호건설 - 일진건설산업 - ㈜이산	
제429회 제2차 (‘25. 9. 10.)	○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 ○ 증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 의결	
현장조사 및 유가족간담회 (‘25. 9. 15.)	○ 현장조사 및 질의응답 실시 ○ 유가족간담회 실시	궁평 제2지하차도 방문
제429회 제6차 (‘25. 9. 23.)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제429회 제7차 (‘25. 9. 25.)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증인 및 참고인

(1)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9. 10.(수) 기관보고

- 증인 현황

(단위 : 인)

소 속	기관장	부서장 등	계
국무조정실	1	1	2
행정안전부	1	9	10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3	2	5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2	2	4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1	10	11
청주시	1	3	4
대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포함)	2	2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4	5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홍덕경찰서 포함)	3	3	6
소방청	1	2	3
금호건설	1	1	2
일진건설산업	1	-	1
(주)이산	1	-	1
계	19	39	58

- 참고인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9. 23.(화) 청문회

- 증인 현황

(단위 : 인)

구 분	기관장	부서장 등	계
행정안전부	-	1	1
금강유역환경청	-	1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1	1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1	9	10
청주시	1	1	2
청주지방검찰청	-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	2
소방청	-	1	1
금호건설	1	2	3
(주)이산	1	-	1
계	4	19	23

- 참고인 현황 : 5인

(2) 증인 및 참고인 세부 현황

□ 9. 10.(수) 기관보고 증인 명단

1. 국무조정실

직 위	성 명	비 고
국무조정실장	윤 창 렬	
前 국무조정실장	방 문 규	

2. 행정안전부

직 위	성 명	비 고
장관	윤 호 중	
前 장관	이 상 민	불출석
前 기획조정실장	하 병 필	불출석
前 재난관리실장	이 한 경	
前 재난협력실장	이 용 철	
前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 용 수	불출석
前 안전관리정책관	박 일 응	
前 재난대응정책관	김 용 균	
前 재난복구정책관	박 천 수	
前 자연재난대응과장	박 정 호	

3.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장관	김 성 환	
前 장관	한 화 진	
금강유역환경청장	송 호 석	
前 청장	조 희 송	
금강홍수통제소장	조 효 섭	

4.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장관	김 윤 덕	
前 장관	원 희 룡	불출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방 윤 석	
前 청장	엄 정 희	

5.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도지사	김 영 환	
前 행정부지사	이 우 중	
前 재난안전실장	박 준 규	
前 균형건설국장	강 성 환	
前 자연재난과장	홍 명 기	
前 도로과장	강 종 근	
前 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석 식	
前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장 창 훈	
前 대응총괄과장	한 정 환	
前 119종합상황실장	양 찬 모	
前 청주서부소방서장	서 정 일	불출석

6. 청주시

직 위	성 명	비 고
시장	이 범 석	
前 기획행정실장	이 상 료	
前 안전정책과장	최 원 근	
前 하천과 직원	오 가 영	

7. 대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총장 직무대행	노 만 석	
前 총장	이 원 석	불출석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 향 연	
前 검사장	배 용 원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 위	성 명	비 고
청장	강 주 엽	
前 청장	이 상 래	
前 시설사업국장	박 상 옥	
前 광역도로과장	오 진 수	
前 광역도로과 주무관	성 혼 수	

9.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서부경찰서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청장 직무대행	유 재 성	
前 청장	윤 희 근	
충청북도경찰청장	김 학 관	
前 청장	김 교 태	
청주홍덕경찰서	이 봉 균	
前 서장	정 희 영	

10. 소방청

직 위	성 명	비 고
청장	허 석 곤	
前 청장	남 화 영	
前 119종합상황실장	박 근 오	

11. 금호건설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조 완 석	
前 대표이사	서 재 환	

12. 일진건설산업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신 민 철	불출석

13. (주)이산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이 현 상	

□ 9. 23.(화) 청문회 증인 명단

1. 행정안전부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장관	이 상 민	불출석

2. 금강유역환경청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청장	조 희 송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청장	엄 정 희	증인 철회

4. 충청북도 (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직 위	성 명	비 고
도지사	김 영 환	
행정부지사	이 동 옥	
안전정책과장	오 유 길	
前 재난안전실장	박 준 규	
前 자연재난과장	홍 명 기	
前 119종합상황실장	양 찬 모	
前 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석 식	
前 도지사 수행비서관	여 운 현	
前 자연재난과 직원	박 상 준	
前 자연재난과 직원	이 한 울	

5. 청주시

직 위	성 명	비 고
시장	이 범 석	
前 안전정책과장	최 원 근	

6. 청주지방검찰청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수사본부장	박 영 빈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청장	이 상 래	
前 청장	김 형 렬	증인 철회

9. 소방청

직 위	성 명	비 고
前 청장	남 화 영	

10. 금호건설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조 완 석	
前 대표이사	서 재 환	
상무	최 선 호	

11. (주)이산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이사	이 현 상	

□ 9. 23.(화) 청문회 참고인 명단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	최 희 천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김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前 광역도로과 주무관	성 혼 수	
충북인뉴스 기자	김 남 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염 형 철	

(3) 증인 고발 현황

□ 위증 증인 고발 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고 발 의 결 일	비 고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2025. 9.25.	

□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고발 현황 : 없음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1. 기관보고 (9월 10일)

(1) 국무조정실

(가) 보고 내용

I. 재난대응체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은 재난 유형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전반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토록 규정

*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풍수해 → 행안부, ▲황사 → 환경부, ▲산사태 → 산림청 등)

-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안부 장관이 수행(‘재난안전법’ 제6조)
- 국무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및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심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발생 시 단계별로 지대본 → 중수본 → 중대본 가동
 - (중수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고 재난관리 총괄
 - (지대본) 지자체는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수습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를 가동
 - (중대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안부에 중대본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조정

(법 제14조 제1항)

- **효과적 재난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 행사 가능***(법 제14조 제3항)

* 이 경우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 차장을 맡아 국무총리 보좌

◆ **재난발생시 국무총리실 역할**

- 인명·재산 피해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총리께 보고
- 인명·재산 피해 정도에 따라 ‘국무총리 긴급지시’ 작성·배포
- 상황점검회의 개최 및 현장(중앙재난상황실 또는 재난현장) 방문 실시

II. 주요 조치사항

1. 사고 전 조치사항

- ‘23.7월 집중호우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3회)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7회) 등 조치
- 오송 참사 당일 △국무총리 긴급지시* 시달(06:50)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개최(08:30) 등 조치
- *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일원에 집중호우가 지속,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지역이 증가, 하천 범람 및 제방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
→ 행안부·환경부·지자체 등은 경보 및 대피체계 점검 및 사전대피 조치할 것

2. 보고 상황

- 08:37 최초 119 신고 접수
- 09:56 소방청 → 행정안전부 최초 보고*
 - * 지하차도 내 차량 3대가 고립되어 있고 구조 활동중
- 11:26 소방청 → 국무조정실 최초 보고(유선)*, 지하차도 내 다량 침수 가능성 및 소방대응 2단계 발령 등 통보
 - * 청주 수난사고 발생, 8명이 지하차도 밖에 나와 있는 상태
- 11:53 행안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상황 보고(국무총리·국조실장 등)

3. 사고 후 조치사항

- 참사 발생 이후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3회(7.15(토) 14:30, 21:00, 7.16(일) 08:30) 개최, 참사 현장 방문(7.16(일) 16:30) 실시
- 오송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7.20(목) 12:00)
- ※ 국무조정실장 오송 참사 사고 현장 점검(7.19(수) 14:00)

4. 감찰조사 실시

조사 개요

- (기간) '23.7.17(월) ~ 7.26(수) < 10일간 >
- (주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 (대상) 행복청, 경찰청, 충북도, 청주시, 소방청, 환경부 등
- (목적) 오송 공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및 책임 규명

조사 결과

① 사고 발생 원인

- **(사고)** '23.7.15(토)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붕괴(08:09)되고 강이 범람하여 550여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 유입(08:27경)·침수(08:40경)
- **(원인)** △기존 제방 무단철거 후 임시제방 부설시공(선행 원인)과 △사고 당일 유관기관의 비상대응 부실로 발생

②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

- **(행복청)** 임시제방 불법시공 관리·감독 부실, 제방붕괴 인지 후 대처 미흡
- **(충청북도)**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로 교통통제 미 실시
- **(충북경찰청)** 112신고 접수 후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처럼 허위 처리
- **(청주시)** 미호강 범람 위기상황을 통보받고도 보고·전파 누락
- **(충북소방본부)** 범람 현장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부실 대응

후속 조치

- **(수사의뢰)** 검찰 수사의뢰 36명(공직자 34명 + 공사현장 관계자 2명)
- **(기관통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 요구 63명
- **(인사조치 건의)**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자 5명*
 - * ▲행복청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경찰서장 ▲청주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Ⅲ. 사후 대응 현황

1.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범정부 TF 구성, 지하차도 침수 관련사항을 포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
⇒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23.12.7) 통해 발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 내용

- 산사태·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지역 추가 발굴, 위험지역 내 개발 허가 기준 개선 등 위험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시·군·구 상황실 전담인력 확보, 위험정보 부단체장 직보체계 확립, 대응 훈련·교육 실시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 마련
- 재난정보 통합 모니터링, 모바일 상황실 구축,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통한 재난 예측 등 재난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 방재기준 개선 및 시설별 설계기준 강화, 하천·급경사지·저수지 등 재해 예방사업 확대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강화

2.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 TF 운영

-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국무1차장 주재 종합대책 TF 운영중('25.7~)
- 기후 탄력형 SOC 전환, AI 기반 대응체계 구축 등 종합 대책 마련 중(9월말 발표 예정)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 TF」 개요

※ 자연재난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대통령(국무회의), '25.7.22)

- (구성) 단장 : 국조실 국무1차장, 부단장 :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1개반 4개 분과, 분과별 반원으로 부처* 국장 참여

※ 행안·농식품·환경·국토부, 경찰·소방·산림청 등

- (운영) 각 분과장 중심으로 책임운영, 각 분과회의는 분과장 자율 운영
으로 수시 개최하되 전체회의는 격주 개최
- (계획) 대통령 보고를 거쳐 대책 최종안 마련(9월말)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감찰조사 관련

- (질의) 참사 이후 국조실은 7월 17일부터 7월 26일 동안 공직 복무관리관실을 통해서 행복청, 경찰청, 충북청, 청주시, 소방청, 환경부 등을 감찰조사 한 것이 맞는지?
 - (답변) 맞음. 17일부터 열흘 간 조사하였음.
- (질의) 감찰이 종결되기 전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지? 왜 경찰이 수사할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지?
 - (답변) 확인해보겠음. 당시 현장 라인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감찰을 실시한 것임.
- (질의)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 13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팀이 10일 간 수사한 것을 중단시키고 검찰로 옮긴 것은 아닌지?
 - (답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권한 없음.
- (질의) 국무조정실에서 빠르게 움직인 이유와 관련하여 상급부서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 (답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임. 위에서 전화를 받거나 한 적은 없음.
- (질의) 오늘 국정조사는 2023년 7월 발표된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함. 충북도를 예로 들어보면, 재난

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대책팀장, 심지어 자연재난과 8급 주무관에 대한 감찰 결과까지 나와 있음. 그런데 왜 충북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는지?

- (답변) 감찰 대상의 문제로, 국무조정실의 감찰은 행정부 내의 통제를 목적으로 함.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감찰한 결과나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당사자임.
- (질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장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상황 관리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은 왜 빠져있는지?
- (답변) 감찰 대상과 법적 책임은 좀 차이가 있음.
- (지적) 국무조정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넘겼다고 생각함.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충북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8급 주무관에 이르는 실무자들 이야기만 제시한 것이 잘못된 시작임. 유가족들께서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함.
- (질의) 민주당 위원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 (답변) 감찰활동을 하면서 그런 의도는 없었음. 경찰 관련 인원들의 비위 사실로 경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됨.

② 참사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관련

○ (질의) 임시 제방이 붕괴되어 물이 넘쳐서 지하도로 들어갔고, 지하도를 제때 막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임. 제방 공사에 관계했던 사람, 감리한 사람 책임이 큰 것은 맞는지?

- (답변) 맞음.

○ (질의) 지하도로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차들이 지하도 안에 갇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도로관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 (답변) 맞음.

○ (질의) 직접 관련되는 기관인 청주시, 충북도, 행복청, 경찰 등이 종합적으로 책임 대상이 되는 것인지?

- (답변) 복합적으로 모든 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질의) 물이 넘쳐서 지하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전국에 다 체크하고 대비를 하셨는지? 홍수주의보나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통행을 막는 조치 등을 포함해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그 당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에 사전에 차단하는 설치 기준도 정하고 시설도 확충해 나갔음. 통행을 막는 조치 등도 포함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③ 기타 사항

○ (질의) 그 당시에 감찰조사를 하고 총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

뢰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국정조사를 하고
있음. 왜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피해자와 유족들에 한 점 궁금증을 남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고 원인 규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2) 행정안전부

(가) 보고 내용

I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개요

□ 발생 개요

- **(일시)** '23. 7. 15. (토) 08:40경(궁평2지하차도 완전 침수 시각)
-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 **(피해)**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명피해 30명 발생(사망 14명, 부상 16명)

□ 참사 원인(국조실 감찰결과^{'23.7.28.})

-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선행 요인
- 호우경보·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 관련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대처 미흡

II

주요 대처사항

1. 초기 주요 대응

- **(상황관리)** 최초 상황접수('23.7.15. 09:56, 소방청 → 행안부) 이후 지자체·유관기관에 상황과악·관리 요청
- **(상황전파)** 소방청 비상대응 2단계 발령 통보(11:26)에 따라 긴급단체문자 2단계 발송(11:53)
- **(점검회의)** 국무총리 주재('23.7.15. 14:30, 21:00), 중앙대책본부장 주재(15:30, 18:00), 대통령 주재(19:00) 점검회의 개최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7.9~27일 호우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기간)** 집중호우 대처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3.7.9~27., 총 19일)
- **(내용)** 집중호우 대비 중앙대책본부 단계 상황*, 회의 소집 및 지시사항 전파, 피해지역 현장방문 등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조하여 호우 대응

* 중대본 1단계('23.7.9. 14:30), 중대본 2단계('23.7.11. 15:40), 중대본 3단계('23.7.13. 20:30)

□ 참사 전후 조치사항

- **(참사 이전)** 참사 전일 중앙대책본부장 일반 지시사항 전파('23.7.14. 18:46) 및 점검회의 개최(21:00), 참사 당일 일반 지시사항 전파('23.7.15. 06:53, 08:04) 및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 개최(08:30)
- **(참사 이후)** 신고접수 내용, 조치·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에 따라 장비·인력 동원 요청 및 긴급 지시사항 전파('23.7.15. 13:10)

Ⅲ

참사 이후 주요 추진사항

-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23.12.)
- ◇ 지하차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국토부 공동 TF 운영('23.8~11.)

1.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현장 작동성 개선

- **(지하차도)**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진입 통제기준 마련, 침수우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추진
- **(상황관리)** 시·군·구 상시 상황실 구축*, 비상시 상황실 책임자 국장급 지정
 - * (상시 상황실 구축현황) '23.1.49개 → '23.12.110개 → '24.12.127개 → '25.8.171개
- **(교육·훈련)**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대응하는 READY Korea 훈련 실시(연 4회), 자치단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 방재기준 개선 및 지방하천 직접정비

- **(방재기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하천·하수도 등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추진
- **(하천정비)**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정비 추진

2. 지하차도 관리체계 개선

□ 지하차도 제도개선을 위한 행안부·국토부 공동 TF 운영

- **(배경)**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 발굴 추진
- **(내용)**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지하차도 담당제 운영 등 관리지침* 개선, 침수피해 예방시설 설치 긴급 재정지원 등 추진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참고] 지하차도 관리체계 개선사항

□ 침수 시 통제기준 및 대응계획 마련

- 주변 하천 수위, 시우량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별 침수통제 기준 마련 및 최대침수심 15cm 이하로 규정
- 배수펌프 미작동, 처리용량을 초과한 지하차도 내 물고임, 관련기관에서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 진입차단설비를 작동하여 통제

□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 및 진입차단시설 확대

- 침수우려 지하차도 대상 4인 담당자(공무원 2, 경찰 1, 민간 1) 지정 및 위험기상 시 사전통제
- 하천 인접 또는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U자형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방재등급 1·2등급 → (개선) 1·2등급 및 3·4등급 중 U자형이면서 위험지역 내 지하차도

IV

향후 중점 추진사항

- ◇ 9.1일 출범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참사 피해자·유가족과 지속 소통
- ◇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조하여 유가족 요청사항 이행 추진

1. 피해자 · 유가족과의 소통 강화

- 국가적 참사 유가족 경청행사(‘25.7.16., 대통령 주재) 당시 유가족 요청으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설치
*(9.1., 정원 10명)
- 경청행사 이후, 유가족협의회 7·8월 정기회의(‘25.7.19., 8.23.) 참석과 수시회의를 통해 유가족 의견 청취 및 지원책 논의

2. 유가족 요청사항 이행 및 향후 계획

- 관계기관* 점검회의(‘25.7.9., 7.30.)를 통해 심리상담센터 선별·지원, 추모조형물·현판 설치, 피해·회복 실태조사 참여자 모집 등을 추진
 -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건복지부, 충청권트라우마센터, 충청북도 등
-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25.9.~‘26.2.)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대책 마련 추진
- 참사 피해자·유가족과 정기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 이행방안 지속 논의

< 유가족 주요 요청사항 (8.23. 기준) >

-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신설 및 재난 유가족 지원 안내서 제작
- 유가족 피해·회복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추진 및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 실시
- 유가족 대상 전문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마련 및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심리상담 지원,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을 위한 상담방안 마련
- 추모조형물·추모현판 설치, 추모공간 마련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 (질의) 대형참사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이나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그 예에 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행안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 유가족 및 피해자 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다른 참사 피해자분들과 똑같이 진행하려 하고 있음.
- (지적) 무안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유가족 지원이 강화된 법으로 알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지적)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했는데, 유가족 측과 같이 잘 의논을 하셔서 유가족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질의) 피해자 지원단을 9월 1일에 설치함.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 (답변) 피해자와 유가족 심리치료, 추모사업, 유가족 모임 공간 등을 지원함. 확실한 치유의 방법은 진실을 밝히는 것임.
- (질의) 피해자 심리지원 결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성과 진심이 없는 상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없었던 탓으로 보이고,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

답을 위한 인력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광역 심리 지원 센터의 인력들이 가서 상담을 한 것인데, 이게 공주에 있다보니 청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음.

②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 (질의) 충청북도와 같이 과도한 높은 기준(50cm)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를 보면, 호우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지하차도를 의무적으로 통제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지하차도 침수 기준을 각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권고함. 위험 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통제 기준 상한선 제시와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것이 맞는지? 전수조사 해서 유사한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는?
- (답변) 오송 참사 이후 침수심 통제 기준을 30cm으로 다시 강화하였음. 지적사항에 동의하며 침수통제선뿐 아니라 다른 사안들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음.
- (질의) 재난관리기금을 전용해서 민생회복쿠폰 예산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데 알고 있는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방지해주시길 바람.
- (답변)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옮겨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남은 부분을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옮겨서 해당 기금에서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함.

○ (지적) 차단 기계가 있더라도 지하차도가 깊고 침수 가능한 곳은 가까운 기관인 파출소나 동사무소든 어느 정도 정보가 나면 직접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할 것임.

○ (질의) 오송참사 등과 관련하여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상 모호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 (답변) 동의함. 오송뿐 아니라 참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께서 희생당하신 사고임.

○ (질의) 피해자 지원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하게 되는 재난원인 조사는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 (답변) 수사와 별개로 전문가들과 유족 분들의 추천 등으로 조사단을 만들 계획임.

○ (질의) 수사를 이유로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았고 백서도 만들지 않았음. 최대한 빨리 작성해주시기 바람.

- (답변) 이번에 재난원인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재난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착수하게 될 것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쳐서 백서 발간까지 하도록 하겠음.

○ (질의) 충북의 재난 대응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행안

부 평가에서 충북도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형식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함. 입장 표명 부탁함.

- (답변)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 평가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지적) 재난안전통신망(PS-LTE)는 1조 4천억 원을 들였지만 실제 재난 때 무용지물이었음. 전체 579만 분을 통화했는데, 기관 간 통화는 2,300분, 0.9%밖에 하지 않았음. 나머지 66%는 전기 교신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일에 그침.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함.
- (지적) 재난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임.

③ 재난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관련

- (질의) 행안부에서 오송 참사 직전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실시 공문을 충북 재난대책본부에 전파했는데, 당시 지자체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했는지?
- (답변) 14일 오후 재난 대응 3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 재난대책본부가 상시 가동되어 모든 재난 대응 업무를 통제해야 했음. 지자체장은 관할을 벗어나지 않고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했음.

○ (질의) 김영환 충북지사가 비상단계 별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서울에 간 일정은 적절한가? 비상 2단계, 3단계 시점에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 (답변) 2단계 때에 출발했더라도, 3단계로 격상된 시점에는 임지로 복귀했어야 함.

○ (질의) 당시 행안부가 충북도지사에게 경고 조치에 그친 점에 대한 의견은?

- (답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비함.

(3)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가) 보고 내용

I. 환경부 업무 추진체계

- **(조직)** 물관리 일원화('18.6) 이후 환경부는 하천관리, 홍수대응 주무부처
 - '18.6월, '22.1월 두차례에 걸쳐 수자원·하천 업무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는 하천 관리, 홍수 예보 등 홍수 대응 본격 추진
 - ※ ('18.6) 수자원 업무 이관(수자원정책국, 홍수통제소), ('22.1) 하천 업무 이관(지방청 하천국)
 - 환경부 본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5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천국, 4개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상황 관리 및 하천정비, 홍수예보 담당
- **(하천관리)** 국가하천은 환경부,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하천관리청
 - **(유지·보수)** 국가하천 중 5대강 본류* 유지·보수는 환경부 시행, 미호강 등 국가하천 지류 및 지방하천은 지자체 소관(하천법 제27조)
 - * (주요 국가하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 유지·보수 업무에는 하천공사 현황 및 불법 점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 포함(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4조, 환경부령)

< 하천별 관리 책임 주체 >

구 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본류	지류	
하천공사	국가		지자체
유지·보수	국가	지자체	지자체

- **(하천점용)** 국가하천 구역 내 하천시설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는 환경부,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에 대한 허가는 지자체 위임
 - ※ (국가)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 (지자체)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 **(홍수대응)** 전국 223개 홍수특보 지점에 대해 하천수위, 홍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홍수예보·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 전파

* 홍수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하천범람 위험수위(계획홍수위) 도달시 대국민 안전안내문자(CBS) 신속 전파

- **(홍수취약지구)** 국가하천 주변 홍수피해 발생 우려지역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수립('22년)

* 시설개선 등, ** 전문가 합동점검 강화,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대피 계획 마련 등

II.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환경부 조치현황

- **(사고개요)** '23.7.15일 집중호우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주관 '미호천교 확장공사*' 중 설치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

* (공사내용) 미호천교 확장(4→6차선), (시행기관) 행복청(주관), 금호산업(시공사), 이산(감리)

- 하천 범람으로 인근 궁평2지하차도 등 침수피해(사망 14명, 부상 16명)

□ **(하천점용)** 행복청에 '미호천교 확장공사' 하천점용 허가('18.4, 국토부 대전청)

- 이후, 공사내용 변경(기존교량 활용→철거 후 신축) 및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제방 안전관리* 등 조건으로 변경허가('21.3 국토부 대전청, '22.11 환경부 금강청)

* 세차례 하천점용 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제방)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조건 부여

□ **(하천공사)** 해당 구간에서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공사' 중이었으나, '미호천교 확장공사' 등에 따라 일시중지('20.2, 국토부 대전청)

* (공사내용) 미호강 병목구간(병천천 합류부)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폭 확대(350m → 610m), (공사기간) '17.3~'25.12, (시행기관) 금강청(주관)

- 당시 청주시에 하천정비공사 일시중지 통보('20.4, 국토부 대전청)

※ 미호강은 국가하천 지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자체에서 시행

□ **(홍수대응)** '23.7.15일 집중호우 시, 환경부(금강홍통)는 홍수특보* 발령 전 파하고, 청주시, 행복청 등 관계기관에 하천범람 위험수위(계획홍수위) 도달 정보 제공

* (홍수주의보) 계획홍수위 50% 도달(7.14 17:20), (홍수경보) 70% 도달(7.15 4:10)

- **(홍수특보)** 경찰청 등 67개 기관에 FAX로 전파, 경찰청 등 24개 기관 189명에게 SMS로 통보, 안전안내문자(CBS)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알림

- **(추가조치)** 하천범람 위험수위(계획홍수위 100%) 도달 시 청주시(홍덕구)에 유선통화, 사전에 수요조사한 행복청 등 5개 기관(97명) SMS 전파(7.15 6:33)

Ⅲ.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

①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 ☐ **(하천점용)** 제방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용 허가 시 기술자 문 및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점용허가기준 개정('24.4)
- ☐ **(홍수취약지구)** 전문기관(하천협회) 참여하에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본조사 및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23.12)
※ 금강청은 '23.9월 추가조사를 통해, 사고 구간을 포함한 8개소를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
- ☐ **(하천공사)** 미호강 임시제방 보강('24.1) 및 이중제방 설치(~'24.6), 홍수특보 지점 확대(미호강 여암교 신설)로 사고 재발 방지
- ☐ **(지류·지천)** 홍수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고, 지류·지천** (배수영향구간), 노후제방 등에 대한 정비 강화
* ('24.10) 신규 8개소, 연장 2개소 ('25.1) 신규 8개소, 연장 2개소 승격
** ('24.2)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411개소를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정비

② 신속·정확한 홍수상황 전파

- ☐ **(AI 홍수예보)** 전국 223개 하천 지점(지류·지천 포함)을 대상으로 시각화된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 홍수예보 본격 시행('24.5~)
 - 신속한 예보로 주민 대피 등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한 시간 추가 확보
※ (기존) 대하천 중심 75개소, 3시간 전 예보 → (개선) 중소규모 하천 확대 223개소, 6시간 전 예보

- **(부단체장 유선통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계획홍수위 도달 등 비상시 **홍수통제소장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유선통보하도록 전환**(23.8~)
 - ※ 추가로 음성메세지(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전달 체계 다양화
- **(대국민 알림)** 홍수특보 발령 시 **본인 위치 기반 안전안내문자(CBS)**를 **대국민 발송**하고(24.5~), 운전자 **홍수위험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24.7~)
- **(홍수안전강조주간)** 자연재해대책 기간(5.15~10.15) 전 **홍수안전강조주간(4월말)**을 **운영**하여,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참고1

환경부 물관리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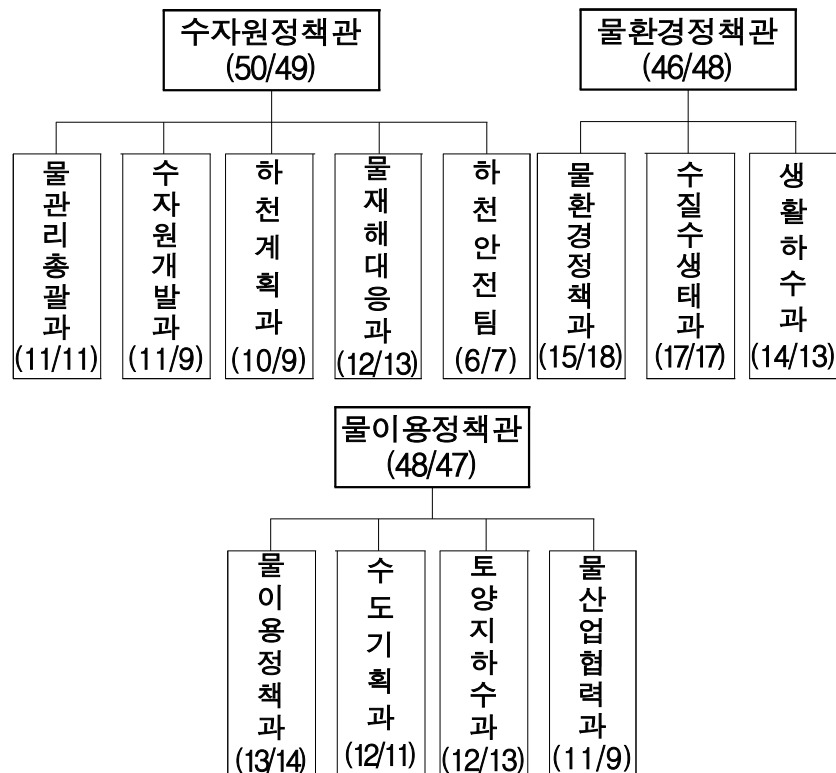
- **물관리 조직 연혁(물관리일원화 이후)**
 - **수량·수질 일원화로 수자원정책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18.6)
 -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이관
 -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체계로 재편**(19.5)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지원단 신설**(20.1)
 - **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물관리정책실 신설**(21.6)
 - **하천업무 일원화로 하천계획과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22.1)
 - *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도 7개 유역지방청으로 이관

○ 물관리 정책 이행기반 강화를 위해 물관리정책실 조직 개편('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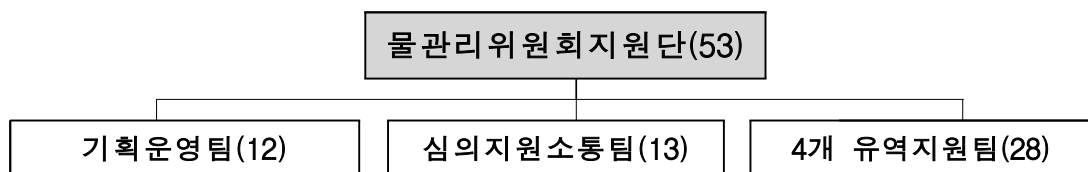
* (가구) +1과1팀(물재해대응과, 하천안전팀), (정원) +17명(본부 +8, 유역지방청 +5, 홍수통제소 +4)

□ 물관리정책실(1실 3정책관 11과 1팀)

(현원/정원)



□ 물관리위원회지원단(1단 6팀)



* 설치근거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참고2

환경부 홍수 대응체계

□ (역할) 물관리 주무부처로서 하천·수자원·상하수도에 대한 정책 수립

- (홍수대응) 기상청 예보(호우·태풍 특보 등)를 바탕으로, 홍수예보를 통해 위험상황을 전파하여, 지자체·관계기관이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

【 홍수대응 기관별 역할 】

기상청	• 기상관측 및 예보, 호우주의보·경보 발령
↓	
환경부(본부)	• 매년 홍수대책 수립, 각 기관 준비상황 점검 등 총괄조정 •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각 기관 비상근무 체계 유지 • 전국단위 홍수상황 총괄 지휘(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 등 활용) • 홍수안전강조주간 운영(4월 마지막주) → 대국민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홍수통제소 (4개)	• 홍수특보지점(223개소) 및 홍수정보지점(933개소) 유지·관리 •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 대국민 및 관계기관 전파* * 음성메시지(VMS), 직접통화 - 지자체 부단체장 직접통보 - SMS(단문메시지), FAX, 안전안내문자(CBS), 내비게이션 등 • 도시침수예보(6개소) 실시 • 댐, 보, 저수지(지자체·농공) 수문 방류 승인
유역(지방)청 (7개)	• 국가하천 CCTV(2,781개소) 구축, 운영 및 모니터링 • 홍수취약지구(799개소) 지정 및 관리 • 국가하천 관리 및 재해복구사업 실시
수자원공사	• 홍수기 전 댐 사전 방류를 통해서 물그릇 확보 • 댐 시설 관리 및 수문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중 기상청 호우특보 발령시 각 기관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	
지자체	• 현 장 조 치 : 주민 대피, 하천 출입통제 등 • 지방하천 관리 : 하천공사·점용현장 등 점검·관리 등 • 하수 도 관 리 : 빗물받이 청소,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 (비상근무) 기상상황에 따라 “위기경보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을 발령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홍수 상황 관리

□ 홍수대책 주요내용

◆ (핵심방향)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 (홍수위험 신속인지) AI를 활용하여 홍수상황을 예측하고, 지능형 CCTV 시범도입* 및 댐·하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 홍수기 전 국가하천 CCTV 2,781개소 중 약 1,000여개소에 대해 시범도입

- (홍수정보 전파) 하천수위 '심각' 단계 도달시 대국민에게 안전안내 문자 신속 전파하며, 운전자 홍수 위험지역 진입시 내비게이션 안내로 안전운전 유도

※ (기존)^{예측수위}홍수특보 지점 주의보·경보 시 대국민 전파 → (개선) ^{실측수위}홍수정보 지점도 전파

- (취약지역 대비 강화) 홍수취약지구를 집중 관리하며, 홍수위험지도 제작·배포 및 도시 침수를 방지하는 종합·기본계획 수립으로 취약지역 사전 대비 강화
-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 전 중점치수시설 및 홍수취약시설을 일제점검하고, 도시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관리강화**

- * 하수관 확대,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107개 사업 3,138억 원 투자
- ** △빗물받이 점검·청소 현황 점검,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기간 운영,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조사 등
- (홍수기 댐 대응역량 제고) 홍수기 전까지 사전 방류하여 다목적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위성 감시 강화 등으로 접경지역의
행락객 대피시간 확보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미호강 하천 관리 책임 관련

- (지적) 당시 오송 참사가 날 때 경상북도에서 산사태가 나서 23명이 돌아가시고 2명의 실종이 있었음. 그 때의 집중호우는 기후위기가 가져온 기록적인 대홍수였음. 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45명이 기소가 되고 2명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43명은 아직 재판중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겠지만 부실한 제방 관리와 또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음.
- (질의) 임시제방이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원인처럼 보이는데 환경부가 임시제방을 감리하거나 감찰할 권한은 없는지?
 - (답변) 이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허가에 대한 요구와 실제 행위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임.
- (질의) 환경부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된 사람은 없는지?
 - (답변) 있음.
-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실질적인 사업 지배 및 운영에 대해 법적 적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하천관리 주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국가하천은 환경부가 직접 관리,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지류는 지자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질의) 사고의 주요 원인인 임시제방의 경우 법상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 (답변) 국가하천의 지류 부분은 지자체 소관이며 임시 제방은 안전점검의 대상임. 유지보수는 안전점검도 포함되는 것으로 지자체 책임으로 보임. 현행법상으로는 충북도 소관인데 조례에 의해 청주시에 재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책임자가 지자체장인지 환경부장관인지 모호함.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규명돼야 함. 이후 조직 확대개편으로 환경부가 원전도 관리하게 되는데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 (답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유지보수 주체와 관련하여 보완설명 드리자면 동 지역의 경우 하천공사가 2020년부터 중지된 상황이었고, 이 경우 유지보수 주체는 지자체(청주시)임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음.
- (질의)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는 하천점용허가 당시 제방 철거 신청을 하지 않아 몰랐다고 하면서, 2022년 9월에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주었음. 제방이 철거된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답변) 대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질의) 교량을 신설하는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 (답변) 하천법상으로 유지보수의 주체는 지자체로 명시되어 있고, 유지보수의 업무 범위에 하천 공사의 현황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행복청이든 국토부에서 관리를 할 것인데, 유지 관리 책임이 지자체 있다는 것은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답변) 법적으로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음. 검토해보겠습니다.

②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관련

- (질의) 국가하천에 홍수 위험이 발생하면 홍수통제소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지? 이번 문제도 금강홍수통제소장이 청주시장에게 통지하고 청주시장은 즉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렸는지?
- (답변) 그러함. 주민들에게 알린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질의) 2022년과 2023년의 금강하천예보연감을 보면 ‘홍수특보와 별도로 하천 수위가 지정된 수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를 관계기관 및 담당자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사 당일에도 그렇게 했는지? 왜 충북도청이나 청주

시청이 아니라 홍덕구청 건설과에 알렸는지?

- (답변) 홍수정보 제공을 하는 것은 주요 하천 주변에 주요 시설물이 있을 때 수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 그 때 홍수정보 심각 단계에 도달했을 때 가장 가까운 홍덕구에 알린 것임.
- (질의)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가 나면 피해를 직접 입는 곳이 인근에 있는 지방도와 지하차도이면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나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알려 주는 게 맞는 것 아닌지?
- (답변) SMS 등 관련된 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전화를 한번 더 했음. 궁평사고 이후 홍수통제소장이 직접 관계 시군, 시군구까지 유선으로 직접 통보하는 체제로 개선하였음.

(4)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가) 보고 내용

I. 사고 개요

- 미호강 하폭 확대를 위한 제방 이설공사*(대전청, '17.3 착공)와 교량 설치 포함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행복청, '18.2 착공)가 동시진행
 - * 미호강 신설제방 축조(1.68km) 및 기존제방 철거를 통해 미호강-병천천 합류부 하폭 확대(350m→610m)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
 - ** '22.1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 관련 기능·인력 등이 환경부로 이관
- 제방 이설공사 중지상태('20.2~'24.3)에서 새로운 교각 설치 목적으로 기존제방 일부를 굴착·절개(1차, '21.11/2차, '22.10)
- 우기에는 임시제방을 축조(1차, '22.6/2차, '23.7)하여 범람 대비
- '23.7.13~7.15 집중호우(428mm)에 의해 따라 수위가 상승(최고 EL29.87m)하면서 임시제방(EL29.6m) 월류(08:51 완전 침수)

II. 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1. 사고 대응

- **[사고대응]** 현장대응반 신설하여 사고현장 수습 [행복청]
 - 임시제방을 즉시 복구하고, 행복청내 현장대응반을 신설하여 사고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등 실시
 - 아울러, 공사 현장 전반에 걸쳐 기상특보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구성토록 시스템화하고, 취약기에 합동 중점 점검*을 주기

적으로 실시

- * (해빙기) 사면안정, 지반정리 등 / (우기) 수방자재, 배수계획 등 / (동절기) 제설, 냉해방지 등

2. 후속 조치 [국토부]

- ▶ 관계기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지하차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23. 8~11월)
 - * 국토부, 행안부, 건기연, 재난연, 민간전문가로 구성
- ▶ 지하차도 침수사고 안전관리방안과 침수사고 방지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 진입차단 및 대피유도시설 설치, 통제기준 강화 등

□ [제도정비] 도로터널 터널방재지침 및 도로 배수시설 설계 지침 개정

- ① (모니터링 강화) 지하차도 침수위험 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통제기준 마련('24.4)
 - * (모니터링) 지하차도별 담당자(2명)를 지정하고, 상황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및 조치
(도로통제) 배수펌프 미작동, 침수(최대15cm), 관련기관 요청 등의 경우 즉시 통제
- ② (진입차단시설) 방재1, 2등급에 한정된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침수우려가 있는 방재3, 4등급 U자형 지하차도까지 확대('24.4)
- ③ (대피유도시설) 침수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유도시설(안전 손잡이, 비상사다리) 설치 의무 대상·기준 마련('25.3)
 - * (대상) 침수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50m 이상 U자형(자연배수 곤란) 지하차도 등
(기준) 안전손잡이 : 높이 1.0m 간격, 비상사다리 : 지하차도 입·출구 3m 이내

- ④ (설계기준 강화)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 및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

*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빈도로 상향

□ **[시설개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및 대피유도시설 설치

- ① (진입차단시설) 고속국도·국도 지하차도 45곳 설치 완료(~24.8)

* 고속국도 13곳(재정 4곳, 민자 9곳), 일반국도 32곳

- ② (대피유도시설) 우리부 소관 고속국도·국도 지하차도 14곳 설치 완료(~25.6)

□ **[안전강화]**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 안전강화방안 마련

- 지자체를 포함 각 도로관리청의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25.7.30)하여 시행중

* 지하차도별 담당자(2인) 지정(미중복), 통제기준 강화(15cm→5cm이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8.8), 침수위험 지하차도 네비게이션 안내 추진(~'26.上) 등

3. 처분 현황

- 시공사·감리사 등에 대한 제재요청*(행복청 → 국토부, 시도, 조달청)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5)

* (금호건설 등) 영업정지 1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1년 (감리단 등) 6개월 업무정지 요청

→ 형이 확정된 감리단장,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8개월 업무정지 확정

□ 추진경위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23.7.15) 이후, 행안부 등 관계 기관과 공동 TF(6차레)·실무회의를 통해 지하차도 안전강화 제도개선 추진

* 국토부, 행안부, 건기연, 재난연, 민간전문가로 구성('23.8.24~11.7)

** 관계기관 의견청취, 행정예고 등을 거쳐 도로터널방재지침 개정('24.4 / '25.3)

□ 기존 지하차도 침수사고 안전관리 방안 ('24.4 / '25.3 지침 개정)

- (진입차단시설) 침수우려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 모니터링 담당자(2인) 지정, 통제기준 마련(지하차도내 최대15cm)

* (국토부 소관 총 45곳) 고속국도 13곳, 일반국도 32곳 설치 완료

- (대피유도시설) 침수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손잡이·비상사다리 설치

* (국토부 소관 총 14곳) 고속국도 4곳, 일반국도 10곳 설치 완료

□ 침수사고 방지 안전관리 강화방안 ('25.7.30)

- (통제기준) 지하차도 통제기준 강화(지하차도내 수심 15cm이하→5cm이하)

- (시설점검) 진입차단시설에 대해 자연재해 대책기간(5.15~10.15)에는 주 1회 이상 점검, 기상특보(예비 포함) 시에는 즉시 점검 실시

- (시설개선) 지하차도 인근 배수시설 개선, 지하차도내 침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수위계 및 CCTV 추가 설치

- (정보제공) 호우경보시 침수위험 지하차도 네비게이션 안내 추진 (~'26.上), 침수위험 지하차도 전방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교육 및 홍보) 지자체 등 지하차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8.8),
침수 지하차도 통제협조 관련 국민인식개선 SNS 홍보 등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 (질의) 도로법 제76조 제6항을 보면,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오송참사와 같은 명시적인 강우 기준이 없음. 이후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에 대한 지침을 세웠으나, 국토부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효력이 약하고, 지자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강우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여 시행령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답변) 국토부에서 통제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얘기를 했고, 지하철도 담당자도 2인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통제 기준을 15cm에서 5cm 이하로 통제하고 있음.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보고 내용

I. 사고 개요

- '23.7.14~15일 미호강 일대의 집중호우(청주지역 양일간 427.8mm, 7.15 오전 시간당 30mm 내외)로 인해 미호강교 지점 수위가 지속 상승
- '23.7.15 07:51분경 임시제방 월류가 시작되어 인근의 궁평2지 하차도로 유입,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14명, 부상 16명) 및 재산피해 발생

II. 하천범람 원인

- '23.7월 사고 현장에는 미호강교 신설을 포함하여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사업” 공사가 진행 중

< 오송~청주 2구간 도로확장사업 개요 >

- ▶ (목적) 오송~청주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36호 확장개량
- ▶ (규모) 연장 1.2km (미호강교 710m 포함), 도로폭 27m (왕복4차로→6차로)
- ▶ (공사기간 / 총사업비) '18.2~'24.1 / 829억원
- ▶ (발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시공사) 금호건설 외 1
- ▶ (감리단) ㈜이산 외 2

-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現 금강유역환경청)은 '17.3월부터 미호강 하폭 확장 등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 중

□ 당초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기존제방을 철거하고 그 흙을 활용하여 신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한편, 도로확장사업은 기존제방이 철거된 위치에 미호강교의 교각 3열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그러나, '20.2월 하천정비사업은 주변 철도·도로공사와의 간섭 등으로 공사 잠정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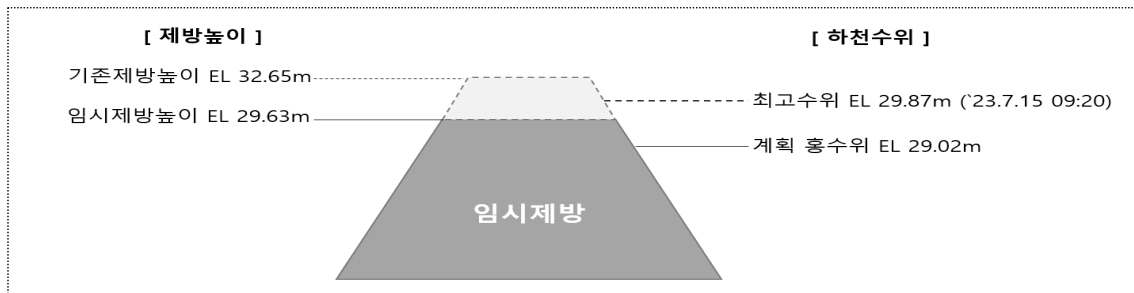
□ 이에 도로확장사업은 공사의 계속 진행을 위해 우기에는 임시제방을 쌓기로 하고 부득이 기존제방의 일부를 절개('21.9.~11.)

* 교량의 교각(3열)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제방 절개가 불가피

- 이후, 도로확장사업은 기존제방 일부 절개 후 공사 시행, 우기 중에는 공사 중단(일부) 및 임시제방 설치, 우기 후 임시제방 철거를 반복



□ '23년에는 6.29일부터 임시제방을 설치하였으나, 7.14~15일간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며 강물이 임시제방을 월류(7.15 07:51분경)



【 참고 】 7.14~7.15 비상 대응상황

7.14 17:20	미호강교 홍수주의보 발령
7.14 17:44	행복청 → 감리단, 야간 당직 등 비상근무 유선 지시
7.15 04:10	미호강교 홍수주의보에서 홍수경보로 격상
7.15 04:57~	감리단장 상황 전파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청주시, 112 등 총 8회)
7.15 06:26	감리단장 → 행복청, 상황 보고
7.15 06:29~	행복청 상황 전파 (충청북도, 청주시 등 총 13회)
7.15 06:50	감리단·시공사 인력(6명), 장비(포크레인 1대) 투입하여 제방 긴급 보강
7.15 07:51	임시제방 월류 발생
7.15 08:10	임시제방 유실

Ⅲ. 후속조치

□ 임시제방 복구 및 하천정비

- '23.7.15 ~ 7.16일 추가적인 호우에 대비하여 임시제방 응급 복구, '23.11 ~ '24.1월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임시제방 추가 보강
- 이후, 행복청은 도로확장사업 준공('24.1), 금강청은 하천정비사업을 재착수('24.3)하여 신제방 축조 완료('24.6) 및 기존제방 완전 철거('25.6)

□ 시공사·감리단 등 행정처분

- 건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사 등에 대해 국토부, 조달청, 시·도에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

처분 요청('24.8.30)

대 상	행 정 처 분	진행상황
감리단장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8개월	확정('25.5.14)
현장소장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8개월	확정('25.7.7)
금호건설	건설사업자 영업정지 1년 / 입찰참가 자격제한 1년	심의 중
이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영업정지 1년, 입찰참가 자격제한 1년	심의 중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강화

- 호우 예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조 확대 편성, 상황전파·보고체계 명확화 등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강화
- 국토안전관리원·LH 등 공공기관은 물론, 풍수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건설현장 점검 내실화
 - * (당초) 건축시공, 토목시공, 안전·품질 → (개선) 수자원 및 방재분야 등 전문분야 추가
- 현장 관계자 안전·품질관리교육 실시, 수방자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 * 장비(굴삭기, 덤프 등), 마대(골재), 양수기, 천막, 안전용품 등으로 구분·관리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관리·감독 책임 관련

- (질의) 모든 정부기관의 보고서에서 하나같이 전부 다 제방이 잘못되어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감리와 시공을 다 총괄하고 감독하는 자리가 행복청장 자리 아닌지?
 -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답변) 발주청의 감독 권한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대단히 제한되어 있음.
- (질의) 도로확장공사의 발주청으로서 공사 전반을 지도·관리해야 할 기관은 행복청이 아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시공사나 하천관리청에 맡겨만 둘 것인지?
 - (답변)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 (질의) 행복청이 미호천교 발주청이 맞는지? 충북도와 수해 관련해서 회의한 적이 있는지?
 - (답변) 발주청이 맞음. 회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공사 발주청으로서 충북도에 미호천이 넘칠 것 같다고 당시에 여러 차례 경고했는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공사 발주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이 제한된다는 취지인지? 시공사, 감리단장의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행복청의 책임은 없다고 보는지?

- (답변) 건설기술진흥법에 명확히 나와 있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분명히 사과드렸음.
- (질의) 행복청장이 본인의 과실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현장에 갈 도의적 의무는 없는 것인지?
- (답변)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이 아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
- (질의) 도로확장공사의 발주청으로서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은 행복청이 아닌지?
- (답변)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

②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관련

- (질의) 신고의 상황과 내용을 이야기해주기 바람.
- (답변) 6시 26분에 감리단장으로부터 최초 전화를 받고 청주시랑 충북도 그리고 홍덕구, 오송읍 이런 데 전화를 했는데, 도청에는 처음에 전화해서 임시제방의 수위가 차오르니까 주민 대피 준비랑 인근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음. 충북도 자연재난과의 담당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고, 그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성훈수 주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힘.
- (질의)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안내를 하셨는지?
- (답변) 이한울주무관으로 알고 있음. 자연재난과의 재난팀 주

무관심. 최초에는 수위가 올라오고 있어서 주민 대피 준비랑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그 뒤로 감리단장으로부터 계속 상황을 전파받고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청주시와 홍덕구청에 다시 전파를 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다시 전화했을 때, “청주시에도 지금 알리고 있다, 그래서 충청북도도 전파를 드린다”라고 했고 7시경 이후에는 감리단장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청주시와 도청에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고 상황을 알렸음.

○ (질의) 계속되는 재난 위험신호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위기 정보에 대한 관리가 전혀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음. 다시 한 번 했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람.

- (답변) 집에서 자다가 통화를 6시 26분에 감리단장으로부터 받았음. 출근 준비 및 운전을 하면서 그때 관계기관에 전파를 해서, 처음에는 현장으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감리단장 아니면 그 아래 감리단 이사로부터 현장으로 가는 길이 침수가 되어 차가 못 온다고 연락을 받음. 그래서 단장님은 현장하고 저랑 계속 소통을 하고, 저도 사무실로 가서 전파 및 보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출근함.

○ (질의) 전파하는데 있어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기관은 어디인지?

- (답변) 그 당시에는 조치가 이뤄지고 방송 및 문자 이런 게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고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

서 그런 게 이뤄지지 않은 걸 알게 되었음. 그 때는 일단 청주시 쪽에 최대한 많이 알렸었고 경찰 쪽도 감리단장이 통화를, 계속 전파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가 미호천인데 청주시 쪽의 관할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한 오송읍이라든지 청주시 각 부서, 흥덕구청 도로시설과 쪽에 전화를 했었고 당연히 상급기관인 도청도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도청에도 전화를 하였음.

○ (질의) 도청에 연락한 시간이 어느 정도 었는지?

- (답변) 6시 26분, 삼십 몇 분, 그리고 7시, 7시 58분 이렇게 네 차례임

○ (지적) 국정조사를 하면서 예상도 했지만 시설 관리와 시스템 작동 이 두 문제가 모두 거의 불통이었다는 생각이 듬. 그 문제에 있어서 법률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겠지만 기관장들이 오늘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법률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 관할권이 없다하는 것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지적) 충청북도 자연재난과가 연락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전파하라는 의미로 연락을 한 것임. 그것이 위로 보고가 안 되었다는 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함.

○ (질의) ‘당신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알려 드린 것인지,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것인지?

- (답변) 당연히 전파하라는 걸로 얘기를 했고, 당시 사고를 막

으려고 했던 의도는 알고나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었음.

○ (질의)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해보시길 바람.

- (답변) 업무상 과실치사상하고 직무유기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에 주민 피해나 농경지 침수 이런 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막지 못해서 돌아가신 고인하고 유가족분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6) 충청북도(충청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가) 보고 내용

I. 사고 개요

□ 사고발생

- (일 시) '23. 7. 15.(토) 08:40경
- (위 치) 지방도 508번 궁평2지하차도(오송읍 궁평리)

▶ 준공일자 : 2019. 12. 17. ※ 이관 : 2020. 1. 23. (행복청→충청북도)
▶ 규 모 : L=685m(Box 430/U-type 255), B=19.3m(4차로)
▶ 주요 시설물 : 배수펌프(30마력) 4대, 전기시설, CCTV 6대 등
▶ 관리주체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피해규모) 인명 30명(사망 14명, 부상 16명), 차량 17대 침수
- (발생경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하는 미호천교 확장·신설(오송~청주² 구간 도로확장공사 '18.2.~'23.11.)을 위해,
-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공사하던 중 호우대비 쌓은 임시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 강물이 지하차도로 순식간에 유입 침수 발생
➡ 임시제방 관리 : 행복청^{발주청}, 환경부^{인허가권자} / ※ 평소 제방관리(환경부→충북도→청주시 위임)

□ 당시 기상상황 ('23. 7. 15. 09시 기준)

- (기상특보) 충북 전 지역 호우경보 발효
- (일강수량) 청주 **196.1mm**, ※ 7. 13.~7. 15. 09:00 기준, 청주 누적 강수량 392.7mm

□ 충북도 대응

- **(상황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 운영('23.7.14. ㉔ 16:40 ~)
- **(점검회의)**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23.7.14.~15. 3회)
 - * '댐과 주요 하천 수위 면밀히 관찰, 취약지역 현장점검 시행,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선제적 대피' 등 지시
- **(통제상황)** 대피명령, 위험시설 등 통행제한
 - 괴산댐 방류 및 월류에 따른 주민대피 명령 등(9개 시·군 3,171세대)
 - 위험시설 112개소*, 국립공원 3개소(속리산·소백산·월악산) **통행 및 출입 통제**
 - * 하상도로 3, 둔치주차장 27, 세월교 11, 일반도로 41, 산책로 30

II. 주요 수습조치

□ 사고 대응·수습체계 가동

- 도지사, 가용가능한 인력·장비 총동원 지시('23. 7. 15.)
- '23. 7. 15.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운영
 - *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도,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4개반 운영
- 재난대책회의(11회), 사고수습대책본부회의(12회), 소방 브리핑(8회)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23.7.17.) → 청주, 괴산 특별재난지역 선포('23.7.19.)
 - * 복구비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유예 및 감면,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 수습 및 복구활동

- 인력 486명, 장비 81대 투입하여 실종자 전원 수습('23. 7. 17.)

'23. 7. 15.	'23. 7. 16.	'23. 7. 17.
▶ 17명(사망 1, 부상 16)	▶ 25명(사망 9, 부상 16)	▶ 30명(사망 14, 부상 16) * 실종자 전원 수습

○ **지하차도 진입 통제***, 오송-조치원 방향 6개 노선 시내버스
우회 운행

* 오송 신촌2교차로~궁평2지하차도 2.2km, 만수교차로~궁평교차로 1.6km

○ 지하차도 배수 및 퇴적물 준설 등 **응급복구*** 실시

* 응급복구 완료(7.19.), 배수펌프 2대 설치(8.4.), 임시 전기시설 설치(8.11.)

○ 펌프·전기시설 등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

□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 사고현장 실종자 가족 지원('23.7.16.~17./1일 4명 근무)

○ 1:1 전담인력 배치, 장례절차 및 지원사항 등 안내('23.7.15.~20.)

○ **합동분향소 운영***('23.7.20.~8.2. / 충북도청 신관 1층) : 1,857명
조문 지원

* 시민분향소 전환('23.8.3.~9.1.) / 청주시재생지원센터 1층 → 현재 청주시청에서 운영중('23.9.6.~)

○ 재난지원금(50백만원), 의연금(20백만원), 도민안전보험(최대 45백만원),

성금(20백만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

* 정신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중(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상담 지원('23.7.18.~8.30./ 116명 상담)

○ 유가족협의회 **회의공간 제공**('23.7.~ / 충북연구원 2층 회의실)

Ⅲ. 재발방지 대책

1.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 지하차도 안전시스템 강화

- 도내 법정 지하차도 **32개소** 자동차단시설 설치 완료('24)

- 지하차도 통제기준* 강화

* 침수심 통제기준 : (기존) 50cm → **(강화) 15cm**, 홍수경보 발령시 즉시 통제 등

※ '25. 7월 '국토부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 안전강화 방안' 개정 따라 보완운영 예정(침수심 15cm→5cm)

- **4인 담당 지정·운영*** : 주의보 현장예찰, 경보 현장상주

* 공무원 2인(도로관리사업소, 읍면사무소), 조력자 1인(이장 등), 경찰 1인 지정

<궁평2지하차도 안전관리 사업 >

- (비상대피시설 강화) 핸드레일 L=8,315m(6~13단), 비상사다리 100개소, 인명구조함 26개소
- (차수벽 설치) 사업비 3억원, 사업량 H=2.0m, L=155.6m
- (민간업체 위탁·운영) 1일 3회 현장예찰 및 시설물 점검, 호우주의보 이상 현장상주

□ 예방 중심 안전관리 전환

-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발굴 및 관리 강화 * '23년 242개소 → '25년 380개소

- 비상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선제적 차단 및 주민대피 실시

- 비상대응체계 강화 필요시 상황실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상향

- 위험상황 인지시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추진
- 풍수해 행동매뉴얼 정비*(‘24.6), 재대본 협업부서 실무반 정비**(‘24.5.)

* 인명피해우려지역 매뉴얼 반영, 단계별 부서별 임무 보완, ** 협업부서 행동요령 정비

□ 미호강 및 지류하천 준설·정비

- 미호강 본류 정비준설* 환경부 건의 중(지속)
 - * 오송 조천~보강천 합류점, 31km, 준설량 427만 m³, 512억원
- 미호강 본류 단면부족구간 유지관리* 준설 실시(‘24~‘25)
 - * 총 3개소(고속철도교, 영운보, 오창 여천~남촌 일원), 5.48km, 준설량 8.5만 m³, 13.5억원
- 미호강 지류 지방하천 준설* 추진 중(‘24~‘25)
 - * 지방하천 3개소(완료 : 석화천·용두천, 추진중 : 보강천), 8.1km, 13.7억원
- 병목 현상 개선을 위한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 중(금강청)

□ 현장중심 구조 대응체계 강화(소방)

① 재난상황 수집·전파 체계 재정립

- **119종합상황실 전문인력 재배치***, 상황관리 인턴제 시행·운영**
 - * 전문관제 4명, 구급상황 4명 / ** 숙련된 상황접수 인력 확보
- 체계적·효율적 상황대처를 지원하는 **AI 기반 시스템 정착**

- ✓ (AI 119신고접수시스템 도입) 통화내용 실시간 문자변환 처리
- ✓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보강) 현장영상 정보 고화질 실시간 전송
- ✓ (재난통합영상플랫폼 구축) 출동 시 현장 최적 출동 경로 확보
- ✓ (구급스마트시스템 도입) 현장 환자정보 실시간 의료기관 전송
- ✓ (드론맵핑시스템 도입) 재난현장 3D 입체분석으로 작전 효율화

○ **대국민 상황 알림 확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자연재해 포함 총 38종 재난 자동전파(NDMS) / ** 소방↔경찰 연락관 상호배치

② **재난대응 역량 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운영 절차 등 재정립하여 **소직원 교육 실시**

※ 평가요소 정식 반영으로 훈련의 질적 향상

○ 실전적용 가능한 **충북형 긴급구조통제단 표준조직 개발**

※ 전국 표준모델에서 '3C센터(다수기관 지휘·조정·통제)', '정보지원' 기능 개발 적용

○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추진중**(실화재훈련시설, 지휘역량강화센터 도입 등)

○ 전국 최초 구조기능을 갖춘 '**오창119구조안전센터**' 시범운영

※ 청주 북부권에 공단 전문 구조기능 선제적 강화 → 향후 청주북부소방서 설치 추진

○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서 단위 현장대응단 단계적 추진**

※ (5개서 완료) 청주 동·서부, 충주, 제천, 음성

□ **괴산댐 월류 및 홍수피해 예방 추진**

○ 홍수기(6.21.~9.20.) 시 괴산댐 전체수문 완전 개방하여, **운영수위를 EL.130.0m에서 128.65m로 1.35m 추가 하향**

* 홍수기 수문 완전개방 128.65m, 필요 시 점검터널 개방 119.65m

○ 달천 홍수 방어를 위한 **강변저류지*** 조성

* (규모) 저류지 60만㎡,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반영 및 고시 ('25.5.)

□ 충북안전재단 설립 추진

-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의식 함양사업,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전담하고 행정기관을 지원할 **안전재단 설립 추진 중**

※ 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용역('24.5~11.), 설립계획 타당성 검토('25.7.~'26.2.)
행안부 설립심의위원회 상정('26.3.), 행안부 승인시 법인등록 등 절차 추진('26.3.~'26.9.)

- (설립형태) 도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 (조직규모) 1실 3부 28명, 운영비 36억원
- (주요기능) 재난안전 정책연구, 도민 안전교육, 안전진단 등 예방적 업무 지원, 피해자 심리치료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기타 협력사업 등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

- **도민안전보험 확대***, 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실시**

* 자연재난 상해보험 신설, 공통보장항목 확대,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

2. 추모사업 등 유가족 지원

□ 유가족 소통 정례화

- (유가족 정례면담) **매월 1회**('24.12.~)
- ※ 유가족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 공유

□ 추모사업 추진

- (**추모주간 운영**) 도 차원 추모주간* 선포 및 운영

* 전직원 추모리본 패용, 주요거리 추모현수막 게시, 오송747버스 추모현수막 게첨운행 등

○ **(추모제 지원) 1·2주기 추모제 지원***

* (주관) 유가족협의회 (도) 추모제 행사 소요 물품(무대설치, 음향, 천막, 의자 등) 지원

○ **(기타 추모사업) 추모조형물 설치, 추모공간 마련 등 유가족 요청 추모사업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행안부 오송참사 피해자 지원단(25.9.출범)과 협력 체계 구축,추모사업 등 유가족 지원 지속 추진**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도지사의 책임 문제 관련

- (질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불기소 이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답변) 오송 사고가 침수에 의한 사고인가 아니면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인가의 문제에 귀결이 있다고 생각함. 국과수의 조사 결과 오송 참사는 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고 궁평제2차도의 관리상의 부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미호강은 범람이 없고 월류가 없는 그런 제방이었고, 제방이 붕괴돼서 현장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7분이었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방이 붕괴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도지사는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느끼는지?
 - (답변)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함. 어떤 일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할 수 없음. 이 위원회에서 기소하라 또는 재수사하라 결정을 내린다면 받아들이겠음. 그러나 이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처음 적용되는 사례임.
- (질의) 충북도는 참사 발생 다음날 오송 지하철도 사망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받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도 예산으로 지급 가

능한지 문의함. 실종자 수색보다 면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임.

- (답변) 사실이 아님. 재난안전실장이 설명할 수 있는 사안임.

- (지적)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계속 점검했다, 침수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례 경고가 있었음에도 조치가 없었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닌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임.
- (지적)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 모두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임. 14명 사망, 16명 부상이라는 큰 참사가 있었음에도 두 단체장이 국정조사 자리에서 지나치게 떳떳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문제가 있음. 법적 책임 논란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결과적 책임이며 도지사와 시장은 참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봄. 2년간 유가족과 긴밀한 소통·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결국 유가족들이 검찰 수사나 재판 외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게 된 배경이라고 봄.
- (지적) 참사 수습이 끝나기도 전 다음 날, 충북도가 곧바로 사망 사건 관련 법률 자문을 7~8건 의뢰한 사실이 확인됨. 충북도는 처음에는 "자문 내용 확인 불가"라며 발뺌했지만, 언론 공개 뒤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책임 검토 필요"라고 해명함. 참사 직후 유가족 수습보다 책임 회피를 먼저 한 것은 문제라고 봄.
- (지적) 충북도청은 금호건설과 수해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발주청인 행복청과도 재해 예방에 관해서 이야기 한적이 없음. 충북도청은 하천관리청으로서 수해를 예방하고 제방을 관리할 업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14명이 희생당했음. 이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함.

②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 관련

○ (질의) 2023년 7월 15일 오전 9시 44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지하철도 참사 소식을 처음 인지한 것이 맞는지? 그 이전에는 미호천 범람 위험이나 대피 필요성에 대해 들은 바가 있는지?

- (답변) 그렇게 기억함. 들은 바 없음.

○ (질의) 그날 오전 6시 20분부터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행복청에서 충북 자연재난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 대피 그리고 교통 통제 필요성을 연락해왔는데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인지하였는지?

- (답변) 당연히 몰랐음.

○ (질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업무상 과실의 내용은 무엇인가?

- (답변) 재난 전파 미흡임.

○ (질의) 재난상황 대책회의하고 있는 중에 보고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 (답변) 사고 이후에 받은 걸로 기억함. 보고를 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음.
- (질의) 행복청이나 감리단에서 각 기관에 21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하고 충청북도에는 네 차례 연락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는지?
- (답변) 지금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여기 뒤에 있음. 우리 도에 정식으로 이걸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아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청주시와 119에 알렸으니까 ‘그것을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돼서 전파되어 보고가 되지 않은 것임.
- (지적) 그 이전부터 재난과 관련된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교육했으면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임.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떠미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음.
- (질의) 궁평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걸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 (답변) 사고 이후에 조금 늦은 시간에 보고를 받았음.
- (질의) 참사 상황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또는 용산과 소통한 적이 있으신지?
- (답변) 전혀 없었음.
- (질의) 도지사는 그 날 당일 6시 12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여 7시 15분까지 충북도에 있었음. 그 사이에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인지?

- (답변) 오송 상황은 모르고 있었음.
- (질의) 도청에 총 네 차례에 걸쳐 긴급한 재난 전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제보를 받은 접수자가 상부에 보고했다고 함. 보고 받았는지?
- (답변) 받은 적 없음.
- (답변) 참사 당일 저녁 9시에 다른 직원이 접수자가 신고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음.
- (질의) 행복청 공무원께서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전화한 것만 네 차례인데, 이 때 조치만 취했어도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봄. 이에 대한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인지?
- (답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전파가 안 된 경위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재난안전실장 등도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음.
- (질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왜 보고를 못 받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사후적으로 왜 보고가 안 됐는지 파악을 안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 (답변) 전파가 안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이미 있었음.
- (질의) 행복청에 파견된 주무관이 전달했으나, 접수 공무원의 목살로 전파가 안된 것임. 전파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오전 회의 때 말씀하셨음.

- (답변) 보고 받지 못했음.
- (질의) 당일 사건 관련 주의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있는가? 공소 사실은 인정하는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답변) 재난 신고 목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음. 행복청에서 연락이 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음. 숨기고 있는 부분은 없음.
- (질의) 충북의 보고체계와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 (답변) 미흡하다고 생각함.
- (질의) 비상 대응 3단계 발령 시점(오후 4시 40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4시간 후 늦게(저녁 8시) 보고한 이유는? 당시 도지사 위치와 상황은?
- (답변) 도지사가 외부(서울) 출장 중이었으며,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비상 3단계를 운영했음.
- (질의)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 취약 지하차도로 분류돼 있는데 도지사가 출장에서 복귀한 11시에 그런 부분을 회의에서 언급했는지?
- (답변) 그때 기상 상황이나 도내 주요 댐 관리 등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이 있었음.

- (질의) 이번 사건에서 세 번의 도지사의 직무유기가 참사를 일으킴. 첫 번째, 비상대응 2단계 때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서울로 출장을 감. 두 번째, 비상대응 3단계로 격상이 된 시점부터 6시간 이후에 복귀하여 재대본 회의를 주재함. 세 번째, 참사 당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자택에 있었음.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재난대응 2단계 때 출발해서 서울을 갔다가, 수시로 계속 보고를 받았음. 호우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내려왔는데 11시경에 참석해서 재대본 회의를 했음. 이튿날 아침에도 10곳 이상에 전화를 하여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함. 지금 위원님 말씀은 궁평차도에만 국한해서 상황을 보고 있지만 충청북도 1622km의 도로를 관할함. 그리고 당시에는 피산댐이 월류가 되면서, 충주가 수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8000명 이상이 대피한 상황이었음.
- (지적) 최근 대형 참사(이태원, 오송)의 반복은 안전 불감증과 단체장의 무책임 때문임. 도지사가 09시 44분경 비서실장에게 최초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고 체계가 부실해 명확한 현장 파악 및 신속 대응이 미흡했음. 보고 체계 운용 및 최종적 책임 역시 도지사에게 있음.

③ 참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대책 관련

- (질의) 도청에서 CCTV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물이 차서 열네 분이 돌아가시는 7분 동안은 CCTV를 안 보신

건지?

- (답변) 그 때 당시에는 보지 못하였음.

○ (질의) 매년 충북도는 하천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하천 관리 점검을 했음. 환경부나 충북도가 하천관리 취약구간이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화장실과 수목만 점검하고 핵심적인 제방절개는 언급하지 않았음. 2022년 결과보고서와 2023년 결과보고서 내용이 동일함. 이는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 제대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임.

- (답변) 미호천 제방이 해방 이후에 범람하거나 월류한 경우가 없었고, 임시제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임.

○ (질의) 미호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미호천은 제방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리 밑의 임시제방이 무너진 것이 참사의 원인임. 임시제방이 주 제방이 아니라 그 다리 밑의 제방이 500m쯤 되는데 이것을 다리를 놓기 위해서 350m 정도 되는 병목을 만들면서 생긴 새로운 제방을 말하는 것임.

○ (질의) 어떻게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 (답변) 직접적인 원인은 제방 붕괴에 있었으나, 궁평 지하차도의 통제가 실제로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

○ (질의) 직접적 원인은, 선행 원인에 있어서서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월류는 안 했다 치더라도 궁평 지하도 차량 출입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평 지하차도의 관리권, 차량을 통제시켜야 할 권한과 의무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있음.

-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많음. 재난안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다 검토해야 함.

○ (질의) 7월 13일부터 호우특보가 별령되어 중대본에서 공문까지 보냈음. 위기경보 수준은 최고 심각단계인 4단계로 격상함. 자꾸 제방 탕을 하는데 교통만 통제했어도 인명 피해 막을 수 있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지하차도 중앙의 50cm 이상이 침수되었을 때 통제해야 된다는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봄. 그때 당시에 미호천 최고 수위가 미호천 최고 수위가 29.87m로 기존 제방고를 넘어섰지 만 32.65m에 대비해서 여유고가 2.75m가 있었음.

○ (질의) 참사 당일 호우·홍수 경보, 다수 기관에서 대피 전파 등 인지 경보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차도 통제 등 충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은 없는가?

- (답변) 사고 당일 침수 지역에 대한 통제와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나, 제방 붕괴 직전까지 현장에 특이점이 없었고, 붕괴 후 7분만에 급격한 침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였음.

- (질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시 30분~7시 30분 사이 수위가 위험 경계치(29.02)를 초과했음에도 충북도의 통제 조치가 없었음.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위 29.02 이상, 침수심 50cm 이상 시 2등급 상황으로 분류·통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임.
- (답변) 최고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음. 최고 수위 29.91m가 기록된 사실은 다른 측정 지점(미호강) 수치이며, 직접적 통제 판단 지표와는 차이가 있음.
- (지적) 사고 당일 이미 오전 10시20분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됐는데, 도지사만 12시40분에 알았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감리단장·행복청 직원 등이 수습 차례 상황 전파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관장들이 한 번이라도 적극 대응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봄.
- (질의) 오송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음.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답변) 침수에 가장 안전한 차도였음. 사고가 나기 전에는 침수 경험이 전혀 없는 도로였음.
- (질의) 2023년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에는 하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책임자 운영이 나와있고,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 풍수해 대비 집중 관리 터널·지하주차장에 궁평2지하차도를 분명히 표기하고 있음. 2022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하면서 궁평2지하차도 진입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요청함. 종합하면 도지사께서는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위험도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 (답변) 오송 지하차도는 당시에 침수 취약지역이 아님. 침수 지역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임. 사고가 있던 날 8시 20분에 궁평차도의 침수가 1cm도 없었음. 그리고 27분부터 제방 붕괴에 의한 흙탕물이 들어와서 차는데 걸린 시간이 7분임.

④ 참사 발생 이후 대응 관련

- (질의) 당시 김영환 충청도지사의 선거공약 공보물을 참고하면, 재난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음. 2023년 제천 대형산불 당시 술자리 논란, 관련 해명도 논란이었음. 오송참사 전날 및 당일의 행적도 논란이 있었음. 충청도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참고하면, 도지사는 관련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나, 관용차 도청 출입기록을 참고하면 재난상황점검회의는 10분가량만 진행한 것으로 보임. 오송참사 현장에도 사고 이후 바로 가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것으로 보임. 지자체장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 (답변) 충북은 1,622km의 도로를 관할하고 있고, 집중호우가 오송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충북 전역에 내림. 괴산댐의 월류로 괴산댐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7,000명이 대피한 상황이었음.

- (질의) 참사 때 경찰 출동했는데, 다른 곳으로 출동한 사실이 맞는지?
- (답변) 제2차도로 가야하는데, 제1차도로 이동한 것은 사실임.
- (질의) 09시 44분경 비서실장에게서 사고 보고를 받고, 10시경 사망자 발생 보고도 받았음에도, 왜 즉시 오송(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괴산댐 대피 현장 및 농작물 피해 현장 등 먼저 들렀는지?
- (답변) 10시 36분경에는 "심폐소생술 중 1명, 2명 귀가"라는 정정 보고를 받았음. 오송 현장의 심각성과 차량 갇힘 사고는 뒤늦게 알게 되었음. 당시 충북 전역 복수 재난으로 인한 착오와 상황 판단 오류가 있었음. 결과적으로 오송 사고 현장 대응이 늦어져 아쉬움.

⑤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 (질의) 도지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함. 그런데 지금 보면 유가족 측을 잘 보듬지 못한 부분이 많아 국정조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는지?
- (답변) 상처를 다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매주 만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는 도청에 추모비를 만드는 문제까지 받아들임.
- (지적)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유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함.

○ (질의) 참사 발생 후 5일 후 유족들에게 ‘좀 더 일찍 갔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음. 적절했다고 여기는지?

- (답변) 부적절했다고 생각함. 다만,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뜻으로 한 것임.

○ (질의) 페이스북에다가 참사 당일 8시 59분에 ‘폭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쓰셨는데 직접 쓴 건지?

- (답변) 직접 썼으나 오송 참사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였음.

○ (질의) 올해 7월 2일에 오송 참사 현장 궁평 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가 되었는지?

- (답변) 시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도청에 추모비를 만드는 문제만 결정한 상황임.

○ (질의) 반대 입장을 밝힌 단체들의 현수막 내용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을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 (답변) 저분들을 설득해서, 유가족들에게 궁평 차도 위에다가 추모의 길을 붙이자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 그 옆에 추모비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음.

- (질의) 유가족에 대해서 충실히 사후대책과 마음을 보듬는 것을 하셨는지?
- (답변) 유가족들을 언제든지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고 세 번 면담함. 말씀들을 경청하고 가능하면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지적) 국정조사 지연에 유가족에 사과말씀 드림. 원인은 규명된 것 같으나, 책임자 처벌 미비함. 재발 방지는 새정부가 잘 할 거로 기대함.
- (지적) 유가족 치유 노력하겠다는 말에 진정성 부족해 보임.
- (지적) 유가족 분향소에 방문해서 사과 불가항력적이라는 발언은 부적절함.
- (질의)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참사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되나, 자연재난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사후적으로 조사를 잘 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함. 유가족들이 섭섭해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 (답변) 도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분들의 고통이 커 노력이 전달되지 못 하였으며, 더 노력하겠음. 오송참사추모의길 이라는 명칭부여 또는 정책에 대해 주변부와 갈등이 있는 문제가 일부 있음.
- (질의) 참사에 대한 사과나 사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유가족에서 대해 전달할 말은 없는지?

- (답변) 유가족 치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⑥ 미호강 하천 관리 및 지하차도 진입 통제 책임소재 관련

○ (지적) 검찰이 여러 가지 조사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음. 그것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를 정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와 조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함.

○ (질의) 미호강 하천관리청은 정확히 어디인지?

- (답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인데, 우리 도에 위임이 되고 이를 다시 시에 위임하고 있음. 임시제방 문제는 환경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임시제방의 관리주체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인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궁평지하차도 진입 통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구인지?

- (답변) 그러함. 지하차도 통제는 도로법에 의하면 지방도라도에 있음.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에 있음.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7) 청주시

(가) 보고 내용

1. 사건 개요

1 '23년 당시 수해 현황

○ 호우현황 : 강우량 426mm ['23. 7. 13.(목)~7. 15.(토)]

○ 피해건수 및 피해액

구 분	합 계	공공시설	사유시설*
건수	13,751	575	13,147
피해액 (백만원)	75,556	21,760	50,796

* 주택943건(20억원), 농경지10,390건(60억원), 공장25건(39억원), 소상공인592건(369억원)

▼ 공공시설 피해현황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공공시설	계	하천	소하천	소규모시설	도로	수리시설	산림	상하수도	철도시설	기타시설
건수	575	33	84	189	48	39	91	19	3	69
피해액	21,760	3,919	3,385	2,351	2,780	1,981	2,574	1,831	601	2,338
복구액	92,856	20,814	26,666	6,759	12,697	10,618	3,394	2,685	1,571	7,653

○ 총 인명피해 : 34명(사망 15명*, 부상 19명)

* 국대도 석판JC 1명, 오송궁평2지하차도 사망 14명, 부상 16명

○ 수해복구 자원 : 2,879대의 장비와 37,512명 인원 동원

※복구자금 1,122억원(재난지원금 194, 공공시설 928, 국고 추가 211)

○ 특별재난지역 선포('23.7.24.) → 대통령공고 제341호

② 사건 발생 개요

- 일 시 : 2023. 7. 15.(토) 08:40분경
- 장 소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 개 요 : 미호강 강외 제2지구(도로확장공사, 하천정비공사 진행 중) 임시제방 붕괴로 하천수 유입, 궁평2지하차도를 통과 중인 차량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상자* 발생

* 사망자 14명, 부상자 16명

③ 사건 당시 대응태세 현황

- 7.11.(화) 18:20 호우주의보 발령,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78명 근무)
- 7.14.(금) 04:20 호우경보 발령,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156명 근무)
 - ※ 05:00 호우경보 발령 → 06:30 호우주의보 변경 발령 → 12:10 호우경보 변경 발령
- 7.14.(금) 17:15 미호강 홍수주의보 발령(금강홍수통제소)
 - 배수문·배수펌프·우류저수시설 등 점검, 피해 예상 지역 사전 조치 등
- 7.14.(금) 18:10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 개최
 - 호우피해 발생 시 즉각 대처, 피해 위험지역 선제적 조치
- 7.15.(토) 02:15 호우경보 지속,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 가동 (417명 근무)
 - 미원면 달천 인근 6개 마을 주민 대피(68명, 대피소 8개소)
- 7.15.(토) 03:00 무심천 홍수경보 발령(금강홍수통제소)

- 운천신봉동 침수지역 주민 대피, 차량 이동 주차
- 모충동 침수지역 주민 대피, 배수펌프시설 가동, 차량 이동 주차
- 대 시민 CBS재난문자 발송(총 6회)

○ 7.15.(토) 03:35 비상대책회의(부시장, 기획행정실장, 안전정책과장)

○ 7.15.(토) 04:10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금강홍수통제소)

- 오송읍 마을방송(총 4회) 실시 및 선제적 주민대피(339명)
- 재난 예·경보시스템 가동(미호천, 명암저수지)
- 민방위 재난경보 발령(市 요청→道 발령, 오송읍 오송리, 동평리, 서평리)
- 24시간 현장대응반 지원(응급의료소, 차량 견인, 장비 및 물품 지원 등)

○ 7.15.(토) 06:30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 개최

- 피해 상황관리 철저, 취약지구 예찰 강화, 상황총괄TF팀 구성

◇ '23. 7. 15.(토) 총 주민 대피 인원 : 14개 읍·면·동, 644명
(오송읍 339, 옥산면 100, 미원면 71, 강내면 42, 북이면 30, 운천신봉동 24, 가덕면 10, 남이면 10, 현도면 5, 분평동 5, 봉명2송정동 5, 남일면 1, 사직1동 1, 오근장동 1)

2. 주요 조치 현황

1 (사고 직후) 현장 대응

○ 신속한 현장상황 및 지원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대응
반 운영

구 분	계	공무원	봉사·기관단체 등				비 고
			의사회	시설 관리 공단	청주시 의용 소방대 (오송)	대한 적십자사 충북지사	
계	619	245	4	10	180	180	
7.15(토)	110	48	-	2	60	-	-(보건소40) 현장 응급의료소* -(회계과3) 24시간 현장대응 -(교통정책과4) 차량견인 -(대중교통과1) 버스사망자 신원확인
7.16(일)	286	129	3	4	60	90	-(보건소77) 현장 응급의료소* -(회계과12) 24시간 현장대응 -(복지국20) 피해자전담지원(1:1매칭) -(자원정책과6) 쓰레기수거 -(교통정책과6) 차량견인,현장지원 -(대중교통과8) 버스사망자 신원확인
7.17(월)	218	63	1	4	60	90	-(보건소37) 현장 응급의료소* -(회계과12) 24시간 현장대응 -(대중교통과10) 현장지원 -(교통정책과4) 차량견인,현장지원
7.18(화)	5	5	-	-	-	-	-(회계과3) 현장대응 -(대중교통과2) 현장지원

※ 보건소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사상자 확인, 분류, 기록, 이송 지원 등)

○ 장비지원

구 분	계	구급차	견인차	준설차	청소차	양수기	비고
계	45	11	10	4	2	18	
7. 15(토)	14	4	2	-	-	8	
7. 16(일)	12	4	4	2	2	-	
7. 17(월)	19	3	4	2	-	10	

○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응 조치

- (07:20 ~ 09:10) 무심천, 모충동 침수지역 현장 지휘(청주 시장)
- (09:05) 흥덕구청장 현장출동(소방, 경찰, 충북도 현장 대응 회의)
- (09:05) 부시장 사고 인지 후 배수 관련 신속 조치 지시
- (10:11) 시장, 흥덕구청장에 지시(부시장 지휘 아래 현장 필요사항 적극 지원)
- (10:30)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사고 관련 지원 및 조치 철저)
 - 피해예방 최우선 필요 지원·장비 지원, 사고관련 지원 및 조치 철저
- (10:40) 부시장 현장도착(소방, 경찰, 충북도 관계기관 회의)
 - ※ 현장 종사자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을 통한 탑승인원 파악 지시
- (11:32)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난상황보고(1차)
- (11:52) 청주시 24시간 현장대응반 도착(1차)
- (12:48)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난상황보고(2차)
- (13:40) 청주시 24시간 현장대응반 도착(2차)
- (14:21)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난상황보고(3차)
- (14:40) 시장 현장도착
 - ※ 인력, 의료, 물품 등 지원 상황 확인 및 확대 지시, 유가족 지원 지시
- (15:30) 오송읍 복지회관 침수 우려로 이재민 분산 이동(오송 중, 오송고)

- (17:00) 오송읍, 주민대피소 추가 분산 이동(오송사회복지관 추가)
- (17:47) 홍덕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도착(현장응급의료소)
- (21:00)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 수해복구 필요 장비 선집행, 대피소에 신속한 물품 지원
- (23:10)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청원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② [사고 수습] 유가족 및 부상자 등 지원

① 사망자 및 유가족 장례 지원

- 기 간 : 2023. 7. 15. ~ 7. 20.
- 대 상 : 오송읍 궁평 지하차도 재해사망자 14명 및 유가족
- 지원내용
 - 사망자 장례지원
 - 유가족 전담 공무원 지정하여 장례 절차 안내, 현장 지원(장례식장 등)
 - 장례식장 : 14개소(청주 11, 수원1, 세종1, 안양1)
- 지정 공무원 역할
 - 매칭 공무원 구성 : 복지국 소속 20명 (팀장급 위주)
 - 사망자 및 유가족 확인 후 1:1 매칭하여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지원
 - 장례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 질의사항 답변 및 애로사항 해결
 - 장례 후 화장 및 안치까지 동행 위로

② 유가족 심리회복상담 및 지원 안내 운영

- 운영기간 : 2023. 7. 20. ~

- 전 담 반 : 1팀 24명
 - 유가족 심리회복 및 소통 창구 : 20명(복지국)
 - 각종 지원금 업무 : 4명(안전정책과)
- 목 적 : 재해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 심리회복 및 지원
- 세부내용 * **심리회복지원 연계 역할 추진**
 - 심리회복지원 : 호우피해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심리회복 상담
 - ※ 검사비, 상담비, 치료비, 약제비 지원
 - 유가족 및 부상자 47명 치료 완료 또는 진행 중
 - 소통 상담 창구 운영
 - ▶ 유가족 면담, 전화 등 심리회복 및 소통창구 역할
 - ▶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타 기관 연계

③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 운영 지원

- 기 간 : 2023. 8. 3.(목) ~ 9. 1.(금)
 - ※ 당초 '23. 8. 23일까지 였으나 유가족이 49재인 23. 9. 1일 까지 연장 요청
- 운영시간 : 09:00 ~ 20:00 (매일)
- 장 소 :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1층
- 설치사항 : 제단(제단 꽃장식, 합동 위패), 배너기 4개
- 운영내용
 - 근무지원 : 근무자 22명 (1일 2명 근무조 편성 운영)
 - 내 용 : 시민분향소 운영, 방문객 안내, 유가족 의견 청취

◆ 현재 운영상황

- 유족 측과 협의하여, 현재 시청 임시청사 별관 1층에서 시민분향소 운영 중 ('23. 9. 7.~ 현재까지 시청사에 설치 운영)

④ 피해자 및 유족 지원

○ (사망자) 보상금 지급 총액 : 15.85억원

▼ 1인 당 지급 현황

구 분	계	재난지원금	위로금	시민안전보험*	의연금	적십자 성금
승용차탑승	115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25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버스 탑승	135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45백만원	20백만원	20백만원

○ (부상자) 보상금 : 적십자사 성금 1인당 500만원

- 재난지원금은 장애등급 받은 자가 없어 미지급

◆ 지원금 개요

- 시민안전보험 : 청주 시민에게 지급(농협손보)
- 재난지원금, 위로금 : 청주 시민에게 지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의연금 :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금 후 모금액에 따라 지급
- 산재보험 : 근로자 업무상(출퇴근 등) 사고 시 유족에게 지급
- 버스공제조합 : 대중교통 탑승사망자 책임보험금 합계 내 지급
- 적십자 성금 : 사망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1인당 5백만원 지급

③ [사고 이후] 재난안전 관리 체계 시스템 및 인력운영 개선

○ 재난대응 조직개편 및 시스템 개선

- 재난대응 전담 조직 신설 및 공공오피스 통합 배치
 - ※ 임시청사 3층 통합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며,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 및 신속대응
- 재난안전실 신설 (1실 3과 체제 / 인구 100만 이하 기초지자체 최초(유일))
 - ▶ 종전 (1과 34명) → 확대 (3과 57명)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력증원 (정원 8명, 현원 6명 증원)

○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

-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개발 : 재난관리 상황 원스톱 컨트롤 기능 강화
 - ※ 재난상황시 신고내용 전산화 처리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진행상황 전 부서 공유
-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 : 경찰, 소방, 군부대, 관계기관 등 재난 상황 공유
 -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추가보급 및 신속한 상황전파(31대 → 56대)
-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 부서별, 개인별 임무 명시 및 구체화
- CCTV통합관제센터 및 민원콜센터 등 공조체계 구축
 - * **(CCTV통합관제)**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실시간 집중모니터링(5개반, 34명)
 - * **(민원콜센터 상황공유)** 대형화재, 상수도 누수 등 사회재난 초기민원 공유
- 재난 단톡방 운영 확대 : 시장 등 1,200명 포함, 재난상황 및 위험요소 등 실시간으로 공유 및 조치
- 상황관리팀 인력 보강 : 4명 근무(1인 1조 근무)→5명 근무(2인 1조 근무)
 - * **주간)** 방재직 2명 **야간)** 방재직 1명+당직원 1명

○ 시설물 안전보강 강화

- 지하차도 차단시설 추가 설치(4개소) 및 통제기준 강화 (30cm → 15cm) 및 4인 담당제 실시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집중관리 (15개소, 공무원 및 주민 전담 배치)

- 재난안전관리부서 직원 인사우대 강화로 안전조직 구성 내실화
 - 인사 가점 반영 최소 근무 연한 단축,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미호강 하천 관리 책임 관련

- (질의) 제방 관련 부분은 청주시장님이 혐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지하차도 관련 부분은 도지사님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왜 청주시장은 기소되고 도지사는 왜 기소가 안 되었는지?
 -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청주시장이 기소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음. 제방에 대한 관리책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천공사구간의 공사책임자는 하천관리청임.
- (질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기소된 것이 아닌지?
 - (답변) 그렇지 않음. 기소 사유는 하천 제방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느냐 여부인데 법적으로 청주시는 관리책임이 없음.
- (질의) 충북도도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지?
 - (답변) 국가하천의 공사는 하천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고 그 관리책임도 하천관리청이 져야 함.
- (질의) 하천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 (답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임.
- (질의) 미호천 관리책임소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는지?
 - (답변)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하천관리청은 환경부 금강유역청

이고 청주시는 충청북도에서 재위임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하천 공사는 하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 공사가 끝나서 준공 고시 이후에 이 관됐을 경우 우리 청주시가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음. 다만, 이 구간 안에 추후에 행복청에서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됐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행복청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행복청이 건설공사를 했고 이 과정에 허가와 그리고 허가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법적인 관리 책임은 환경관리청이라든지 발주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질의) 환경부차관이 이야기 한 공문 내용 관련해서 청주시 의 없는지? 하천 공사가 청주시의 관할이 맞는지?
- (답변) 금강유역청으로 하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었음. 그 공문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청주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달한 것에 대한 회신 부분임. 이 공문이 하천 공사 구간의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은 아님.
- (질의) 제방 붕괴, 제방이 절개되는 과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청주시장께서는 지금 하천관리공사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 책임인데 공사가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공사 발주처의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지?

- (답변)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
고, 그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천관리청이나 발주청이 책임
지고 점검하고 지도·관리해야 함.

○ (질의) 청주시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 (답변) 청주시가 법적 관리의무 책임은 없지만 그 위험을 감
지하거나 그런 사항을 알게 되면 소관 관리청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절개가 된 사
실 그리고 절개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소관청
에 반드시 통보를 했을 것임.

②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관련

○ (질의) 홍수통제소가 자치단체에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를 즉
시 알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는 즉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알렸는지?

- (답변) 홍수경보 발령 사항은 CBS 문자로 다 알려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CBS 문자나 이장
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③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 (질의) 청주시도 지근 거리에 있는 지자체임. 시장님 입장에서

사후관리, 유가족 대책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나름대로 유가족 전담직원도 하고 보상금 지급, 심리 치료까지 최선을 다했음.

○ (질의) 담당 공무원 지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셨는지?

- (답변) 초기 단계부터 시신 수습, 신원 확인, 장례 절차, 사후 보상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담직원 2명이 한 가족에 전담 해서 계속 지원을 해서 그 과정까지는 마무리를 했음.

○ (질의) 희생자들이 다 청주시민인지? 유가족 중 학령 인구 희생자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 (답변) 청주시민도 있음. 학령인구가 있는 유가족은 확인해보겠음.

○ (질의) 이 사고가 터지고 유가족 몇 번 만났는지?

- (답변) 한 번 만남.

(8) 대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포함)

(가) 보고 내용

I 참사 이후 검찰의 조치

□ 수사본부 구성

-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인 '23. 7. 21. 청주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여 부장검사 4명 포함 검사 15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였음

□ 수사 경과

- 참사의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철저히 수사하였음
 - 수사본부 편성 4일차인 7. 24. 1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6차에 걸쳐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시공사 등 28개소 압수수색
 - 현장조사,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및 300여명의 관련자 조사 실시
- '23. 12. 22.~28. 제방을 훼손하고 이를 묵인·방치하여 지하차도 침수의 주된 원인인 제방 유실을 야기한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24. 2. 27. 관련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
- '24. 2. 27. 이와 같은 제방 훼손을 묵인·방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하 '건설청'), 환경청 소속 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
- '24. 3. 21. 112신고에 부실하게 대응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14명과 허위 답변자료, 보고서를 작성한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 '24. 6. 19. 제방 훼손을 목인·방치한 청주시 공무원 3명, 이 사건 지하차도의 CCTV 모니터링이나 하천 수위를 점검하지 않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충북도 공무원 7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 '25. 1. 9.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청주시장, 건설청장, 시공사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
 - ※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로서는 최초 기소 사례
 - ※ 총 45명 기소(2명 구속 포함), 현재 43명 재판 중
- 별지 「피의자별 수사결과 및 재판 상황」 참조

II 참가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수사한 결과, 이 사건 참사는,
 - ① 시공사의 제방 훼손 및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와 감리단장의 목인, ② 공사관리 책임기관인 건설청 공무원들의 공사 관리·감독 부실, ③ 건설청, 청주시, 환경청 공무원들의 제방 포함 하천관리의 부실 등에 따라 사고 당일 호우에 의해 제방이 유실되었고,
 - 제방 유실에 따른 침수가 발생하였음에도, ④ 청주시, 건설청, 환경청 공무원들의 재난신고대응, 비상근무 등의 부실, ⑤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112신고 대응 부실, ⑥ 충북도 공무원의 지하차도 관리 및 통제 부실 등으로 급속히 침수된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는 등
- 관련 기관, 업체의 과실이 중첩적,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관련자들을 기소하여 엄단하였음은 위와 같음
-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범죄혐의를 수사한 결과, 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청주시장, 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제방이 훼손된 이후 안전한 상태로 원상회복되지 않은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규명함

○ 끝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이 사건 지하차도의 관리주체인 충청도지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 충청도에서는 지하차도에 대한 정기·정밀 점검 등 법령상 요구되는 관리를 실시해 온 점,
- 지하차도 시설물 자체에는 설계·설치상 결함이 없었던 점,
- 충청도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설치를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참사가 일어난 점,
- 충청도에서 지하차도 사전통제를 위한 기준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들이 '25. 2. 4.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음

[별지]

피의자별 수사결과 및 재판 상황

연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재판 경과
1	감리단 [(주)B○○]	나○○ (감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23. 12. 22. 구속 기소 (징역 4년 확정)
2		다○○ (공사담당)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		라○○ (공무담당)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4		췌B○○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5	시공사 [A○○(주)]	마○○ (현장소장)	하천법위반	'23. 12. 28. 구속 기소 (징역 6년 확정)
6		바○○ (공사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7		사○○ (공무팀장)	하천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8		A○○(주)	업무상과실치사상	
9		가○○ (대표이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25. 1. 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하천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1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아○○ (광역도로과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1		자○○ (광역도로과 사무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12		차○○ (광역도로과 주무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13		카○○ (사업관리총괄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5. 1. 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4		타○○ (사업관리총괄과 주무관)	업무상과실치사상	
15		구○○ (건설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6	금강유역 환경청	파○○ (하천국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24. 2. 27.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17		하○○ (하천공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18		거○○ (하천공사과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연 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재판 결과
19	충청북도 경찰청	너○○ (충청북도경찰청장, 치 안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20		더○○ (공공안전부장, 경무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1		러○○ (경비과장, 총경)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동행사교사 등	
22		머○○ (경비과, 경정)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23		버○○ (경비과, 경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24		서○○ (112상황실, 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25		어○○ (112상황실, 경사)	업무상과실치사상	
26	청주흥덕 경찰서	저○○ (청주흥덕경찰서장, 경무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동행사교사 등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27		처○○ (교통과장, 경정)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8		커○○ (112상황실, 경위)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 작 등	
29		터○○ (112상황실, 경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 작 등	
30	오송파출소	퍼○○ (순찰팀, 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24. 3. 21.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1		허○○ (순찰팀, 경위)	업무상과실치사상	
32		교○○ (순찰팀, 경감)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33	청주서부 소방서	노○○ (청주서부소방서장, 소 방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확정)
34		도○○ (청주서부소방서 예방 안전과장, 소방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24. 3. 21. 불구속 기소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 확정)
35	충청북도	재난 안전 실	로○○ (재난안전실장)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6			모○○ (자연재난과장)	
37			보○○ (자연재난대책팀장)	
38		균형 건설 국 도로 과	소○○ (도로과장)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39			오○○ (도로시설팀장)	
40		도로 관리 사업 소	조○○ (도로관리사업소 장)	
41			초○○ (도로관리과장)	

연 번	소속	피고인(당시 직책)		죄명	재판 경과
42	청주시	안전 정책 과	코○○ (안전정책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24. 6. 1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43			토○○ (자연재해대비팀 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4		하천 과	포○○ (국가하천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45		호○○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시민재해치사)	‘25. 1. 9. 불구속 기소 1심 재판 중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불기소결정서 자료 제출 관련

- (지적) 대검찰청의 충북도지사 불기소결정서 자료 미제출,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적)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검찰이 제출할 의향이 없어 보임.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종결한 것임. 이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질의) 국정감사 증언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의 취지 및 시급성에 비추어 제출해야 될 자료라고 보는데 답변은?
 - (답변) 불기소결정서를 지금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임.
- (질의) 검찰총장직무대행의 논리는 전혀 법에 맞지 않고, 국회 증언·감정법상 제출 거부 사유는 국가기밀 사항뿐임. 오후 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을 요청함.
 - (답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 불기소결정서 제출하셨는지?

- (답변)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했지만 그것은 중간 처분이고 지금 새롭게 대구고검에서 원점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음. 거기에 증거 설명도 있어 공개되면 항고 측에 압박을 당할 수도 있음.
- (질의)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했다고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 (질의) 충북도지사 불기소 이유 결정서는 공개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외부로 나왔는지?
- (답변)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음.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문건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 의아함.
- (질의) 불기소처분서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문건 맞는지? 문서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 (답변) 그러함.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지적) 기관장이면 나가면 안 되는 문서가 왜 나갔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조치해야 함.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줄 것 바람.

② 검찰수사 관련

- (질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재난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특정이 되지 않음. 접수자를 특정하고 그 접수자가 상부로 보고했는지 아니면 보고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묵살했는지,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상급자에게 보고됐는데 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기본임. 왜 그런 것인지?
 - (답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수사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 (질의)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는 금강홍수통제소의 계획홍수위 초과 경고임. 그러나 충북도 재난본부는 관련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음. 충북도가 금강홍수통제소의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 (답변) 일정 부분 조사를 통해 실무 공무원 여러 명이 기소가 된 상황임.
- (지적) 오송참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과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 (질의) 국조실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음. 검찰청법에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있는지?
 -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질의) 그런데 왜 경찰 수사가 안 되고 검찰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받았는지?

- (답변) 잘 모르겠음.

- (질의) 도지사에게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변) 항고청에서 감안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지적)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항고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것이고 밖에서 볼 때는 지금 불기소라도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는 것임. 두 번째로 제방 붕괴에 관해서는 책임을 많이 물었는데 침수나 감독에 관한 책임들, 아까 이야기한 기관들, 행복청·청주시·충북도·경찰의 책임들은 주로 부작위에 의한 책임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처벌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잘 챙기길 바람.

- (답변)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임.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쟁점별 다툼이 심하고, 검찰 수사도 처음인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더욱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공소유지 자체도 치열하게 다뤄야 할 부분임.

○ (질의) 공소장을 보면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 이전에 선제적으로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여야만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있음. 이것을 보면 검찰에서도 궁평2지하차도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오송 참사의 인명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는지?

- (답변) 맞음.

○ (질의) 차량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는지? 하천 제방 관리 실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중대시민재해까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교통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중대시민재해죄로는 기소가 1건도 없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만 가능함.

○ (질의) 궁평2지하차도 교통통제 대책이 준비가 되었어야 하고 그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지사의 책임인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인지?

-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평소에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음.

○ (지적) 지사가 도청 사무실에 있는 시간 06시 12분부터 07시 15분 사이에 분명히 금강홍수통제소에서는 06시 34분에 계획홍

수위를 넘었다는 통보를 하려고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함. 만약 계획홍수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지사가 보고를 받고도 출입 통제를 안 했다면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됨.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사하기 바람.

- (지적) 성훈수 주무관은 접수자한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급한 전화에 대해 당연히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 추론이 아닌지? 당시에는 도지사 주재로 충북재난본부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에 그 내용이 보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은폐 범죄 행위임. 이 지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에 책임지고 규명해주길 바람.

- (지적) 주무관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주무관은 기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고받지 못한 실장·과장 등만 기소된 것은 말이 안 됨. 숨긴 게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람.

- (답변) 확인해보겠음.

- (질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하면서 미비점이 있었다고 보는지?

- (답변) 중대시민재해 처음 사례라고 계속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정말 고생해서 수사를 했음. 중대시민재해의 법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정을 했다고 들었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고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 있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검에서 제대로 지금 면밀하게 저희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음.

○ (질의) 행복청 소속 주무관들은 민원 대응 소홀을 원인으로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됨. 그 이유는?

- (답변) 수사팀에서는 제방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본 것 같음.

③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 관련

○ (질의) 청주시장은 기소가 되었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충북도지사는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 (답변) 충북도지사에 대한 혐의없음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도지사를 도와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림.

- (답변)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2025년 1월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2024년 5월 13일 날 청주시검을 퇴임함. 불기소처분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

○ (질의) 하천법은 환경부 소관임. 하지만 위임을 받아서 충북도가 하게 되어 있고, 또 재위임을 해서 청주시에서 소관함. 그래서 충북은 책임을 면하고 청주시장만 지금 기소가 된 것임.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위임된 사

무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나 책임 관련해서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천관리청인 환경부장관, 광역지자체, 재위임 받은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다고 보임. 그런데 기초지자체만 기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지적하신 그 사항은 다시 항고청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 보고 누락된 게 아닌지 다시 보라고 했음.

○ (질의)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 1호에 비추어서 김영환 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음. 맞는지?

- (답변) 맞음.

○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 1호를 보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임. 예산의 경우 구평2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자동차단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비확정적인 예산으로 보전적 재원임. 특별교부세 신청만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질의)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지 않았음.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임.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 1호가 적용되

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같은 조항 제4호를 보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령에 당연히 자연재해대책법이 들어가는 것임. 검찰은 제9조 2항 1호만 적용하고 제9조 1항 4호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봐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 하실 말씀이 있는지?

- (답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전고검에서 지금 다시 한번 판단 중에 있고, 결정이 되는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음.

○ (질의) 유가족들이 항고를 한 상태인데 그 항고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 (답변) 항고장을 읽어 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해하거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보였음. 그 부분을 어떻게 항고청에서 볼 것인지 대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음.

○ (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바 궁평2지하차도는 미호천 인근에 위치해서 침수 위험이 상존한다는 특성이 명확하고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답변)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항고팀에 전달해서 이 부분까지 깊게 고려해 보라고 하겠음.

○ (질의) 충북경찰청장을 기소한 죄목이 허위공문서 작성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 경찰을 14명이나 기소한 것이 충북도나 청주시, 행복청에 비교하여 균형이 맞는 것인지?

- (답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공격방어 방법을 다투면 될 것 같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음.

○ (질의) 보통 항고 사건 처리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8개월 쯤인 이유는?

- (답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음. 공무원들 진술도 변화 과정이 있어 항고청에서는 그 진술 변화 추이도 지켜보고 있음.

○ (질의) 형소법 제260조에 따라 고발한 분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 하는 이유는 검찰을 믿고 제대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중대시민재해가 처음이다 보니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있음.

○ (질의) 오늘 민주당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스러운 부분들을 지적도 하시고 조사 및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특정인의 기소 여부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아니라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법리적으로 말씀하셔서 도움되는 말씀도 있고, 새겨서 잘 듣도록 하겠음.
- (지적) 충북지사하고 청주시장 두 사람이 재난안전 최고책임자인데 한 사람은 불기소, 다른 사람은 기소임. 지휘 감독의 범위나 책임, 법 위반 내용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옴. 청주시 같은 경우는 미호강 제방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충북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교통통제 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했는데 충북도지사는 기소되지 않았음. 그런데 충북도의 담당 공무원들 7명 모두 교통통제를 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기소됨.
- (지적) 불기소결정서의 취지는 인원,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임.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했던 인원을 확장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대한민국의 지자체장은 하나도 없게 됨. 명확한 법리를 더 검토해 보아야 함. 수사를 하면서 법리가 어려운 경우는 입법 취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음.

(9) 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가) 보고 내용

1 현장 조치사항

< 참사 개요 >

'23. 7. 15.(토) 집중호우로 청주시 흥덕구 소재 미호천교 제방 붕괴, 08:40경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하여 차량 17대 침수·사망 14명·부상 16명 발생

□ 사전 대비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수립 △재난관리 장비 점검·보급 △교육·훈련 등 사전 대비체계 구축

< 경찰청 추진사항 >

- ① '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계획 수립·시행(5.22.)
- ② 시·도경찰청 수난구조장비 일제 점검 및 순찰차 탑재 조치(6.12.~6.23.)
- ③ 호우·태풍 등 대형재난 상황 대응 시나리오 제작·배포(7.5.)
- ④ 극한 강우·태풍 내습 대비 시·도청 상황조치 훈련 실시(6.26.~7.14.)

- 위기경보 격상(7.13. 경계→심각)에 따라 경찰청 재난상황실 편성·운영, 시도청 상황관리관 화상회의 개최 등 비상 대응태세 확립

- 집중호우 대비, 예방순찰 강화 및 각 경찰관서장 판단(지역별 기상상황 감안)하에 필요시 비상근무 발령 지시(7.14. 19:15)

□ 참사 前 주요 상황

- 참사 하루 前(7.14.) 충북 전역에 '호우경보' 발령, 특히 청주 지역은 집중호우로 미호강 '홍수경보' 발령(7.15. 04:10경)

※ 7. 14.~15. 누적강수량 427.8mm / 충북 관내 재난 관련 112신고 67건(7.15. 00:00~07:00)

- 미호강 수위 상승으로 탑연삼거리 등 주변 도로가 침수됨에 따라 미호천교 양방향(오송↔강내) 도로 통제 등 침수 피해 예방(04:46경)

※ 오송 쪽은 궁평1교차로(오송파출소), 강내 쪽은 탑연삼거리(강내파출소) 각각 통제

- 청주 남이면에서 산사태가 발생(차량 매몰로 사망1·부상1)하여 교통경찰 등 순찰차 5대 배치, 석곡분기점~양촌분기점 구간 전면 통제(05:41경)

- 괴산댐 월류로 인한 댐 붕괴 및 하류지역 대규모 침수 우려로 괴산 · 충주지역 주민 약 7,500여 명 대피(06:30~09:22 월류 발생)

□ 참사 당일 조치

[참사 발생 前]

- 괴산댐 월류·산사태 매몰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충북청장 주재 지휘부 긴급회의 소집 지시(07:16)

※ 충북청 경찰관기동대 1개 부대, 괴산댐 월류 관련 주민대피 현장 지원 출동

- 오송순찰차는 도로 침수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 참사 장소와 1.9km 떨어진 쌍청리 회전교차로 및 456m 떨어진 궁평1교차로 교통통제

* "대한제지(오송읍 쌍청리 소재) 입구에 도로 침수가 돼서 차량이 빠져 있다"(07:11)

※ 인근 옥산순찰차는 혜능보육원 대피 조치(07:20), 강내순찰차는 탑연삼거리 교통 통제

- 미호천교 범람 관련 신고* 접수 후(07:04, 07:58) △홍덕구청 당직실 △오송읍사무소 △청주시청 재난상황실 통보 및 주민 대피방송 요청

*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주민 대피 필요"(07:04) △"궁평지하차도 통제 필요"(07:58)

[참사 발생 後]

- '궁평2지하차도' 침수 관련 최초 신고* 접수(08:37), △오송순찰차 현장통제·상황전파(09:01경) △교통순찰차 교통통제·구급차 이동로 확보(09:20경)

*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차들이 후진해서 차를 뺀다. 통제 필요하다."

※ 궁평2지하차도 방향 구간에 침수지역이 많아 우회로 이동하여 09:01경 현장도착

- 경찰청장, 사고발생 보고(10:16경)를 받고 즉시 △진상 확인 △시도청장 화상회의 소집 △서울 집회 동원 지방부대 신속 복귀 지시
- 충북청장은 10시부터 지휘부 긴급회의 주재 중 홍덕서장으로부터 참사 관련 인명피해 보고(10:21경)받고 현장 진출 및 지휘(11:30경)
- 서울청 집회대응을 위해 출동했던 2개 경찰관기동대 긴급 복귀, 참사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현장 통제 및 인명 구조 지원

2 | 이후 조치사항

□ 관련자 수사·감찰 등

- 참사 직후 충북청에 수사본부 설치(92명, 7.17.), 이후 수사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사본부장 교체 및 수사대 확대 재편(7.20.)

※ (본부장) 충북 수사부장 → 서울 광역수사단장 / (증원)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총 138명

- △관계기관 합동감식(7.17·20.) △참고인 조사(34명) 등 실시하였으나, 국무조정실의 검찰 고발 및 검찰의 송치요구*로 사건 송치(7.28.)

* 형소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항 /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송치 의무(동조 제2항)

- 검찰 수사 결과 경찰관 15명^{충북청 8, 홍덕서 7}이 기소(14명, '24.3.21.)·기소유예(1명, '25.1.9.) 조치되었으며,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 퇴직자 1명(前 충북청장, '23년말 계급정년)을 제외한 14명 징계 위 회부, 이 중 13명*은 1심 선고 시까지 징계보류 등 조치

* 대상자 중 퇴직임박자 1명은 퇴직 前 정직 1월 처분('24.12.31. 정년퇴직)

□ 제도 개선

- (지휘·대응역량 강화) 재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쏠 시·도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총경급 상황팀장 배치('24년上)

- 시·도 단위 경찰청-소방본부 간 협력관 총 72명 상호 파견('25. 3.), 재난 상황 공유 및 공동대응 강화

- 침수위험에 따라 지하차도·하상도로를 2개 등급^{가·나}으로 구분, △순찰강화 △경력배치 △교통통제 등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25.3.)

※ 행정안전부 등 협조, 「지하차도별 4인 담당자^{지자체2, 민간조력자1, 경찰1}」 운영
(’23.8월~)

- (112신고처리법 제정 등) 재난 현장에서 경찰관의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기반**
마련(’24.7.3. 시행)

* 긴급조치권, 피난명령 등(제8조) ** 관계기관의 장에 공동대응·협력의무
부여(제9조)

- 112신고 사건종별 분류에 ‘재해·재난’ 항목을 신설하고 신고
유형 세분화*,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정교한 대응 도모
(’25.9.)

* △자연 재난 △인파 관리 △화학물질 사고 △화재 △구조요청 △기타 재난(붕괴·폭발)
등 6개 유형

붙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장소 주변 지도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경찰청의 수사기록 제출 관련

- (지적) 충북도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질의) 경찰 수사기록 미제출 사유는?
 - (답변) 통상 우리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송치를 하면 수사 기록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송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이 부분은 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경찰에 남아 있는지 또 제공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② 검찰 수사로의 전환 관련

- (질의) 당시에 경찰이 일부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청 강력수사대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등 6개 팀을 138명으로 충원을 해서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 운영하였는지?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로 송치한 것인지?
 - (답변) 맞음. 당시 저희 광역수사단팀이 있었고, 아마 국조실에서 고발이 됐고 또 통상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수사가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어느 한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질의) 열흘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생각을 보면 수사 송치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수사 경합에 따른 것이라면 이게 앞으로 경찰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설사 중대범죄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 (답변) 쉽게 포기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움. 당시에 저희 경찰도 일부기는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국조실에서 감사 결과 일정 숫자를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하면서 검찰 쪽으로 고발을 했음.

○ (지적) 검찰은 수사 개시 4일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경찰 조사가 진행된 지 8일째 되는 날에도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안 했음.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경찰의 실력이 이 정도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아쉬움.

○ (질의) 오송참사 관련, 당시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할 때 자리에 있었는지?

- (답변) 심야회의 때라고 기억함.

○ (질의) 충북청 수사부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수사주체를 변경한 것, 검찰로 수사를 이관한 것에 대해서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어디서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닌지?

- (답변) 그런 것은 없음. 말씀드렸듯이 국조실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동일 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 다툼이 있기 때문임.

③ 기타 사항

- (질의) 충북경찰청장은 직접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됨.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하들한테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인지?
- (답변) 그러함. 보고받은 것도 없음.

(10) 소방청

(가) 보고 내용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응 및 개선대책

I 대응현황

□ 사고개요

- (일 시) '23.7.15.(토) 08:37
※ 충북본부 공동대응요청(경찰 08:40, 세종소방 08:52)
- (장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궁평2지하차도*
* 총 길이 685m(터널길이 430m, 양방향 진출입로 255m), 높이 4.5m
- (인명피해) 30명(사망 14, 부상 16)
※ 초기 인명구조 14명, 실종자 14명 전원 수습
- (재산피해) 차량 17대(버스 1, 승용 12, 화물차 4)
- (사고내용) 집중호우에 따른 미호천 범람으로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 (인원/장비) 누계 3,543명*, 849대** (현장투입장비 641, 기타장비 208)
* 소방 1,151, 충북도 193, 청주시 433, 중앙행정기관 124, 군·경 1,642
** 펌프 13, 구조 33, 구급 52, 조연 15, 구조보트 59, 대용량포 6, 중장비 170, 양수기 211, 기타 290

□ 주요 조치사항

일 시		주요 조치사항
중통단 가동 ~ 사고전	7.13.11:00	▶ 집중호우 대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7.13.22:26	▶ 상황판단회의, 중앙119구조본부 대용량포방사시스템(45,000ℓ) 전진배치 ※ 울산센터(22:40 출발) → 수도권대(7.14. 12:25배치) → 익산센터(7.14. 17:20 이동배치)

일 시		주요 조치사항
7.15. 사고 당일	09:39	▶ 충북119상황실 → 소방청 119상황실 최초 상황보고(FAX)
	09:50	▶ 소방청,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화재예방국장)
	10:28	▶ 중앙119구조본부 충청강원특수구조대 대기인력 지원 출동* 및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오송 이동 배치** * 충강대 6명 3대(구조공작차, 구조보트, 화물차), ** 13:06 도착, 14:55 배수
	10:40	▶ 침수사고 관련 경찰청 상황실 CCTV 협조 요청 ※ 청 상황실 → 충북 상황실(도로관리사업소 CCTV 확인) → 충북 경찰청
	12:30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오송 공평 지하차도 출동 (13:08 도착)
	14:50	▶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 (10대 31명*) * 세종 7대 25명, 전북 2대 4명, 중앙학교 1대 2명 ↳ 08:52 충북소방본부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先 현장 도착 후 구조활동 실시

◀ 참고자료 ▶

□ 당시 풍수해 상황

- (강수량) 청주(359mm), 괴산(302mm) 등 충북 평균 누적강수량 283.2mm
- (하천수위) 사고당일(15일) 주요하천 범람위험 수준단계(경계 이상) 16개소
※ 청주(10개소), 제천(1개소), 보은(2개소), 괴산(3개소)

✓ **전일부터 침수사고 직전까지** 계속된 호우로 **산사태, 도로유실, 하천범람 등 재**
난발생 위기가 **충북 전역 집중적 분포** ⇨ 충북소방본부 **재난접수 건 폭증** ↑

□ 전국 소방의 대응 상황 7.15.(02:36~09:37)

- 경북 예천 등 주택 11개소 토사 매몰로 18명 사망, 충남 청양·세종·충북 청주 주택 및 차량 매몰로 3명 사망 등
- 중부권·경상권 집중 호우로 인한 전국단위 수해 대응 상황관리

□ 초기 인명구조 현황 ※ 인명구조 14명

- (미호천 독방, 08:10) 공사인부 7명 대피유도 · 청주시청 상황전파
- (공평2지하차도, 08:56~10:19) 11명 인명구조*
* 08:56 옥산센터 3명, 10:02 서부구조대 1명, 10:19 조치원구조대 7명
- (공평1지하차도, 09:48) 침수 중인 차량에 있는 3명 인명구조(청주서부지휘차)

□ 일자별 실종자 수색사항 ※ 실종자 14명 수습

1일차 ❖ (주요활동) 실종자 1명 발견(공항 방향 지하차도 입구, 10:25)

- 구조보트 및 수중드론 수색 실시 ※ 시야가 나오지 않음
- 중통단장 현장 상황판단회의 실시 ※ 청장, 충북지사 등 참석
- 중앙구조본부 대용량방사시스템(45,000ℓ) 배수 실시(14:55~)
- 자자체 등 유관기관 물막이 공사 실시(세종방향 22:15, 청주방향 23:35)

2일차 ❖ (주요활동) 실종자 8명 발견, 버스 등 침수차량 4대 견인

- 대용량포 방사시스템(2대) 및 육군 양수기(8대) 이용 배수 실시
- 소방·군 등 합동으로 지하차도 잠수 수색 실시

3일차 ❖ (주요활동) 실종자 5명 발견 및 지하차도 침수차량 13대 견인

- 소방·군 일렬대형으로 지하차도 정밀수색(6회) 및 보트 수색

II 개선대책

1 대형재난 국가 총력 대비·대응체계 구축

- **(통제단)**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및 운영기준**을 단순화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기능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존) 4부 1대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긴급복구부, 현장지휘대)

→ (개선) 3부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 '대응단계'와 '통제단 운영' 분리 → 대응단계와 관계없이 재난규모, 재난 유형,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가동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가이드라인 마련)

- **(동원령)** 통제단 가동과 관계없이, △재난 발생·우려 시 신속하게 동원령 발령, △동원규모 2배 확대, △동원 소방력 예산 지원근거 마련

※ (기존) 재난발생 시 동원 → (개선) 재난발생 및 “우려 시 동원” 및 “동원 규모 확대”

구분	동원령 3호	동원령 2호	동원령 1호
개편	현재 200대 → 400대 이상	현재 200대 → 400대 미만	현재 100대 → 200대 미만

- **(지휘역량 강화)** △전국 소방학교(9개) 지휘역량강화센터(ICTC) 구축*,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지휘역량 단기 실무교육 신설
 - * ('15.) 서울 → ('19.) 중앙, 경기 → ('22.) 광주, 경북 → ('23.) 부산, 강원 → ('24.) 인천, 충청
- 현장지휘관 자격체계 정립 및 자격별 교육·평가모델 표준화*
 - * ① 초급(위, 센터·구조대 팀장), ② 중급(경, 현장지휘팀장), ③ 고급(령, 현장 대응단장), ④ 전략(정, 소방서장)
 - ↳ 가상현실(VR) 기반 대형·특수 재난환경 구현, 계급·역할별 필수역량(직무역할) 평가·인증
- 현장지휘관 신규보직자 실무교육*, 긴급구조지휘대 팀단위 교육** 신설
 - * ICTC 활용 지휘실무교육(소방령, 3일), ** 현장지휘관 - 팀원 간 현장대응 등 팀 워크 훈련(월 1회)

- **(장비보강)** 전국 4개 권역에 대·중용량포방사시스템 추가 도입(7대*) 하여, 전국 어디서나 재난성 집중 호우 발생 시 신속 출동·대응

* 대용량포(4만5천L) 3대('25년 충청권^{서산}, '27년 호남권^{여수}, '29년 수도권^{남양주}), 중용량포(8천L) 4대('26년 권역별 1대)

↳ ※ (既 배치) '22년 영남권^{울산} 대용량포 2대(4만5천L 1대, 3만L 1대)

2 재난상황 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매뉴얼 정비)** 대형 자연재해 시 유관기관 상황전파·공동 대응 및 출동 지령 등에 관한 대응절차 신설*(「119상황관리 표준대응 매뉴얼」 개정)

* △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 민원성 신고 등을 접수한 경우, NDMS를 통해 상황전파 및 공동대응 요청, △ 구조출동 시 선제적으로 구조장비 확보·출동하도록 지령

- **(상황전파·공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를 통해, 119신고데이터*를 행안부·지자체(시·도, 시·군·구) 자동 전파

* (기존) 화재·구조 등 30종 → (개선) 화재·구조·구급·풍수해·산사태 등 총 38종

재난종별	재난분류	상세내용
화재	10종	일반·대형·지하·고층·산불·특수·차량·기타·속보설비·약자시설
구조	13종	붕괴·산악·수난·교통·기계·EV·추락·약물·폭발·항공·수색·재해·화학
구급	5종	교통사고·가스중독·화상·부상·사고부상
기타	10종	산사태·전기·가스·환경·응원·재해·풍수해·배수·급수·한해

- **(공동대응)** △ 소방·경찰 공동대응 시 기관간 출동정보 자동 전송* 및 조치결과 통보 의무화(완료), △ 공동대응 기관 지자체까지 확대('25년)

* 문자로 출동기관(센터·지구대), 인원, 보유장비, 연락처 등 전송 → 실시간 출동정보 공유

- **(협력관 파견)** 소방-경찰 상황실 간 상호 상황협력관을 파견*으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공유

* (중앙) 소방령 ↔ 경정 각 4명('23. 5. 8.), (시·도) 소방경 ↔ 경감 각 72명 ('25. 3. 24.)

↳ 지자체 → 소방상황실 상황협력관 파견 확대 논의 중 (범정부 자 연재난대응TF)

- **(119시스템 구축)** 풍수해 등 119신고 폭주 시 AI 신고접 수*, 시·도 구분 없는 최단 거리 출동대 편성 등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 119 신고 폭주 시, AI가 긴급도를 판단하여 우선조치가 필요한 순으로 접수대 연결

** 차세대 119시스템 구축 (1,703억원, '24.12.9.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6년(상세설계)	'27년(시범구축)	'28~29년(전국확산)
• 시·도 현황 분석 및 개선안 세부 도출 • 시스템 상세 설계 용역	• 시범구축 (2개시도) • AI 신고 접수 서비스 • 신속 광역 출동체계 구현	• 전국 통합 GIS 구축 • 클라우드 기반 통합 • 데이터 개방 및 포털 구축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 (질의) 재난 상황에서 통제단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 (답변) 여러 가지 임무에 대해 각 부처의 임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현장 긴급구조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
- (지적) 통제단이 가동이 되어야, 재난안전법상의 육상 재난대응의 전권은 소방이 가짐. 통제단은 소방 바깥의 자원들까지 지휘하고 통제하는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임. 그래서 소방은 이전까지는 대응 단계와 연계해서 선제적인 통제단 가동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집행을 해 왔으나, 윤석열 정권 이후 선제적 통제단 가동 기조가 무너짐.
- (질의) 소방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한 문서를 보면, 대응 단계에 따라서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음. 재난대응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 재난대응체계가 형해화 된 것이 아닌지?
 - (답변) 시·도 의견을 수렴하였고, Q&A 형태로 만들어 시도에 설명하였음.
- (질의) 해당 회의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소방이 선택적 통제단 지침만 도입하지 않았어도 오송 참사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 (답변) 과거에 운영을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조직 내부에서 계속 노정이 되었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질의) 그러면 지침 개정 이후에 통제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함. 미호천교의 홍수주의보 발효가 14일 17시 경이고 홍수경보 발효가 15일 4시경임. 14일 17시경부터 통제단 가동이 됐으면 통제단장이 재난안전법상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하여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지?

- (답변) 그때 당시에 13일부터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13일부터 중앙긴급통제단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긴급통제단임. 이는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동되지 않았던 것을 가동되었다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충북에서 일어난 일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적) 선택적 통제단 지침을 내린 이후에 이 긴급구조대응계획 지침이 다 망가짐. 기상특보가 발효되어도 출동장비 점검이나 위험지역 확인만 하고 소방청이 나서서 통제단장이 재난대응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된 것임. 오송 참사

는 그 결과라고 봄.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통제단 가동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서 하게 두니까 아무도 통제단 가동 안 하고 긴급구조체계 회피하고 결국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것임. 소방청 차원에서 통제단 문제 개선 대책 다시 제대로 마련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람.

- (답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통제단 가동 이전에 소방청에서는 긴급대응팀이 24시간 상시 가동이 되고 있음. 통제단 가동 전의 단계인 상황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통제단으로 격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11) 금호건설

(가) 보고 내용

I 공사 개요

□ 과업의 주요 내용

○ 미호강 하폭 확대에 의한 신설 교량 설치 및 기존 미호천교 확장

－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미호강 하폭 확대에 기존 도로구간을 신설 교량으로 설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강이 병천천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하폭이 급격하게 축소(590m→360m)되어, 하폭 확대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철거된 기존 제방 토사를 이용하여 신설 제방을 축조하는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17.03~21.08)」 계획을 수립

－ 신설 제방을 축조하는 하천정비사업과 기존 미호천교 확장 공사는 별도 공사로 금호건설은 후자에만 관여함. 기존 미호천교*는 홍수위를 고려해 교량 높이를 0.85m 인상하고 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존 미호천교의 구조 안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어 기존 미호천교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



□ 발주처/시공사 등

- 발 주 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설 계 사 : 동부엔지니어링(60%), KG엔지니어링(40%)
- 감 리 사 : (주)이산(40%), 드림ENG(30%), 보람엔지니어링(30%)
- 시 공 사 : 금호건설(주)(80%), 일진건설산업(20%)
- 발주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 수행 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발주 형태**

Ⅱ 기존 제방 절개 및 임시제방 축조 경위

□ 신설 교량 설치를 위한 필수적 선행 공종인 기존 제방의 절개(`21.10)

- 하폭 확대에 따른 신설 교량 설치를 위해 기존 미호천교와 신설 교량이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한 **기존 제방을 최초 설계에 반영*된 대로 계획하상고**까지 흙깎기**

* 기존 제방 시점부터 강외지구 신설 제방 구간까지 기존 도로 350m를 계획 하상고까지 흙깎기하고, 총 7개의 교각(P1~P7)과 교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량구조물 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흙깎기 공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관련 공사 내용은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등에 기반영되어 있었음

** 계획하상고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바닥의 높이를 목표치로 정해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정비가 끝난 후 하천 바닥이 어느 높이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한 설계치. 신설 교량은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공사구간 내에 위치하므로, 신설 교량 하단부도 반드시 계획하상고에 맞춰 흙깎기가 이루어져야 함.

- 신설 교량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제방의 절개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 사업의 최초 설계에는 기존 제방 절개 공정이 반영되어 있었음. 다만 당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17.03~’21.08)」에 따라 강폭 확장부에 제방이 신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 사업 최초 설계에는 별도로 임시제방 설치 부분을 반영할 필요는 없었음



□ 신설 제방 설치 지연에 따른 임시제방 축조

(`22.06.10~`22.6.27 / `23.06.29~`23.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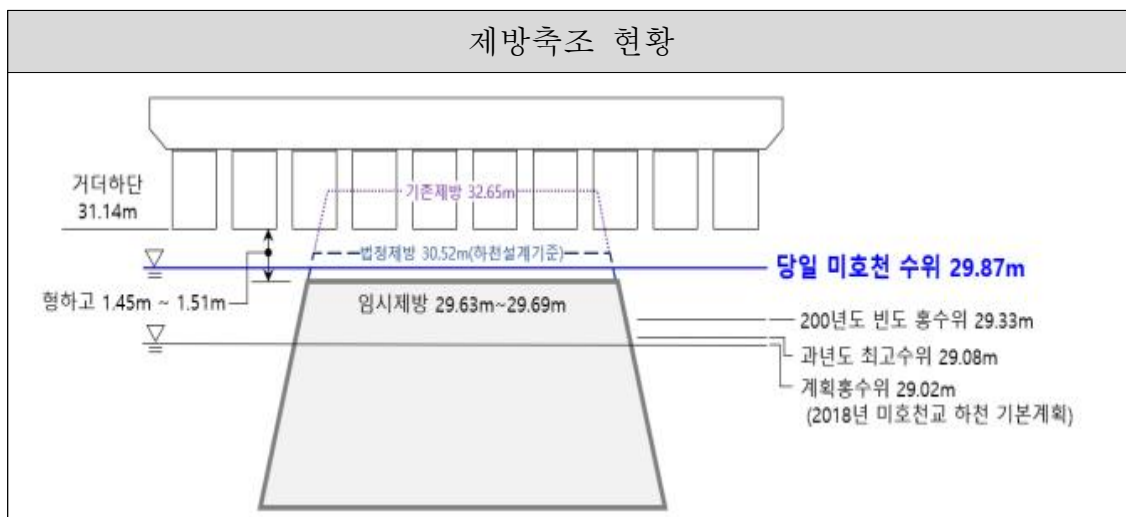
- 금호건설은 기존 설계에 따라 2021. 10.경 교량의 교각(P7)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제방 일부를 예정대로 절개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강외지구 신설 제방의 설치가 지연**되어 임시제방 설치 등 수해방지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방의 관리책임을 이관받은 금강유역환경청의 별도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2022.1.1. 국토교통부의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 이관됨

**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강외지구 신설 제방은 당초 2021.8경 완공될 계획이었음

*** 금호건설은 제방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및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2023년 임시제방 축조 행정지도)를 거쳐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임시제방을 축조

- 현지 여건상(구조물 하부 공간 부족) 법적 기준(계획 홍수위에 1.5m의 여유고를 더한 높이 확보하여야 함)에 못 미치는 임시제방 축조



Ⅲ 월류로 인한 임시제방 기능 상실

□ 기록적 집중호우에 따른 월류로 인한 임시제방 기능 상실
(`23.07.15)

-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강 수위는 기존 최고 수위를 기록한 2017.7.16.의 29.08m와 200년 빈도 홍수위인 29.33m를 초과한 29.87m를 기록.

* 2023.7.15. 청주지역 일 강수량 256.8mm, 이틀 누적 427.8mm로
1967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

- 신설 교량 설치를 위한 기존 제방 절개로 인하여 기존 강외지구 제방은 수해방지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었고, 금호건설이 공사현장 내에 설치한 임시제방마저도 급격한 하천 수위상승에 따른 월류로 인해 기능을 상실함
- 임시제방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궁평 2지하차도로 오전 8:27 강물 최초 유입, 8:39 차량 통행 불가능, 8:51 완전 침수 및 사상자 발생(사망 14명, 상해 16명)

IV | 주요 조치 사항

□ 사고 전

- 사고 전날과 당일 새벽부터 현장에서 임시제방 상황 및 범람 수위를 지속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감리단, 발주청과 실시간 공유하며 역할 분담*

* 사고 당일 감리단과 발주청은 오전 4:57부터 총 21차례 유관기관에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를 요청하였으며, 특히 오전 7:56 감리단장은 충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궁평지하차도 침수 우려를 알리고 교통 통제 요청

- 금호건설은 범람 위험에 따라 오전 6:50 작업자를 투입하여 방수포를 설치하고 7:10 장비를 투입하여 임시제방 긴급 보강 작업 시행

□ 사고 후

- 사고 당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궁평2지하차도로 추가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고자, 현장 장비(덤프 및 굴삭기)를 투입하여 **궁평2지하차도 상단 주변에 톤백 마대***를 설치
 - * 현장 본선 토공부 보조기층 공사용으로 포설되어 있던 골재를 활용하여 긴급하게 톤백 마대 제작 및 지원
- 유실된 임시제방 **긴급 복구**(7.15~7.16) 및 긴급 복구된 임시제방 **보강 공사**(7.16~8.09)
- 공사 준공 전인 `24.01에 **임시제방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임시제방 철거 및 **재축조**

V 재발 방지 대책

□ 안전·방재 활동 강화

- 사전 점검 강화
 - － 사업장 주변의 방재 취약지역 점검 및 보강
 - － 취약 분야 관리강화를 위한 안전·방재 기술자문단 운영
 - － 경영진 주도로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안전·방재 활동 정례화
- 비상시 지원 체계 구축
 - －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시나리오 구축(대표이사 주관 중대재해 재난 대응 TF팀 운영)
- 유가족 지원
 - －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등 지원 대책 마련

-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가 후속 조치

VI 법적·행정적 제재

- 형사 절차
 - 현장소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확정 및 개인 업무정지 8개월 확정
 - 하천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법인 포함 4명 관련 1심 재판 진행 중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인 포함 2명 관련 1심 재판 진행 중
- 행정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1년,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 1년에 관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책임 관련

- (질의) 시공사로서 제방을 제멋대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세운 장본인이면서도 관청이 위험요인을 관리했어야 된다고 변명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 같음.
- (답변) 임시제방 축조 관련해서 저희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질의) 회사의 대표로서 한 말씀 바람.
- (답변) 임시 제방 축조 관련된 시행착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책임감을 통감하고 유가족 여러분들과 생존자,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말씀을 드립니다.

② 참사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대책 관련

- (질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청북도와 수해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제방 절개 관련 충북도에서 공사 현장에 나온 적이 있는지?
- (답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2) 일진건설산업

(가) 보고 내용

- 별도 보고 내용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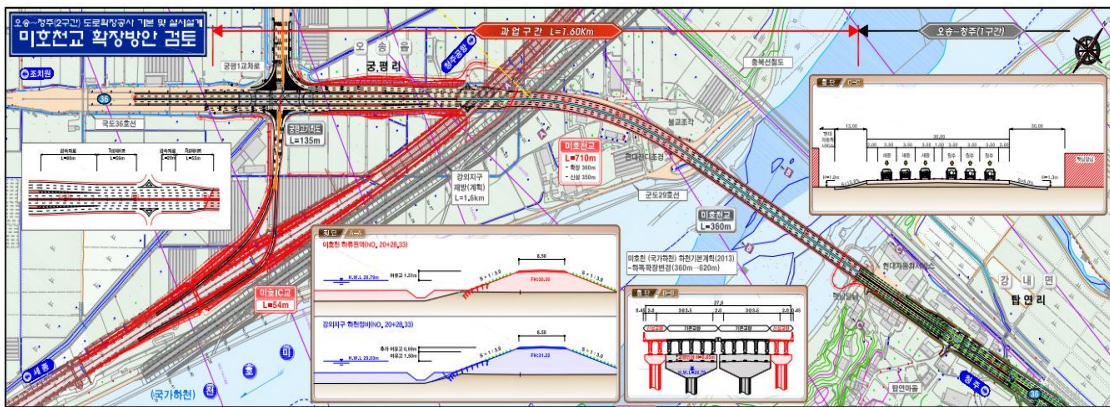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 별도 질의·답변 없음.

(13) (주)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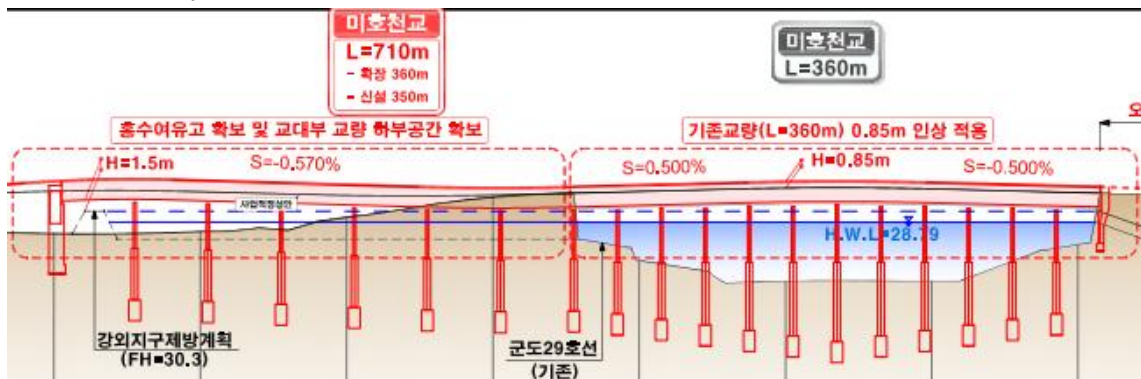
(가) 보고 내용

1 공사 내용



※ 위 도면은 설계사가 대전청과 협의한 자료의 일부 임

총 교량길이 710m(기존교량 360m를 4→6차로 확장, 길이 350m 신설 교량을 기존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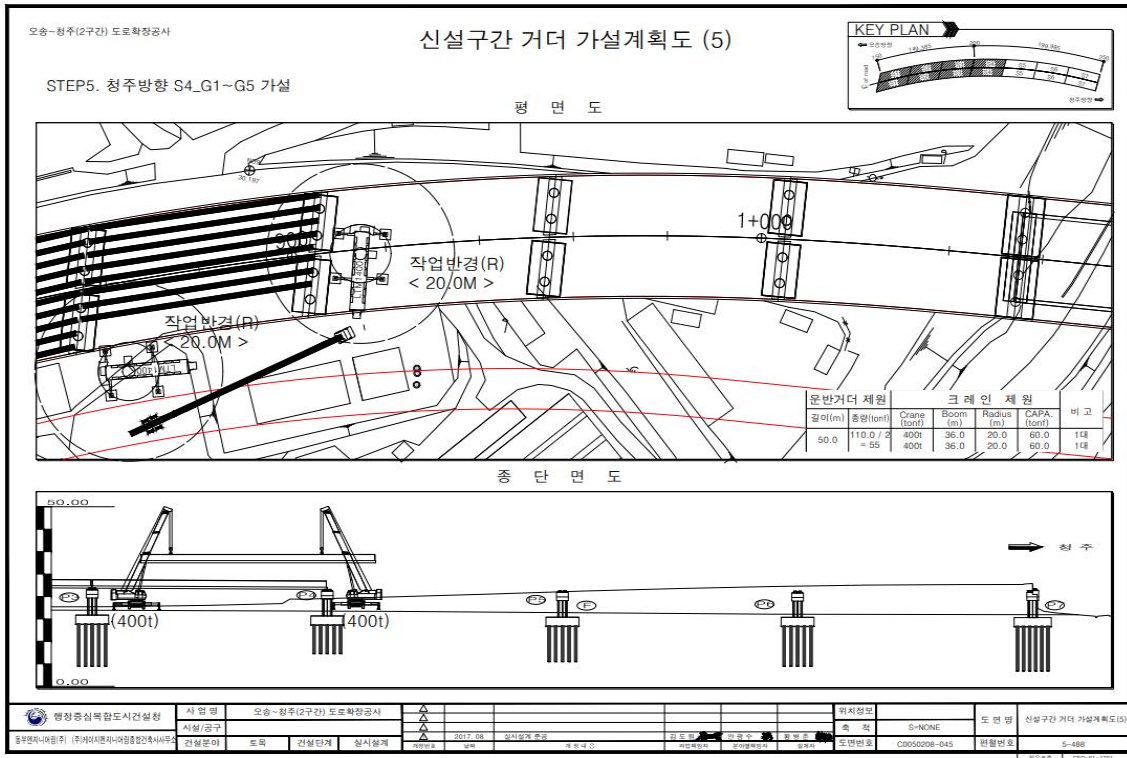
※ 위 도면은 설계사가 대전청과 협의한 자료에서 교량 부분만 발췌한 것임

→ 신설교량과 기존제방 간섭, 신설교량 시공을 위해 기존제방을 절개해야 함을 알 수 있음

2 신설교량 설치 설계 및 공사 현황

1. 신설교량의 거더* 설치 공사 설계도면

(거더* : 아스팔트가 포설되는 콘크리트 슬래브를 받치는 구조물로 길이는 50m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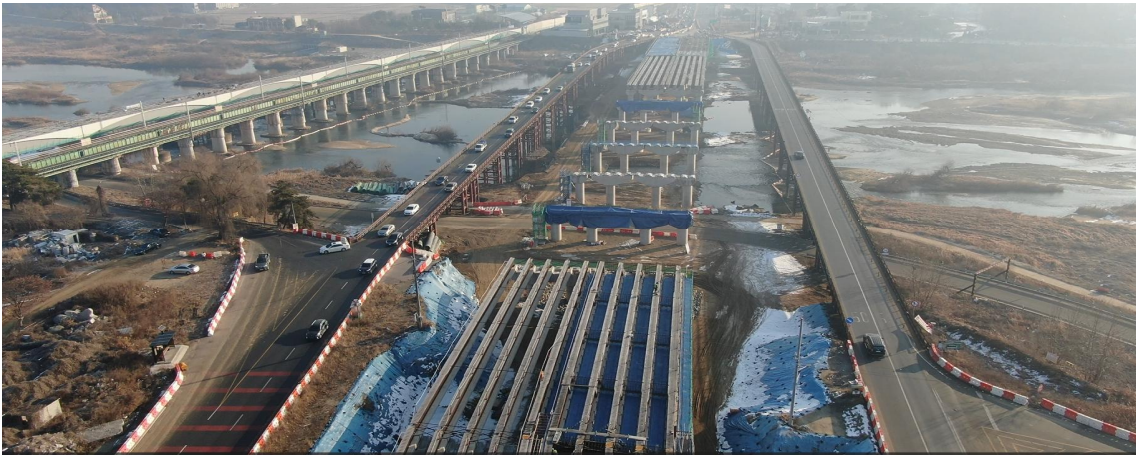
기존 제방을 굴착하여 평평하게 조성한 하상*에 400ton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거더를 들어 올려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하상* : 하천의 바닥면을 하상이라고 함. 신설교량 구간의 부지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신설하는 강외지구 계획 하상면까지 굴착하는 것으로 설계됨)

2. 신설교량의 거더 운반 공사 사진



3. 신설교량의 거더 설치 및 거더 공사 전경



4. 기존제방 절개 설계 내용에 대한 사실

- ▶ 위 도면과 사진은 기존제방을 준치한 상태로 신설교량 가설이 불가함을 쉽게 확인.
- ▶ 기타 설계도서를 통해서도 기존제방은 교각 공사 전에 절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 설계도서를 검토한 전문가 103인은 기존제방은 교각공사 중 절개되는 것이라는 의견
(전문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구조/토질 분야 각 1인, 설계 전문가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 50인, 시공전문가인 토목시공기술사 50인)

1. 임시제방 계획 및 행정절차

▶ 임시제방은 과년도 최고수위와 홍수위를 조사, 홍수위(100년)+1m(여유고) 높이로 계획 시공.

※ 하천설계기준은 영구제방 높이는 홍수위+1.5m, 잠정제방은 영구제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임시제방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홍수위+1m로 시공



※ 위 사진은 실정보고에 있는 하부공 시공 현황(임시제방 축조 위치 표시) 부분을 발췌한 것임

▶ 설계에 따라 기존제방을 절개하여 신설교량을 공사하고, 우기 대비 임시제방축조 실정보고(감리단 ↔ 행복청, 2022년 8월 24일 승인 요청, 2022년 9월 5일 승인)

2. 임시제방 붕괴 사고 현황

▶ 임시제방은 설계기준인 100년 빈도 홍수를 초과하는 200년 빈도의 강우로 인해 월류가 발생(2023년 7월 15일 07시 51분)했고, 08시 10분경 제방 기능을 상실

▶ 임시제방은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까지는 제방기능을 유지했었으나, 지속된 강우로 200년 빈도를 초과하며 월류, 월류에 저항력이 없는 토사 제방 특성 상 붕괴 됨

1. 사고 당시 근무 현황

- ▶ 단장을 포함한 감리원 3인 중 사고 전날인 7월14일 1인(맹창진)비상근무로 정상 대응
- ▶ 7월15일 04시10분 ‘홍수경보’ 발령으로 단장은 04시57분 현장 출동 대응, 감리원(김태환)은 09시경 현장 도착
- ▶ 감리단장은 현장 도착 즉시 제방 취약부를 보강하면서 7월15일 06시14분에 관련기관에 처음 대피 요청, 제방 붕괴 전까지 행복청과 함께 총 21회 사고위험 전파 및 교통통제 요청

2. 본사의 현장 관리

- ▶ 월간 및 분기 현장안전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 ▶ 취약 시기의 별도 점검은 매년 해빙기(3월), 우기대비(5월), 동절기(11월)에 시행
- ▶ 전 현장 대상 회사 홈페이지에 안전관련 유의사항(건설사고 사례집,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담당자 관련 규정,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법률, 재해 유형별 사망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등)을 지시 및 공유
- ▶ 자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매년 1월에 시행하여 사고예방 한계 인식과 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의식 제고, 사전예방 및 관리체계 개선
- ▶ 기술역량 제고 및 리스크 예방교육을 매년 2월 시행
- ▶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사례집을 연 1회 작성 현장 배포하여 유사사례 방지

3. 중대재해 예방 노력

- ▶ 2021.12.22 : 열린노무법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대응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행계약 체결
- ▶ 2022.04.18 :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계획서 마련
- ▶ 2023.02.07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 별도 질의·답변 없음.

2. 현장조사 (9월 15일)

(1) 공평2지하차도

(가) 보고내용

① 금강유역환경청

미호강(前 미호천) 하천정비사업 현황 보고

I. 사업 개요

- ☐ **(배경)** 미호강-병천천 합류부 하천폭(350m)이 다른 구간의 하천폭(600m)에 비해 급격히 좁아짐에 따라 폭우 시 병목현상 발생
- ☐ **(주요내용)** 기존 제방을 허물고, 뒷편에 새로운 제방(1.68km)을 설치
 - 미호강-병천천 합류부 하천폭 확대(350m → 610m)
- ☐ **(기간/예산)** '17.3월~'25.12월 / 618억원(보상비 482, 공사비 등 136)
 - ※ 도로미호천교 확장('18.4~'24.6), 철도충북선 개량('20.4~'25.4) 사업 기간 중 하천공사 중지('20.2~'24.2)

- ▶ **(18.4)** ^{행복청} **미호천교 확장공사(4~6차선)** 하천점용 최초 허가(국토부 대전청)
- ▶ **(21.3)** 공사내용 변경(기존교량 활용→철거 후 신축) 허가(국토부 대전청)
- ▶ **(22.11)** 공사기간 연장(22.9→23.12) 허가(환경부 금강청)

※ 기존제방 절개 후 공사 시행, 홍수기 중 임시제방 설치, 홍수기 후 임시제방 철거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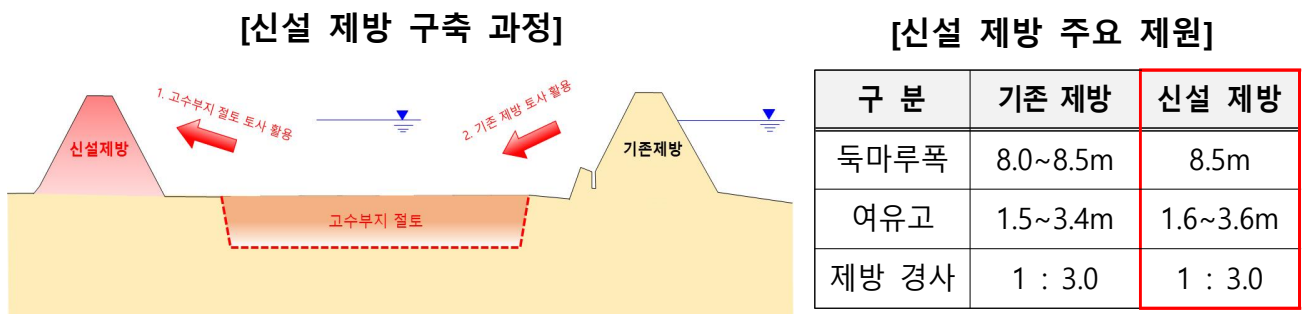
II. 하천정비 주요내용

- ◇ ('24년 홍수기) 신설 제방, 기존 제방을 활용한 **이중 홍수방어체계 구축**
- ◇ ('25년 홍수기) 기존 제방 철거로 **하천폭 260m 확대**(→하천 수위 하강 효과)

□ (주요경과)

- ('24.3~'6) 신설 제방 축제공 완료(높이 6.0m) ※ **이중 제방 완성**
- ('25.1~'25.6) 기존 제방 철거, 고수부지 성토

- **(기대효과)** 하천 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짐**(상류 11km까지 하천 수위 하강)



III. 홍수기 대책

[하천 수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 홍수특보(주의보·경보) 발령 :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 세종·청주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모든 사람**에게 **침수우려지역 정보 전달**

* 하천 수위가 계획홍수위 **60% 도달** 예상시 **홍수주의보**, **80% 도달** 예상시 **홍수경보**

[하천 수위가 위험수위에 실제 도달하는 경우]

□ 홍수취약지구 협의체* 본격 가동

- ①개별 문자 별도 발송, ②위험지역 주민은 대피소 이동(→오송읍 복지회관, 5분 거리)

* 금강청, 금강홍수통제소, 지자체(충북도, 청주시, 오송읍), 주민대표, 수자원 공사 등

- 국가하천 CCTV를 활용하여 하천구역(고수부지, 제방 등) 내 위험요소(사람·차량 진입 등) 확인, 대피 유도



청주 오송 공평2 지하차도 시설 및 관리 현황

I. 지하차도 현황

- **(위 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 241-3번지 일원(지방도 508호선)
- **(규 모)** 연장 685.0m, 폭 19.3m (왕복4차로)
 - * U-type 시점 140m, 종점 115m, BOX구간 430m
- **(발 주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 '15년 1월 착공, '19년 12월 준공 후 '20년 2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관

II. 사고 개요

- **(사고일시)** '23년 7월 15일(토) 08시 27분
- **(피해현황)** 사망 14명, 부상 16명 / 차량 침수 17대
- **(사고경위)**
 - 당일 일강수량 309.8mm, 3일 누적 453.4mm의 집중호우
 - (08:27) 임시제방 붕괴에 따른 하천수 지하차도 유입
 - (08:40) 지하차도 완전침수 * 전기실 침수 08:51
 - (09:15) 현장도착 및 지하차도 통제 / 수색 및 배수작업 지원



Ⅲ. 지하차도 시설개선

□ 차량 진입차단시설 및 도로전광판 설치 ('23.12.~'24.6.)

- (사 업 비) 7억원(특별교부세)
- (사업내용) 진입차단시설 및 도로전광판 설치 2개소(상·하행 각 1), 비상통신시설 설치(무선통신설비, 비상전화, 방송시설)

□ 방재시설 보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 ('24.4.~'24.7.)

- (사 업 비) 약 64억원(국비 2,748백만원, 도비 3,613백만원)
- (사업내용) 전기실 인상, 배수펌프교체, 핸드레일 8,315m (6~13단), 비상사다리 100개소, 인명구조함 설치 26개소 등

□ 차수벽 설치 ('25.5.~'25.7.)

- (사 업 비) 3억원(특별교부세)
- (사업내용) 차수시설(L형옹벽) L= 155.6m



진입차단시설 설치(2개소)



전기실 인상(1.7m)



비상대피시설(BOX구간) 설치



차수벽 설치

IV. 관리 강화

□ (통제기준 강화)

- 침수심 5cm 도달 시(←舊 50cm) 또는 홍수경보 발령 시(미호강교 수위 8m)
 - * (통제기준 외 즉시통제) 배수펌프 미작동 시, 관계기관(홍수통제소, 경찰, 기상청 등)으로부터 위험 정보 통보 시 등
 - ※ '25. 9. 10.부터 통제기준 5cm 강화 적용(국토부 「침수사고 방지 강화방안 적용」, '25. 7. 18.)

□ (4인 담당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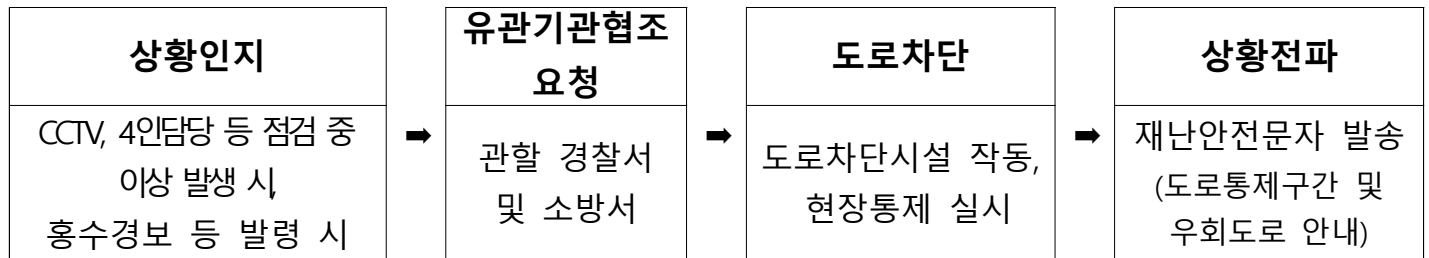
- 공무원 2인(도로관리사업소, 읍사무소), 조력자 1인(주민 등), 경찰 1인 지정
- 현장 예찰(호우주의보, 홍수주의보) 및 상주(호우경보, 홍수경보)

□ (민간업체 위탁·관리 운영)

- 1일 3회 지하차도 및 주변 예찰(연중), 현장 상주(호우주의보 이상)

□ (긴급 통제 및 상황전파)

- (통제흐름도)



- * 침수심 5cm 도달 시 진입차단시설 작동(자동)



수위감지센서(부력식)



상황관리(CCTV, 배수펌프 모니터링)

V. 현장 사진



(나) 주요 질의 답변·내용

①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및 임시제방 관리 책임 관련

- (질의) 제방 절개는 참사 발생의 주요 원인임. 제방 절개를 어디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결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교각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방 절개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절개한 제방 등에 대한 관리 여부가 문제임. 그리고 또 홍수기에 거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행정 기관은 사전 대비도 하고 사후 대비도 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음.
- (답변) 기존 제방이 있었던 자리에 구조물 3개가 새롭게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음. 이 부분을 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하상계획도 이루어졌는데, 이 계획에 설계를 반영함.
- (질의) 4개 교각을 설치했다는 것은 기존 제방을 훼손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의 절차가 관리청에 어떻게 보고되고 승인을 받았는지?
- (답변) 명시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이 부분을 절개한다는 표현을 담지는 못했음. 그전에도 다른 공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통상 허가 신청 시 교량 설치 정도로 적어왔음.
- (답변) 하천점용허가 당시 관할인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는 제방 절개 부분이 허가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이후에는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첨부 서류인 설계도면에 미호천교의 교각을 높이기 위해 제방을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쌓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법원은 시공사 및 감리 업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판결에서 첨부된 설계도면으로 제방 용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질의) 2022년 11월에 공사 기간 연장 허가할 때는 이미 제방이 없는 상태였을 텐데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에서 제방이 유실됐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연장을 해 준 것인지?

- (답변) 담당자의 말을 전해드리면, 연장 허가 신청은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연장 허가가 필요한지 잔여공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함. 공사 부지가 넓다 보니 행복청이나 건설 시공사에서 안내하는 그 지점 위주로 점검했는데 안내하는 지점에는 이 절개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담당자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고해서 그 부분이 업무상 과실 치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음.

○ (질의) 결과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임시 제방 절개 관련 내용이 없었고, 또 행복청도 역시 임시 제방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한 시공사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 (답변) 시공과 감리의 문제임.

- (지적) 3차례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할 때 제방이 절개되어 있었던 상태, 제방 절개가 언제 시작되었고 각 시점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하천점용허가 기간이 언제였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지적) 전문가인 담당자나 관리청에서는 교각 공사가 진행되면 제방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음. 또한 제방이 절개된 부분이 구평2지하차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가까움.
- (질의) 유실 지점이 붕괴되고 있다든가 물이 월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피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충북도하고 청주시가 왜 그 신고에 대해 재난 대응을 안 했는지?
 - (답변) 기관보고 때도 논쟁이 되었던 상황인데 저희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으로 수위 상황과 홍수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그 기관에 여러 차례 보고함.
- (질의) 제방이 온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홍수위가 상당히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럼 그때에도 제방의 유실은 전혀 모르고 위기상황을 관리했던 것인지?
 - (답변) 나중에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을 때 제방 유실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
- (지적) 지금 여러 기관이 전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음. 충북도지사는 70년 넘도록 물이 범람한 적이 없어 문제는 제방 절개 때문이라고 함. 절개를 허가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행복

청에서는 이 제방 절개 내용이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함.

- (질의) 마을이전이 참사 전날 제방이 위험하다고 신고했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어떤 대응을 했는지?

- (답변) 홍수위 관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

-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제방이 절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사관리를 하더라도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러 나오지 않았는지?

-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공사 현장을 감독하지는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방 절개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됨.

② 참사 직전 상황 감시 및 보고·전파 관련

- (지적) 물이 월류가 되기 시작한 게 7시 50분이고, 그런 다음에 30분간 논밭을 다 덮고 나서 8시 27분에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침. 오송과출소는 지하차도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고, 5분이면 도착함. 7시 58분에 둑이 터졌다고 했을 때 바로 10분 안에 통제만 했으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임.

- (질의) 묻고 싶은 점은 당일 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의 상황들에서 이 지하차도 시설이 집중호우에 대비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임. 도지사 말씀으로는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침수 시문이 50센치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전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함. 말씀하신 CCTV

를 실제로 어떻게 누가 보고 있었는지?

- (답변) 비상 근무자가 보고 있었음.

○ (질의) 도지사가 봤다는 CCTV가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 (답변) 도지사 본인이 봤다는 것은 아님.

○ (질의) CCTV로 정확하게 보고 있었으면 30분 동안 조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임. CCTV가 시점과 종점에 있었으면 CCTV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것인지?

- (답변) 말씀하신 그 30분에 CCTV로 진출입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함.

○ (질의) CCTV 내용을 보고를 했다는 뜻인지? 보고를 했다면 어디에다가 했는지?

- (답변)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 보고함.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움.

○ (질의) CCTV를 통해서 여기가 통제됐다면, 담당자가 그 당시에 물이 차오르는 지하철도의 상황을 확인했을 것임. 이 상황이 보고된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보고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 (답변) 물이 많이 유입된 시점이었음. 물이 많이 들어오는게 보이기 때문에 현장으로 출발했고 현장 도착까지 2~30분이

소요됨.

- (지적) 도착하는 데까지 30분이 걸렸는데 그때만 차단했어도 괜찮았을 것임.
- (질의) 경찰이 출동할 때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로 출동하는 혼선이 있었음. 경찰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고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해서 간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경찰에 취한 조치가 있는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고 지점이 궁평2 지하차도라는 점을 명확하게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다른 곳으로 출동하지 않았을 것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인근 파출소는 2~3분안에 도착할 수 있었음.
- (답변) 확인을 해봐야 함.

③ 기타 사항

- (질의) 궁평2지하차도가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 (답변) 충청북도에서는 궁평2지하차도를 위험도로로 관리했지만, 행정안전부 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았음.

(2) 중복도청

(가) 보고 내용

- 별도의 보고 내용 없음.

(나) 주요 질의 답변·내용

① 참사 직전 상황 감시 및 보고·전파 관련

- (질의) 궁평2지하차도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중간에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모니터링하고 있었는지? 침수상황을 보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 (답변) 6개 설치되어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궁평2지하차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직원 2명이 출발했음. 현장까지 도달하는데 25~30분 소요됨.
- (질의) 차단시설이 없었지요? 그 다음 조치 사항으로 상황실에 전파하거나 유관기관에 통보나 협조요청을 했는지? 특히 경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지?
 - (답변) 재난상황실에 전파했음.
- (지적) 112신고를 해서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1지하차도로 갔다는 것은 일반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궁평2지하차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궁평1지하차도로 가지 않았을 것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조요청을 했는지?
 - (답변) 경찰에 대한 신고 또는 협조요청은 없었던 것 같음.
- (질의) 제방 붕괴가 1차적 요인이었다면 2차 요인은 교통통제에 실패한 것임. CCTV 6대로 보고 있었으면서 가장 가까이에

서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경찰에는 통보하지 않았는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입건된 사람들이 있는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3명 정도 수사를 받았음. 지하철도 모니터링할 때에는 농경지 침수는 확인이 되지 않았음.
- (질의) 경찰에 제대로 통보를 했으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함.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서 경찰에 제때 통지를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저희가 미리 인지했다면 협력을 했을 것임.
- (지적)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고, 교통 통제의 1차적 책임이 있음. 이 같은 역할에 실패해서 14명의 생명이 희생된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출동하면서 25분이 소요되는데 경찰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 이태원 사례랑 똑같은 상황으로, 총체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의 문제임. 충북도청 소속 직원은 법적 책임을 지는 반면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질의) 임시 제방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임시제방이 뚫렸고 마지막 안전선은 지하철도 통제의 문제인데 전과 체계의 문제가 정확히 규명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책임을 넘어 재발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통제가 중요한 제한인데 통제는 경찰이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도 재난이 발생하면 급한대로 하게 되어 있음. 재난안전관리법이 상위법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 경찰이 주체가 되게 되어 있음. 청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지만, 단양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우선 단양군수가 막아야 함.
- (지적) 법률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전파 상황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거기에 분명히 개선점이 있을 것임.
- (질의) 충북도지사는 지난 번 기관보고 때 당일 날 새벽에 회의를 할 때 CCTV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CCTV가 지하차도 입출구에 200m 전후 관계에 있어서 육안으로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움.
- (답변) 사건 당시에는 CCTV 볼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지난 뒤 CCTV 녹화내용을 본 것임. 그 당시 상황은 지하차도 안에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 있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CCTV를 볼 경황이 없었음.
- (질의) 충북도지사께서 지난번 서울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내가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CCTV를 직접 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맞는지?
- (답변) 도로관리사업소에 CCTV 수십 개가 연계되어 있고,

본인은 도청 상황실에 있었음. 그리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 구평2지하차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 CCTV를 수십 번 다시 봤고 제방 붕괴에서 인명 피해까지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임. 충북도지사 아니라 어떤 도지사도 현장 CCTV를 보고 있기 어려움.

- (지적) 재대본 회의가 열렸던 재난상황실을 둘러보고 가야할 필요가 있음.
- (지적) 구평2지하차도 4시에서 9시 사이의 CCTV 영상 일체 및 경찰에 신고된 통화 녹취를 제출해주기를 바람.
- (질의) 2023년 7월 15일 오전 회의를 하고 있던 시간에 7시 2분부터 감리단장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험전화가 계속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도지사님께 전달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음.
- (답변) 그 당시에 저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당장 현장으로 달려갔을 것임. 결과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함.
- (질의) 사고 당일 성훈수 주무관이 네 차례에 걸쳐 재난 신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는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신고를 하면 비상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음. 마지막 7시 58분에 독이 터졌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결국은 보고체계의 문제임. 지난 기관보고 시 충북도지사님은 알고나 있어라 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

데 독이 터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 (답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많은 조사 및 수사가 있었음.
- (질의) 감리단장과 행복청 주무관은 수십차례 관계기관에 전화로 상황이 위급하다고 알림. 이에 대해 도지사는 “알고 있으라”는 취지라고 발언한 적이 있으신지? 발언을 수정할 생각은 없는지?
- (답변) 맞음. 수정할 생각 없음.
- (지적) 행복청 주무관은 전화를 하면 당연히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다라고 발언했는데, 도지사만 유독 그와 같이 받아들임.
- (지적) 지난번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충북도지사님은 알고나 있으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고 전화를 한 당사자는 재난관리부서를 특정해서 재난 위험 사항과 넘치는 상황을 보고했다고 발언했음.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의) 7월 15일 6시 20분, 40분 재대본 회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상황보고서의 경우 전일인 2023년 7월 14일 상황보고서와 15일 오후 시점의 상황보고서가 없으니 제출해주시기를 요청함. 그리고 7월 15일 6시 40분의 재대본 회의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미호강의 수위가 29.02m를 넘겨 충북도청이 교통

통제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된 시점이기 때문인데, 그 당시 재대본 회의에서 미호강 홍수경보 또는 계획홍수위 도달 여부가 공유된 바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답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받지 못함.
- (질의) 2023년 7월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에 대해서는 67개 기관에 팩스로 전달했는데, 계획홍수위에 도달한 6시 34분에는 홍덕구청에만 전파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 (금강홍수통제소장 답변) 6시 34분에 홍덕구청에 전파한 것은 금강홍수통제소가 추가로 조치를 한 것임. 법적으로는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주의보·경보까지 팩스나 SMS로 등록되어 있는 유관 기관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음. 그 당시 심각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청주시 홍덕구였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통해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고 주민 대피를 하라고 알려드린 것임.
- (질의) 이 사고의 선행 요인은 제방이 무너진 것이고 직접적 원인은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음. 특히 보고체계와 전파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충청북도 재난대응본부의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번에 미흡하다고 발언함. 충북도지사님이 보고체계 및 재난대응본부 전체를 지휘할 책임이 있으니 충북도지사님의 책임이 아닌지?

2024년 충청북도 재난본부에서 작성한 대응 매뉴얼에는 풍수해 발생 징후 확인 시 신속한 보고·전파, 징후에 따라 취약시설 지역 긴급 대응 조치 실시, 초기 상황판단회의 개최, 지역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비상연락망 점검, 풍수해 피해 발생 대비 홍보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행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충북도지사님께 있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어떤 말씀을 해도 희생된 분들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런 면에서 도의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것이 필요하고, 광역도지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해 많은 조사와 수사가 있었음.

②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및 임시제방 관리 책임 관련

- (지적) 기존 제방, 신규 제방, 임시 제방의 선후 관계가 혼란스러움. 미호천교 건설이 확정되었고, 6번 7번 교각 사이의 기존 제방을 허물어야 된다면 임시제방은 언제 설치하는지, 기존 제방은 언제 철거하는지 시간의 순서가 안전관리에 중요한데 이 부분이 혼란스러우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미호천교 건설과 관련해서 왜 신규 제방을 설치하기 전에 기존 제방을 절개했고, 그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며, 임시 제방에 의존하는 기간이 길었는데, 그 부분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 기간이

길어졌는지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지적) 임시제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 임시 제방의 안전 규격이 매우 중요함. 결과적으로 충분하지 않았음. 임시 제방의 안전규격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온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질의) 홍수기가 6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 7월 7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은 이유는? 이렇게 늦게 임시 제방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장 답변) 6월 20일에 공문을 통해 신속하게 쌓으라는 지시를 함.

- (질의) 6월 20일에 지시를 했는데 금호건설이 7월 7일 늦장으로 공사한 것인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장 답변) 감리단에 세 차례 정도 신속하게 축조할 것을 지시했고, 6월 29일에 시작해서 7월 13일까지 쌓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그 당시 어떤 지시를 받았고 왜 공사가 늦어졌는지 설명을 요청함.

- (금호건설 상무 답변) 그 사이에 몇 번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데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음. 제방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음.

- (질의) 참사의 원인은 임시제방을 제 때 설치하지 않고 부실하

게 흠더미를 쌓은 것임. 호위주의보, 경보 등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행정 당국 및 시공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함.

○ (질의)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용을 복기해보면,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시는 분이 현장에는 갔지만, 제방 절개를 하는 부분은 위치가 떨어져 있어서 현장 확인을 못하고 인허가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맞는지? 의아한 부분은 공사 연장을 허가를 해줄 때 주변의 하천, 제방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내주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 (금강유역환경청장 답변) 연장 허가이다 보니 남은 잔여 물량 및 공정 위주로 보았고, 현장에서 안내받은 것도 제방 절개한 부분을 제외하고 안내받은 것임. 점용허가 관련해서는 신청 내용 위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음. 전반적인 하천·제방의 유지 관리 상태라든가 공사 현장의 유지·보수 책임은 법령상으로 청주시에 있음. 허가 연장 시 예상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 (질의) 하천점용허가 연장 시 법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미비하면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같은 사항을 모두 점검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등 조치가 되면 되는 것임. 단순한 실수인지?

- (금강유역환경청장 답변) 그 부분은 본인이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
- (질의) 행복청과 환경부는 현장점검에서 제방 절개 관련해서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관청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라고 발언하였는데, 금호건설에서 설계도면에 제방절개 관련 내용을 넣었는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원설계자인 동부엔지니어링이 넣음. 책임을 져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함. 저희가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음.
- (질의) 제방 절개 관련해서 왜 신고를 안했는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인허가는 관계기원이 지원하지 저희가 인허가를 신청하는 그 회사는 아님.
- (질의) 원천 설계를 한 그 부분의 문제라는 의미인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저희는 설계된 대로 공사를 하는 것임. 저희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으면 설계도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것임.
- (질의) 설계도면에 제방 절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관청에서 알았을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관청의 의견은 잘 모르겠음. 도면상에는 표시되어 있음.

- (질의) 금호건설 책임이 큰 것이 아닌지? 제방절개 부분이 이번 참사의 핵심이므로 제방 절개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금호건설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닌지?
- (금호건설 상무 답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함.

③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 (질의) 시민들 입장에서 급한 상황의 경우 궁평2지하차도 지명가지고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명칭을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 (답변)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함. 무안 비행기 사고가 있을 때도 제주 사고냐 무안 사고냐 논란이 있었듯이 오송 참사로 불리는 것도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으니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④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 (질의) 오송 참사 희생자 조형물 관련해서 충북도는 의지가 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됨. 어떻게 할 것인지?
- (답변) 안타깝게 생각함. 어떻게든 상처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생각함. 도청에 추모 조형물을 만드는 것에는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위로할 수 있다면 도청에 조형물을 만들어드려야겠다고 결정함. 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 공론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경을 제출함.

- (질의) 추모 조형물은 참가사 이을 때 희생을 잊지 않고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 (답변) 추모조형물과 관련해서 도의회와 도민을 설득해서 충청북도의 안전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3) 유가족 간담회

(가) 유가족 대표 발언 내용

- (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 발언) 오송 참사가 2년이 훌쩍 지남. 국회의 노력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짐.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 질의응답에서 행복청 주무관이 미호천 제방 붕괴 등을 전화를 통화로 알렸다는 사실이 밝혀짐. 미호천 제방 붕괴와 대피 등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렸지만 전혀 대응이 없었음. 해당 행복청 주무관은 과실치사로 기소가된 반면 충청도지사는 무혐의인데, 유가족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봐주기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아 재수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방이 붕괴된다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음. 재난 컨트롤타워인 지자체가 대피명령을 적절히 내렸다면, 제방붕괴 도로통제가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 가족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임.

유가족은 충청도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전고검에 항고함. 이 정도면 대전고검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참사 다음날, 실종자 수색 첫날 충청도지사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데 점에 참담함을 느낌. 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이 보호하지 못한 지역 주민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 채택 바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난안전 체계가 갖추어

지도록 국회의 역할 바람.

- (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 발언) 충청북도는 추모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 시민 대화도 청주시에 떠넘김.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이 추모와 기억의 공간 만듦이 필요함. 현판의 경우 충북과 충분한 협의를 했음에도 오송읍 주민의 혐오시설 민원으로 인해 유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음. 충북은 나서서 설득하기 보다는 그분들이 유가족을 만나기 원하면 만남을 주선하기도 함.

의회는 상임위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추모비 예산을 삭감함. 청주시는 전담부서가 전무하고, 충청북도지사는 유가족 요청으로 겨우 세 번 만났음. 청주시장은 유가족 앞에서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함. 충청북도는 과거의 인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 발언)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도지사에게 도의적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음. 그리고 왜 유가족 참석 인원을 제한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음.

1차 원인은 제방 부실이 맞지만, 더 큰 문제는 통제의 문제임. 청주시 버스정책과에서 GPS 확인했는데, 6시 30분 경부터 첫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아무도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서부터 지자체, 경찰, 소방, 건설사, 행복청 모든 곳이 오송 참사 유가족을 만들게 되었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오신 생존자분들 엄청난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계심. 여러분의 도움으로 오송 참사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음.

(나) 주요 질의 답변·내용

①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관련

○ (질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 바로 대피 명령을 내리고 교통 통제만 했어도 인명 피해 없었을 것 동의하시는지?

- (답변) 동의함.

○ (질의) 유가족 분들이 애쓰시는 이유는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함.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도에서는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걸 막기 위해 재난대책본부가 지자체마다 있는 것임. 재난 대응 및 보고 전파, 교통통제를 하지 못한 관리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국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람.

- (답변)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으나, 있었는데 안 지켜진 것임. 매뉴얼 발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재정비가 있어야 될 것임.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라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임. 대통령께도 부탁드렸으나 참사 현장에 갔을 때 유가족에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바람.

- (답변) 국정조사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함. 더 이상 유가

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늦게나마 국정조사 진행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일반 시민사회와 현장의 안전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 안전의식과 관련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② 지하차도 현판 설치 관련

- (질의) 현판 제작 완료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통보받으셨을 것. 반대하는 5개 단체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것 같음. 이 단체들의 발언에 대한 심경은?
- (답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오송 주민도 있음. 진짜 그 단체들의 의견이 맞는건지도 의심됨.
- (질의) 관련 단체들이 합의가 된 것인지 일부 개인의 의견인 것인지.
- (답변) 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음.
- (질의) 현판 관련해서 왜 유가족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됨. 심리 치유하고 피해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가장 급하고 절박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답변) 저희 유가족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안 됨. 2년

동안 추모비 현판 설치 요청해도 계속 무산됨. 심리적으로 더 아픔을 느끼고 있음. 이번에도 추모비 설립에 관해서 충북도 의회의 국힘 의원들께 묻고 싶음.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국정조사는 국가에다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요청하는 것임.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음. 정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람. 그런 국정조사가 되길 간곡히 바람.

③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 (질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위로 크게 3가지가 국정조사의 목적임. 진상규명도 올바르게 안된 것 같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 위로도 충북과 청주에서 부족하다는 말씀 같은데 맞으신지?

- (답변) 맞음.

- (질의) 충북이나 청주에서 유가족에 대해 따뜻하게 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 (답변) 가장 참담했던 점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절차와 분향소, 장례 절차에 대해서 유가족 몫으로 돌아왔었던 점임. 추후 다른 참사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임.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이다 보니 수도권 보다 전문의가 많지 않아 공주트라우마센터의 지원을 받고,

심리치료를 잘 하시는 의사선생님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음. 이런 부분에 대해 짜임새 있게 정립을 해서 지방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람.

○ (질의)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 지원단이 나와 있는지?

- (답변) 행안부에서 유가족 지원단이 나와서 그분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질의) 국정조사가 2년 후에 이루어져서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주로 충북 또는 청주시에서 유가족 지원을 받는 곳은 어디인지?

- (답변) 그나마 충청북도임. 청주시는 소통 창구조차 없음. 청주시장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청주시장은 나는 당신들을 만나려고 제안하지 않았더라는 막말을 했음. 청주시에서는 저희에게 해주는 것이 없음.

○ (질의) 청주시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음. 청주시 전담 직원 소용없었는지?

- (답변) 전담직원은 장례식장과 화장터에 오고서는 끝이었음. 전담팀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은 없음. 전담직원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말한 적은 없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심. 유가족들이 느끼기에 전담팀은 유가족이 언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러 온 느낌임.

- (질의) 심리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 (답변) 저희 유가족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며 마음을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심리상담이 필요함. 국가에서 실시하는 한마음투자사업과 청주시 성인마음투자사업 등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없이 등 절차 없이 유가족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싶음.
- (질의) 사고 이후에 지역 사회에서 어떤 대우나 배려를 받으셨는지?
- (답변) 어떤 배려나 도움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음. 그 동안에 계속 지치고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음. 2년 동안 요구한 심리치료, 추모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추현판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추모비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질의) 혐오대상자로 취급받으신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 (답변) 현판 설치와 관련해서 도로사업소의 행정지원과장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악성 민원인 취급함. 소통을 하고 결과가 있어야 회의에 오신 의미가 있는데 충북도지사는 회의에 참석만 하심.
- (질의) 생존자협의회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 (답변)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자가 행정

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서임. 학교, 군대, 직장, 어느 조직이든 형사적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임. 그런데 유가족 희생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해자인 도청과 시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오송 참사를 교훈 삼아 가해자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참사나 재난이 발생하면 제3의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 줘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람.

○ (질의) 생존자 대표께서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 (답변) 유가족들이 힘든 것은 참사로 인해 한 순간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임. 정말 황망하고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음.

생존자들은 구사일생으로 그 사지에서 생존 본능으로 빠져나온 심정임. 그리고 빠져나올 때 희생자들이 앞에서 구해달라고 목소리 치고 간청하는 것들을 본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무기력감, 거기서 오는 죄책감,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자책감으로 많은 생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

도지사는 보셔서 아시듯이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할 의지가 없음. 도지사의 존재 자체가 2차 가해임.

9월 1일 피해자 지원단이 발족했고, 9월 8일 피해자 지원단과 첫 면담을 함. 늦게나마 피해자 지원단이 발동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생명안전기본법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음.

- (질의) 행안부 피해자지원단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피해자 지원단, 충청북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람.
- (답변)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원인조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재난원인조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음. 충북 및 청주시는 생존자에 대해서는 연락 및 지원이 없음. 생존자는 소통 창구가 없음.

3. 청문회 주요 신문(질의)·답변 요지 (9월 23일)

(1) 미호강 기존 제방 절개 및 임시제방 관련 사항

(가)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8호에 따라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제방에 대해 연1회 이상의 점검을 하였는지? ○ 당시 제방절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음.	○ 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겠음. ○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하겠음.

(나)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절개한 부분의 관리 감독은 청주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인지?	○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청에 감독의무가 있음.

(다) 이상래 증인(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기존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 설치한 것에 대하여 행복청이 시공사 및 환경청과의 협의가 있었는가?	○ 기존제방 절개에 대해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가 있었음.
○ 임시제방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구조물이므로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했으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2회에 걸쳐서 임시제방이 설치된 점이 아쉬움.	○ 공사기간, 예산 등으로 인해 그럴 것으로 생각됨.
○ 교량공사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게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점을 알렸는지?	○ 문서에는 없으나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음.
○ 공문에는 제방을 철거한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제방을 불법으로 철거하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지?	○ 전혀 알지 못하였음.
○ 임시제방, 부설제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 발주청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발주청으로서 관리감독책임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함. 미호철교의 경우 점용허가 시 제방철거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공문에 없다는 것은 책임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함. ○ 청장 재임시절 하천 공사현장을 방문했는지? ○ 하천 절개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 기본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관리 시스템은 적절하지 않음.	○ 순회하면서 방문했음. ○ 들었음.

(라) 조완석 증인(금호건설 대표이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 인정함.

(마) 이현상 증인(주이산 대표이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감리단장 변호인에 의하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나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협의한 행복청과 설계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감리를 할 때 절개한 부분을 협의하지 않는지?	○ 당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과 감리는 설계도면대로 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지 않음. ○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복청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지? ○ 금호건설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제방절개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그러함. ○ 시설설계도서를 관리청으로부터 받아 시공과 감리를 하고 있음. 교량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구역결정고시를 받음. 도로구역결정고시에 포함되는 하천점용허가 등은 발주청과 실시설계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허가 의제 처리가 됨. 기존 제방이 교량보다 높아서 제방절개 없이는 공사가 불가하였음. 실시설계도서에 제방절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 실시설계도면에 제방 절개가 나와 있는지? ○ 전문가들이 설계도면을 보면 제방 절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비가 오면 절개된 부분을 막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지? ○ 철교 공사 설계도에는 명백하게 제방 절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미호대교 도로공사에는 이러한 사실이 미숙하게 기록되어 있음.	○ 그러함. ○ 그러함.

(바) 성흔수 참고인(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토목직으로서 미호천 관련 도로 건설 감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몇 번 갔었는지? ○ 제방이 절개되어 있는 상황을 보았는지? ○ 도로 건설 관련 관리자로서, 임시제방 관련 유지보수는 청주시청이 아닌 행복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 현장에 4~5번 정도 갔었음. ○ 절개된 사실 보았음. ○ 기존 제방 절개된 것을 알고, 제방을 다시 쌓으라고 독촉하였음.

(2) 미호강 하천관리 책임 관련 사항

(가)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본인에 대한 기소가 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 당시 청주시에 임시제방, 교통 통제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었는가? ○ 하천관리 책임에 대해 청주시와 환경청의 입장이 갈리는 원인 및 청주시의 입장은?	○ 당시 행해지던 제방공사와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관리책임 주체가 아니었음. ○ 관리책임이 없음. ○ 현행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금강본류의 하천공사와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수행하며, 지류하천의 경우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아 유지관리를 청주시가 하고 있음. 해당 구간은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구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 공사를 준공하면 그 다음날부터 유지관리가 가능함. 공사가 중단·중지되어도 관리책임은 하천관리청에 있음. 환경부 중대재해 참고자료나 지자체 참고자료에도 해당 부분은 환경부장관이나 수급인이 중대재해상 경영책임자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조희송 증인(前 금강유역환경청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미호천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 기관이 어디인지?	○최초와 두 번째 하천점용허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세 번째 하천점용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였음.
○미호천 하천 점용허가 변경신청이 있었는데, 해당 신청을 보면 제방교 하향 조정 신청이 명시되어 있음. 환경부는 미호대교 공사에 미호천 제방 절개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그리함.
○철교 공사 설계도에는 명백하게 제방 절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미호대교 도로공사에는 이러한 사실이 미속하게 기록되어 있음.	○그리함.
○하천 점용허가 부서의 공무원이 설계도면만 봐도 파악 가능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환경청은 하천관리 분야에 전문가를 투입할 필요가 있음.	
○사고 1년 전 하천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공사의 위험성 인지하였는지?	○제방 절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음.
○해당 지역이 홍수위험지역임을	○제방 철거가 없었으면 홍수취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인지하였는지? ○ 금강유역환경청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약지역이 아니었음. 기존 제방은 홍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당시에 도 절개 후 임시제방을 축조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 그러함.

(3) 참사 직전 지하차도 교통통제 관련 사항

(가)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제방범람과 관련해 성흔수주무관이 청주시에 전화했고, 대피준비가 아닌 주민대피라고 전파를 했음에도 왜 청주시가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 교통통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 그 일대의 교통통제 등을 했음. ○ 운전자가 우회하는 구간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함. 침수된 구간만을 통제하였음.

(4)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체계 관련사항

(가) 성흔수 참고인(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송참사 당일 자연재난과에 4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이한울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은? ○ 재난상황실에 전화하지 않고, 이한울 주무관에게 전화한 이유는? ○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관련 전화를 했는지? ○ 대피해야 한다는 전화를 했는지? ○ 대피전화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인지? ○ 본인이 진술한 대로 범람 우려, 교통통제 필요성 등을 분명히 이야기 했는지?	○ 임시제방 수위가 올라가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음.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서 검색된 번호에 전화한 것임. ○ 맞음. ○ 한 것으로 기억함. ○ 감리단장과 통화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했는데, 7시 전에는 대피준비를 해야 한다고 청주 및 충북에 전달했고, 7시 이후에는 대피 준비가 아닌 대피로 내용을 바꿔 전파한 것으로 기억함. ○ 감리단장과 소통하면서 충북도에 전달하였음. 당시 7시 이전에는 수위가 올라오니 바로 대피할 수 있게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전파하였음. 7시 이후에는 대피가 필요하며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청주시에 요청하고 있고 도청도 알아야 한다고 전파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 감리단장에게 최초 연락을 받은 뒤 어디에 전화했는지? ○ 행복청 상급자에게는 언제 연락했는지? ○ 행복청에서 도로 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주무부서는 행복청인데, 행복청 내에서 연락이 늦게 되었는지? 행복청 내에서 연락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왜 다른 기관에 먼저 연락하였는지? ○ 충북도나 청주시에 전화할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한 재난상황실이 아니라 왜 다른 부서에 연락하였는지? ○ 이한울 주무관과 7~8분 이상 3~4차례 길게 이야기했는데, 왜 길게 통화하였는지? ○ 이한울 주무관은 알고만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한울 주무관과 잘 아는 사이인지?	○ 수사기관에 답변한 취지도 같음. ○ 충북도청에 연락하였음. ○ 행복청 사무관에게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안 되어, 6시 50분~7시 경에 최초 통화를 하였음. 내부 카톡방에서 전달함. ○ 바로 사무관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았음. 상황실 전달보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먼저 연락한 것임. 출근 후 근무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음. ○ 홈페이지 검색 후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연락하였음. ○ 감리단장에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것,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였음. ○ 잘 모르겠음. ○ 도청 근무당시 인사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대화 나눈 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건 이후에 이한울 주무관과 통화한 적이 없는지? ○ 평소에 전화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지?	은 없음. 같은 부서에 근무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음. ○ 사건 이후에 연락이 왔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았음. ○ 그렇지 않음.

(나) 이한울 증인(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의 재난안전업무 경력은? ○ 성훈수 주무관으로부터 재난상황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았나? ○ 그 외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나? ○ 2023년 7월 참사 전까지 충북도에서 재난대응훈련을 7차례 했고, 그 중 2차례는 자연재난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울 증인도 이때 교육을 받았는지? ○ 재난대응과 관련 훈련시 신고, 보고 및 전파가 가장 중요한	○ 사고 발생 이전까지 2년 정도됨. ○ 기억하는 바로는 성훈수 주무관이 청주시와 경찰청에 연락했으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받았음. ○ 죄송하게 생각함. ○ 교육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했음. ○ 보고서를 작성해야된다는 것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사항이며, 충북도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자 및 접수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기록했는지? ○ 전반적으로 훈련한다고 하는데? ○ 재난 훈련시 회의록도 작성했는지? ○ 하천범람 관련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제방이 터졌다는 내용의 전화임에도 주무관이 그냥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해한 것인지? ○ 방재직이 충북도에 몇 명있으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 성훈수 주무관이 이한울증인에게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해 볼 것 ○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이 맞는지?	있음. 별도로 교육받은 적도 없음. ○ 훈련의 타임라인을 작성해 발표하는 내용으로 했고, 회의장 준비, 참석자명단 관리 등의 업무를 했음. ○ 제가 하지는 않음. 회의장 준비, 참석자명단관리를 함. ○ 범람 위험이 있어, 청주시와 경찰청에 연락을 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음. ○ 그 전화는 본인이 받지 않았음. 그때 당시 기자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음. ○ 6,7명쯤있으며, 재난안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 ○ 범람위험이 있어 청주시와 경찰에 연락을 했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으며, 그 발언이 경찰 등에 알렸다는 얘기를 알고 있으라는 취지인 줄 알았음. ○ 아님. 범람 위험이 있어 청주 경찰에 연락했다는 전화를 받았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복청 직원이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고 대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화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피라는 말을 못 들었는지? ○ 성혼수주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보고를 안 했는지? ○ 자연재난과 단톡방이 있는지? ○ 사고이후 성혼수주무관과 통화했는지? ○ 행복청 전화를 받고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 자연재난과의 역할이 무엇인지? ○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자연재난과는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음. 중대본과 재대본 가동 시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이며, 당시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정보를 즉각 전파하고 보고하는 것이 증인 본연의 업무임. 전날 17시, 당일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행복청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통제나 대피를 듣지 못했음. ○ 그러함. ○ 하지 않았음. ○ 있었음. ○ 전혀없음. ○ 그러함. ○ 재난 상황 시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임. ○ 그렇지 않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의 발언에 대해 위증으로 고발이 필요함. ○ 당시 자연재난과에 근무하였는데, 직급이 무엇인지? ○ 초동 대응에 있어 전파하지 않은 부분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고 향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질 것인지? ○ 당시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 경찰에서 성훈수 주무관과 대질신문 하였는지? ○ 재난안전실장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도로사업소에 지하차도 점검에 대한 지시를 내렸으면 참사가 터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지? ○ 참사 이후에 성훈수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팀장에 보고했는지? ○ 팀장이 재난안전실장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 전화통화했다는 사실은 검찰	○ 당시 방재안전직 8급이었음. ○ 그러함. ○ 청주시와 경찰이라는 초동 대응 부서에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대응이 된 줄 알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통신망으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함. ○ 별도로 없었음. ○ 팀장에 보고하지 않았음. ○ 팀장이 실장에 보고했다는 것은 몰랐음. ○ 그러함.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조사 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 사고 당일 미호천교 홍수 경보 발령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자연재난과 단독에 관련 사실 (미호천교 홍수경보 등)이 올라가 있었는지? 과 서무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 ○ 상부에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됨. ○ 사고 1년 전에도 호우 피해에 대해서 일을 하였나? ○ 참사이전에 행복청의 직원이 직접 재난관련 정보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 참사 당시 충북도에서도 재난 안전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었는데, 3차례의 신고 전화를 받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나? ○ 참사 당일 전화를 받고 보고를 하였는지? ○ 사전에 충북도청 동료나 상관에게 메시지 내용을 상의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 오늘 진술 중 거짓이 있는지? ○ 성훈수 주무관에게 참사 이후 전화를 한 이유는?	○ 경고 알림이 있었다는 것은 사고 이후에 알았음. ○ 몰랐음. ○ 그러함. ○ 없었음. ○ 보고하지 않았음. ○ 혼자만 알고 있었음. ○ 없음. ○ 없음. ○ 참사 당일 들은 사항에 대해 물어보려 하였는데 받지 않았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통화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 재난 발생 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음. 문제가 발생해서 연락을 취해보려고 하였음. ○ 없음. ○ 고의로 목살할 생각을 없었음. 청주시와 경찰청에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함.

(다) 박준규 증인(前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훈련을 할 때, 훈련 내용에 신고사항을 전파하는 방법 등이 있는지? ○ 재난상황발생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 방재의 핵심은 전파에 있다고 보는데,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해당 교육을 하는 것인지? ○ 사고 당일 아침에도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체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지?	○ 맞음. 전반적으로 하고 있음. ○ 재난에 따라서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전파하는 것임. ○ 여러가지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음. ○ 본부장은 도지사, 총괄은 재난안전실장임.

(라)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복청 주무관이 4차례 중요한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지휘감독 책임이 아닌지?	○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재난 발생 당시 주무관의 행태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는지?	○ 동의하지 않음.
○ 신고 이후 충분히 대처 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묻는 것임. 도지사는 이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음.
○ 기관보고 당시 충북도가 주민 대피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접수받은 것을 참사 이후에야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 팀장으로부터 연락받음. 팀장의 실명은 밝히기 곤란함.
○ 기관보고 당시 당황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 지난번에는 기억이 안나 대답을 못 하였지만, 자연재난과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 재해대책본부에 신고나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함.
○ 참사 당시 현장상황 cctv를 보고 있었나? 다른 직원들이라도	○ 당시에 못 봤음. 사고 후에 봤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보고 있었나? ○미호천 홍수경보 발령 문자를 받은 것을 근거로 충북도공무원이 재난을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기소하였는데, 충북도지사 역시 동일한 문자를 받았을 텐데 문자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희생자 입장에서 참사 발생 시 가장 먼저 신고하는 곳이 어디일지? ○아침에 재대본을 개최할 때는 통상 영상회의를 하는데, 청주부시장이 6시 반에 미호천 관련해서 보고를 하였는지? ○사건 당일 실시간 침수상황에 관한 cctv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cctv를 보고 있었다는 표현. 재난상황실에서 녹화 및 녹음 자료는 없었으나, 비서실 등에서 비공식 녹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재난상황실의 녹화 및 녹음자료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불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	○기초지자체, 경찰, 119일 것임. ○하지 않았음.

(마) 김남균 참고인(충북인뉴스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참사 당일 도지사의 동선과 관련하여 괴산에 갔던 이유는?	○사고 당일 오전에 김영환 지사 부인이 SNS에 괴산 아들 집이 침수되었다며 걱정하는 글을 올렸고, 그 이후 도지사는 도청을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과정에 환복을 위해 자태에 머물고,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수습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림. ○최초 취재 당시 9시 40분 경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취재함. 특히 본인은 사고 당일 오후 2시에 사고 상황판을 입수하였는데, 상황판에 심정지 1명, 구조 10명이라고 적혀 있었으므로 이미 사망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괴산으로 갔던 것으로 추정하였음. ○또한 오전 11시 경에 747 시내 버스를 비롯해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텐데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음. 이미 9시 경에 침수 사실이 시내버스 기사 사이에는 전파가 되고, 11시 반 경에는 이미 시내버스 기사들이 도착하여 사상자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전파가 되었던 상황이었음.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오전 10시~11시 경에는 도청에도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송이 아닌 괴산에 갔던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바) 홍명기 증인(前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실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이후 팀장에게 사전 교통통제와 신고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과장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 계선을 타고 보고가 주무관부터 지사까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사 직전에 지사에까지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한울 주무관이 정상순 주무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정상순 주무관에게 9시 반 이후에 보고를 받았음. ○ 그러함.

(사) 이석식 증인(前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참사 당일 몇시에 출근하였는지? ○ 공소장을 보면 도지사는 14일 비상 3단계 발령에도 서울로 상경한 후 저녁에 재대본 회의를 하였음. 15일에는 아침 7시에 자택에 있었음. 소장도 6시에 퇴근하였는지?	○ 6시 51분 쯤 출근하였음. ○ 그렇지 않음. 8시 반쯤 퇴근하였음.

(아) 박상준 증인(참사 당일 6:00~9:00 충청북도 재난안전과 근무자)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참사 당일 전화를 받고 보고한 적 있는지?	○ 그런 적 없음. 혼자만 알고 있 었음.

(5)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대책 관련 사항

(가)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기관보고시 김영환 지사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취약지역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공소장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발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적시되어 있음. 증인은 위증을 한 것이 아닌가? ○ 관련 공무원이 오송지하차도의 침수피해사실을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 전화했으나 참사를 막지 못했음에도, 증인은 하급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따라서, 증인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충북도는 침수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부과받고, 재난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함. ○ 재난상황실에 CCTV가 있는지? ○ CCTV를 통해 궁평차도를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 참사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CCTV는 있으나 궁평차도는 볼 수 없음. ○ 관련 지하차도가 수백개이므로 불가능했음. ○ 체계의 문제이지 인식이 부족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사의 재난 인식이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함 ○ 충북 119본부와 재난안전실이 협조하는 시스템이 부족함. 다른 시도와 비교해본 적이 있는 지? ○ 충북에서 운용하는 안전관리 관련 cctv 몇 개인지? ○ 당시 미호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는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급한 단말기를 받은 적이 있는지? ○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단말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한 적이 없는지? ○ 관련 기록을 보면 통신망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음. 법적으로 재난안전최고책임자를 도지사로 규정하고 통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는 재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재대본과 도로공사 등에서 분산해서 CCTV를 보고 있음. 재난을 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일 뿐임. ○ 비교는 안해봤음. 부족하다면 고치겠음. 재난안전실 확대계획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보겠음. ○ 30-40대 쯤되는 것 같음. 행안부에서 끌어다 쓰는거까지하면 170개쯤임. ○ 해당 미호천 제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범람한 적이 없었음. 미호천 부분 임시제방을 줄인 병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침수 이후 침수우려 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회의 중 사용하나 가지고 다니지는 않음. 본 적은 있음. ○ 회의 중 시군구와 통화할 때 활용하였음. ○ SNS, 유선, 회의 등 다른 매체를 활용하였음. 해당 규정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휘권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지시하였는지? ○ 2023.2 환경부의 홍수취약지구 일제 조사에 따라 충북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호천이 빠져 있음. 당시 3년 간 제방절개 공사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는데, 누락하지 않았다면 철저한 관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누락하지 않았음. 해당 하천은 한번도 범람하지 않았음.

(나) 이석식 증인(前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오송지하차도 침수 상황을 CCTV로 직접 보았나? ○ 그렇다면, 실무자 6명이 실시간 보고 있었나? 아니면, 추후에 봤는지? ○ 참사 당일 cctv 파악하였다고 하는데? ○ 어떤 조치 하였는지? ○ 현장출동 얼마나 걸렸나? ○ 왜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 실무자 6명이 도로관리과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CCTV 보고 현장출동했음. ○ 침수되는 것을 8시 40분에 발견하고 출동했음. ○ 직원들이 하였음. ○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출동함. ○ 25분 정도 걸림. ○ 직원들이 경황이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함.

(다)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해당 지역이 월류할 것이라고 파악하지 못했는지? ○ 해당 지역에 제방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수구역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제방을 설치해 둔 것이므로 면밀히 살펴봤어야 했음.	○ 이전에 제방이 범람한 적은 없음. 농지 침수는 있었던 적이 있음.

(라) 박준규 증인(前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23년에 특교세 신청을 담당했는지? ○ 재난특교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 충청북도 는 특교세를 몇 건 정도 받는지? ○ 홍수주의보 1단계가 내려진 13일부터 15일까지 저녁 6시~6시 21분 사이에 퇴근을 하였는지? ○ 공소장에는 근무를 서지 않고 18시쯤 퇴근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지?	○ 7월1일자로 인사발령되어 당시에는 담당하지 않았음 . ○ 그렇지 않음. 14일만 해도 저녁 9시에 중대본이 있었음. ○ 동의하지 않음.

(마) 최원근 증인(前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참사 당시 현장 CCTV 점검 했더라면,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 CCTV를 점검한 적이 있나? 새벽 4시부터 홍수 경고가 있었음에도 CCTV를 점검하지 않았음.	○ 없음.

(바) 양찬모 증인(前 충청북도 119종합상황실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충북소방은 사고 이후 2시간동안 실종자 2~3명으로 파악하였고 14시 34분에 처음으로 진입차량이 19대로 추정된다고 파악하였음. 소방이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상황보고를 하다보니 소방의 자원이 적시에 투입되지 못하였음. 오송 참사는 초기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 인재임.	○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현장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상황실에서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초기 상황정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로정보사업소에서 CCTV를 구해 분석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음.
○ CCTV 요청이 사고 발생 2시간 이후임.	○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함.

(6) 검찰 수사 관련 사항

(가) 박영빈 증인(前 청주지방검찰청 수사본부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은 김영환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는지? ○ 실제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으면,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이러한 의견을 대전고등검찰에 전달해 주기 바람. ○ 김영환 지사의 경우, 이행에 관한 조치를 다했다고 본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신고전화를 전파하지 않은 주무관은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재난실장 및 과장은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는지? ○ 신고전화를 받은 이한울 주무관은 왜 기소를 안했는지? ○ 부작위에 의한 과실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 체계 구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였으면,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음. ○ 알겠음. ○ 실장·과장은 총책임자의 위치임. 긴급한 재난상황 하에서 신고전화를 예견할 수 있고, 해당 상황에서 교육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임. 평상시의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것이 아님. ○ 실장·과장을 기소했음. 구체적인 지시가 누락되었기에 이들을 기소함. ○ 법리검토를 많이 하였으며, 평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기소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건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았을 것임. 불기소이유를 보니 핵심 요지는 제방둑이 터져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도 자체의 관리책임을 물어 충북지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인지? ○ 충북도지사 관련 수사는 종결된 것 아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기소할 수 있을 것임.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와 현재를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있는지? ○ 추상적인 의무위반으로 과실판단은 할 수 없음. 이를 포함하면 행안부장관, 총리, 대통령까지도 안전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봐야해 무한으로 책임이 확장될 것임.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할 것임. ○ 수사팀 규모, 처분 결정시 참여한 인원은? ○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지? ○ 집권당이 국힘 소속이라서 불기소처분과 관련된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는지?	○ 고검에서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임. ○ 검사장 차장 부장 검사 4명이 했음. ○ 수시로 토의했음. ○ 여야 구별없이 검토하였고 전혀 없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사고가 나고 며칠만에 검찰수사가 시작됐는지? ○ 경찰이 수사중이었는데 왜 검찰이 하게 됐는지? ○ 보도자료에는 도지사과 관련된 여러 언급이 있었는데, 검찰이 왜 불기소처분을 했는지? ○ 지하철도의 점검요건에 맞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위기사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하철도 설계결함 등이 없다고 했는데 자동차단시설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안전관리 인력,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인력은 미작동하고 자체예산은 미적용되었음. 또한, 지하철도 사전통제기준업무처리절차를 마련했다고 하나 업무처리가 미이행되었음. 이러한 불기소처분 이유가 맞는지? ○ 지하철도는 고유의 위험요인이 있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놓고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 도로관리소장에 대한 기소에는 6개월 간 재난과장으로 근무하	○ 21일부터 수사본부가 차려짐. ○ 국무조정실에서 수사의뢰가 왔고, 압수수색을 검찰이 먼저 진행을 했기 때문임. ○ 해당 사항 포함해서 고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주요책임자를 기소하였음. 국정조사 상 밝혀진 상황을 파악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여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기술했는데, 이한울 주무관은 2년간 근무했는데 왜 기소유예했는지? ○ 공소장에 적시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충북재난안전실장이 부인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 보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봐준 것이 아닌지? ○ 충북지사를 기소하면서 가장 약한 범죄로 한 것이 아닌지? ○ 신고가 계속되었음에도 조치가 없다고 기소를 했는데, 이는 보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지? ○ 초량제1지하차도 사고 시 매뉴얼, 계획 등 준비를 다 하였으나 담당자 및 부구청장의 조치가 없었음. 궁평2 지하차도 또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등 양 사건이 유사함에도 초량 부구청장은 기소가 되었는데, 충북지사는 불기소가 된 이유는?	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직접적인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님. ○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소를 하였음. ○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계획홍수위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임. ○ 초량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의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무죄로 되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충북도지사를 처벌해야할 것 같은데 불기소한 이유는?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 아닌지? ○ 재대본 영상 회의록을 확보하였는지? ○ 충북에서는 재대본 참석자 명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 체계 및 보고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 이한울 주무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 행복청 주무관이 여러곳에 상황을 전파하려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고 조치한 사람과 조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 충청북도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기소가 되지 않았으나, 청주에 근무한 조치한 사람은 기소가 되었음. 이에 따라 검찰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오송 참사 당시 경찰 45명 중 14명을 기소하였음. 과실치사가 4명이고 10명이 허위 공문서	○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였음. ○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지는 몰라도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음. ○ 확보하였음. ○ 그러함. 충북도지사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주무관까지만 보고되었고 이후에는 보고되지 않음. ○ 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팀에 다시 전달해서 검토해보겠음. ○ 발령 전의 일이며 현재 재판 중에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작성인데 기소가 과한 것이 아닌지? ○ 경찰 기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함. 중대본 회의에서 경찰을 질책하였고, 즉시 총리실에서 감찰을 실시하였음. 초기에는 충북청 수사부장이 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서울경찰처 광역수사단이 수사함. 또한, 감찰단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고발하여 청주지거이 수사에 착수하였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찰이 현장 경찰관에 대해 고압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수사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됨. 채해병 사건과 유사하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주체가 빈번히 교체되었음. ○ 당시 충북경찰청장을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부하들의 책임에 대해 지휘 책임을 진 것인데, 이를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당시 국조실에서 수사 의뢰가 왔고, 수사개시권이 있어 수사를 개시하였음. 자세한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음. ○ 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음. ○ 재난상황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음. ○ 재판 중인 상황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이한울 주무관과 성훈수 주무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 성훈수 주무관이 침수 위험을 알린 것은 맞음. 이한울 증인이 국회에서 한 진술을 조사 과정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한울 주무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 철저히 조사하였음. 이한울 주무관을 입건하였고 혐의는 인정되나 그 판단에 있어 다른 공무원들을 기소하고 이 주무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하였음. 이에 대해 수사팀에 다시 전달하겠음.
○ 이한울 주무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음. 관련 자료를 요청함. 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 현재 본인은 청주지검이 자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자료를 청주지검 수사팀에 요청 하였으며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대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기소장이 제출된 전례가 없다고 들었음.
	○ 본인은 전달할 수 있을 뿐이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 금강유역환경청의 미호강 제방도로 단절 관련 검토결과 회신공문을 보면, 미호강 제방을 단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21년 가을에 기존에 있던 제방은 이미 절개되어 훼손되었던 상황이고, 이후 우기때마다 임의로 임시제방을 세운 상황이었음.
○ 환경부는 기존 제방을 허물고	○ 주무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금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임시제방을 쌓아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 ○ 팀장이 자연재난실장에게 보고 하였다는데, 팀장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는지? ○ 팀장이 사건 발생 사실을 어디로부터 전달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수사를 안 한건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등’은 인력과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것을 포괄하는 예시적인 것이라 보는데, 맞는지? ○ 위 같은 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실제 재난위기상황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가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맞추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맞는지? ○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행은 예방 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상황에서 구	강유역환경청으로 알고 있음. ○ 재난 상황 이전의 연락체계에 대하여 보고 받았으나, 참사 후의 연락에 대하여는 보고 받은 바 없음. 진술조사 등에는 적혀 있을 것임. ○ 확인해보겠음. ○ 그러함. 실제 상황에서의 이행을 포함하는지 법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함. 직접 점검하거나 보고를 통해 확인하는 조치를 의미함.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축한 체계의 작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 재난안전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과 12개의 협업기능반을 구성 및 운영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상황관리총괄반은 사실상 운영 불가능한 상태였고, 특히 교통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질서유지반은 미편성 상태였음. 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판단은 왜 달랐는지? ○ 그날의 대응 과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임. ○ 충북 도로과 공무원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도로분야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임무를 방기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구축의무가 불이행된 상태이거나 구축된 안전관리체계의 이행에	○ 궁평 제2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이므로 평상시에 안전보건체계가 구축되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 충북도의 전체적인 재난 체계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과 입법 취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구분하여 적시하였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 도로사업소는 공평제2지하차도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재난과에 공유함. 행동매뉴얼에는 통제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 충북 공무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을 적용하였으나, 도지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음. 경영책임자의 의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지사를 포함하지 않았음. 김영환 지사의 면소에 대한 재검토, 기소유예를 받은 실무 공무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경찰 관련 인물을 조사 중인데, 일선 경찰까지 왜 진행하였는지? ○ 충북도 재난대응 매뉴얼에 초기 대응 지침은 이행된 바 없는데, 제방붕괴와 관련하여 청주시장은 기소하였고, 도로 통제와 관련하여 충북도지사는 불기소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인력확보와 관련하여 청	○ 통제기준과 통제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작동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음.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고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부임하기 전부터 진행중이던 상황이었음. ○ 그렇지 않음. 무죄가 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주시는 관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충북도는 9배나 면적이 넓음에도 관련 인력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함(청주시 국가하천 담당자 4명, 중대재해 담당 인력 1명 / 충북 중대재해팀 인력 3명, 지하차도 관련 중대 시민재해업무 담당 4명). 충북도지사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충북도지사에게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닌지? 사실상 무죄를 전제로 한 기소로 보임.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했다고 보임. 자동 진입차단시설,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충북도공무원은 기소하고 도지사는 안전의무를 다했다며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불합리함. ○ 아리셀사고 판결에서 형량이 15년으로 나오는 등 무거운 처벌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충북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보는지? ○ 검찰에서 불기소 사유를 제시했는데, 해당 사유는 지하차도	○ 현재 고등검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음. ○ 동일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 등으로 생각됨. ○ 작동하여야 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렇게 하겠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라는 물적시설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사유임. 이외에도 인력, 시스템에 관한 책임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음. 따라서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했던 것으로 생각함.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온만큼 이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계획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고, 직간접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침수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자연재해법 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3년에 정기점검이 미 실시된 것으로 파악됨. 이를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는지? ○ 특교 지원 건의서에 보면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풍수해 관련 점검을 했어야 함. ○ 공소장을 보면 충북 관계자들이 참사 당일 미호강 수위를 보고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도지사와 주무관만 누락되어 있음. 회의 주	○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침수 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결론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재자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도지사에게 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 재대본 회의에서 홍수 경보를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 기상특보 확인을 누락한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으면 도지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재대본에 청주시, 소방, 충북도 이외의 기관이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 ○ 청주와 소방은 이미 홍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재대본에 참석했으면 도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 도지사는 재대본부장으로서 정보수집과 판단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도지사 불기소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사적으로 유출된 사실에 관해 질의함.	○ 재대본 회의에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함. ○ 참석하였으나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고발인도 불기소 이후 사유서를 열람할 수 있음. 다만, 원칙적으로 불기소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경찰은 현장파출소 직원부터 충북청장까지 14명이 입건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실장의 출퇴근 사항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잘못된 것 인지? ○ 재난 당시 정상적인 체계가 작동하였는지? ○ 특정인의 기소유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지? ○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이유로 도지사를 불기소 하였으나, 궁평지하차도 통제기준이 매우 형식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임. ○ 도지사가 제방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관리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각 상황을 지휘자가 명확하게 전파하고 상황을 인식하게 하려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검찰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 중대재해법 상 도지사 불기소가 쟁점이라고 생각함. ○ 제방의 실제 지배운영관리주체는 청주시여서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음. 이 부분을 조사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실장이 참사 당일 밤 10시 이후 팀장에게 사전 교통통제와 신고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과장은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 사후 보고체계에 대해 수사했는지? ○ 성훈수 주무관이 이한울 주무관에게 전화한 이후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것인지? ○ 주무관, 과장, 실장의 보고에 관한 진술이 상이함.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임. ○ 이한울 주무관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일에 팀장과 과장이 신고 전화에 대해 알고 있음. 보고체계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지? ○ 무죄용 기소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 국회가 수사와 재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지?	○ 실장이 팀장에게 보고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하였는데, 사후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되어 있음. ○ 사고 발생 이후 보고체계는 실장이 하급자에게 보고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함. ○ 상급자에게 보고가 안된 것으로 수사가 종료되었음. ○ 신고 상황이 있었고, 그 신고가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는 알지 못함. ○ 사후 보고체계는 조사하지 못함. ○ 공소유지하고 주무관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겠음. ○ 방향제시를 강요한다면 그러하나 의견 제시라면 참고하겠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러한 참사일수록 처벌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사후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위법인지?	○ 그러하다고 생각함.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고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법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함. 항고청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7)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사항

(가) 조희승 증인(前 금강유역환경청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하천의 제방관리 측면에서 하천점용에 관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 대응 측면에서 중복의 잘못도 있지만, 직접적 사고원인은 임시둑이 무너진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지?	○ 그것도 중요한 원인임.
○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철거 시 발주청인 행복청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시공사가 무단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지?	○ 맞음.
○ 최근 환경부가 제방절개 시 현장 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나,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령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의 개정 행정규칙은 발주청과 시공사가 환경청에 알리지 않고 절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인 환경청이 즉시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그렇게 생각함.
○ 환경청장에게 실무자 또는 간부가 현장을 자세하게 봐야 하	○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동의하는지? ○ 현장조사 시 안내하는 대로 다니다 보니 사고가 났던 부분은 실무자가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 하천법을 개정해서 환경청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그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공사 내용대로 잘 시행되는지 또는 안전사항이 준수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렇게 파악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 세부기준을 개정하긴 했으나,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나)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재공무원 제도는 13년에 도입되었음. 재난안전실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알고 있는지? ○ 78명의 공무원 중 재난안전직렬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는지?	○ 자세히 알지 못함. ○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전체 공무원 중 안전직렬이 0.3%에 불과함. 공무원 1인당 23개의 읍면동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의견이 있는지? ○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증원되었음에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함. ○ 현장책임자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함. ○ 재난안전 관련해서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이 너무 낙후되어 있음.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할 것 ○ 충청북도 재해대책시스템을 빠르게 복구하고 유가족 대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 법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함. ○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렇게 하겠음.

(다)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하천공사를 하는 부처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공감함.

(8) 피해자·유가족 지원 관련 사항

(가) 조완석 증인(금호건설 대표이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시공사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 사건 당시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오송 일대에서 농경지, 주택, 공장 등에도 막대한 침수 피해가 이루어짐.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금호건설이나 청주시, 행복청 등에서 미리 보상을 한 뒤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수사에 대응하느라 미처 생각지 못했음. ○ 유가족 및 재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스러움. 법적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나)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유가족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주체는 어디인지? ○ 심리지원을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유가족 간담회를 했는지?	○ 지원주체를 어느 곳으로 가릴 필요가 없으며, 청주시도 노력을 했고 충청북도 또한 노력했음. ○ 3차례에 걸쳐 유가족을 만났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및 간담회의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 유가족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담당공무원들이 유가족 지원을 전담함에 있어 감시자처럼 느꼈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지사가 해야하는 역할은? ○ 유가족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예산집행률이 어떠한지? ○ 유가족장례지원, 물품지원, 보상금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잘 된 것 같음. ○ 현재 심리상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유가족의견이 있는데, 현재는 재해확인서로 정신과 치료기록을 갈음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서명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또한 상담지원 시 자부담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음. ○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유가족	○ 못 받았음. 개략적인 내용은 인지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함. ○ 심리치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 등이 있음. ○ 유가족에게 추모비 건립을 약속했으나,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심리치료과정에 의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심리치료 과정에 정신과 의사를 배정했는데, 상담사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지원을 했는데, 유가족이 이를 감시로 느꼈다는 의견이 있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됨 ○ 지금이라도 소홀했던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책임을 져야 할 김영환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유가족 및 생존자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의 만족도가 낮는데,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전담 심리치료 제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 도청 추모비 예산이 도 의회에서 부결되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희생자 추모현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도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오송 참사 분향소 규모가 협소하였으며, 분향소를 49제 기간 중에 기습철거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의료비 비용을 의사의 판단과	○ 면담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효성이 낮은 듯하므로, 보다 노력하겠음. ○ 추모비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모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적절치 않았음. ○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무관하게 공무원이 삭감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유가족에 대한 재난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 무안참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참고해서 오송참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해볼 것 ○ 15일 질의응답 이후 도시자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유가족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데, 도지사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지사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발언할 때 유가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인지?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인지? ○ 추모현판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언제 건립할 것인지?	○ 노력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자리에 배석하는게 좋은지에 대해 확인했고, 유가족을 피한 것은 아님. ○ 참사에 대해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도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도의원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산삭감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지 못했음. 임기 내에 추모비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임. ○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충북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부결한 사실과 당시 회의의 발언 내용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도의회는 도지사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으나 최대한 설득 하겠음.

(다) 이범석 증인(청주시장)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유가족과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왜 그러한지?	○도가 만나고 있었고, 우리는 필요한 지원을 함.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왜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청주에서 유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리치료비를 시와 도에서 50%씩 부담하고 있음.
○예산만 있다고 해서 유가족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족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	○그렇게 하겠음.
○유가족 간담회에 청주시 관련 직원이 아무도 안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석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음.
○유가족 면담을 했는지?	○초반에 면담 등을 했었음.
○청주시장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인지?	○유가족, 생존자에게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음.
○침수지역에 언제 갔는지?	○1시 조금 넘어서 갔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사건 당시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오송 일대에서 농경지, 주택, 공장 등에도 막대한 침수 피해가 이루어짐.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금호건설이나 청주시, 행복청 등에서 먼저 보상한 뒤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극한호우 및 하천제방 유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 김○○ 참고인(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생존자에 대한 모욕과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이 유가족과 생존자의 심리치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피해자에 대한 인원수 파악이 상당기간 제대로 되지 않았음. ○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정신과 치료정보를 공무원이 무단으로 가져감. 기타 지원 역시 행정 편의적이라고 생각함. ○ 치료비 지원 명목하에 의료기관인 정신과로부터 의료 개인정보(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받아감.

(9) 기타 사항

(가) 이동옥 증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행안부 소속 공무원 최초로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충북도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민정비서관의 업무는?	○ 정책현장 청취 친인척관리 특별감찰, 반부패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수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지자체 직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충북도에 간 적도 없음.
○ 김영환지사와 통화한 적 있는 지?	○ 만난 적은 없으나 통화는 가끔 하였음. 대청댐 상류 출렁다리 건설 등 현안 관련 내용으로 통화함.
○ 오송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수사 과정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박연빈검사장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도지사 불기소 당시 오송참사와 관련하여 윤석열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지시한 것이 있는지?	○ 없음.
○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대변인을 의전비서관으로 내정하였었는데, 그 사이에 불기소처분이 나와 이동옥증인이 의전비서관에 임명되었다는 제보가 있음.	○ 부지사 인사는 행안부와 시도에서 협의하여 인사검증 후 대통령이 임명함. 전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한다는 얘기가 있어 후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기존 민정비서관과 다른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검찰 및 경찰 수사를 컨트롤하거나 특별한 지침을 준 적이 있는지?	○ 전혀 없음. 민정비서관실에 검찰 및 경찰이 없었음.
○ 제천 출신으로 부지사로 임명 되셨는데, 부지사 자리를 본인이 원했는지?	○ 행안부 국장 또는 실장이 되면 고향의 부지사 후보가 되며, 부지사 후보로 언론에 오르내린적 있음.
○ 민정비서관에 오송참사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 민정비서관실은 참사 발생후 약 10개월이 지나 구성되어, 관련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김영환 지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 있는지? 김영환 지사가 대통령실을 자주 방문하면서 민정비서관과 자주 만났다고 하는데?	○ 만나적 없음. 김영환 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음.
○ 충북 부지사로 내정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 12월 초중순에 행안부 인사기획관실로부터 후보자가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음. 본인은 2022년부터 이미 여러번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음.
○ 내정 전후로 김영환 지사와 통화했는지?	○ 12월 말 쯤에 부지사로 추천을 하였으니 고향에 와서 열심히 일해보라는 말씀을 하면서 통화한 적이 있음.
○ 부지사를 둘러싼 의혹제기와 관련하여, 팩트 확인 없이 지역 언론인의 입으로 반복적으로	○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음.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음모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박상준 주무관과 이한울 주무관은 행안부로부터 징계대상자로 통보받았는지? ○ 주무관들이 징계 유보 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기소되지 않았는데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 국정조사가 종료되기 전 경위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알지 못함. ○ 재판에 기소되거나 연계된 사람은 유보되었다고 알고 있음. ○ 징계위원회가 재판에 기소되거나 관련되었다는 사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추후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 그렇게 하겠음.

(나) 김남균 참고인(충북인뉴스 기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충북 부지사 내정자 교체는 이례적인 일이었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다시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 언론인들은 현 이동욱 부지사는 2순위 였는데, 1순위와 2순위가 바뀌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음. 윤심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도지사 불기소 결정 직후, 도지사가 불기소 결정은 이동욱 당시 민정비서관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직접 들은 적은 없음. 다만 지역에서 이동욱 부지사가 부지사로 부임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음.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인들의 의구심이 있었음.

(다) 염형철 참고인(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동 참사에 대해서 시민대표로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이유는? ○충북도지사가 궁평 지하철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해서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없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재방이 붕괴된 후 사고대처가 적절했다고 보는지? ○김영환 도지사가 제출한 녹취록 자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정부의 조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여 시민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됨.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듯 함.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금강청 등 4개 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미호천은 홍수에 취약한 지역임. ○비서실에서 인사말씀 등을 녹음한 자료임. 당시 회의를 전체적으로 녹음한 것임. 현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회의 녹취록이 아니라 단순 회의 요약본으로 보여짐.	비서실이 보유 중임.

(라) 김영환 증인(충청북도 도지사)

신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하는지?	○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함.
○ 기관보고 당시 감리단장이 국정조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감리단장이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음.
○ 감리단장은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임. 감리단장과 관련된 발언은 국정조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감리단장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목을 멘 것은 교도소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임.

(마) 최희천 참고인(생명안전시민넷 집행위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있는데 각 실반의 임무와 구성, 임무 등이 부여되어 있음. 재난대책본부 구성시 단톡방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송 참사 당시 그러지 못하였음. ○ 제방 절단 이후 재난 취약지로 지정 및 관리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책임이 부실하였음. ○ 일선 관료들의 책임을 넘어, 시스템의 문제를 일선 관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위

(1) 참사 개요

-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설치했던 임시 제방에 월류가 발생(오전 7시 51분)하여 동 제방이 유실되면서 범람한 미호강의 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는 전체 길이 685m, 터널 구간 430m, 폭 19.3m(왕복 4차선), 높이 4.5m로, 참사 당일 오전 8시 27분부터 해당 지하차도에 물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오전 8시 40분경 완전 침수되었음.
- 참사 당일 1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확인되었으나, 이틀에 걸친 실종자 수색 끝에 최종 14명이 사망하였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7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참사 이후 국정조사 실시 경과

-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및 검찰수사 등이 이루어졌으나,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보다는 ‘붕괴와 침수 현상 자체’에 치중되어 있고, 참사의 원인과 지휘, 책임을 밝히기보다는 하위직이나 실무자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참사 이후 유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2025년 8월 27일 국회는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 국회 의결에 따라 2025년 8월 27일 국정조사가 개시되었고, 2025년 9월 25일까지 3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음.

2.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

(1) 미호강 임시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문제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임시 제방의 월류 및 유실이 발생하고, 범람한 물이 지하차도에 차오르면서 발생한 참사로, 아래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강의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 발주청으로서, 설계에 반영된 기존 제방 철거 공정에 후속하는 임시 제방 설치 등 홍수기 안전 대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금호건설) 설계에 따라 기존 제방을 일부 철거하였으나, 법정 기준(30.52m)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제방(29.63m)을 축조하여 월류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참사 당일 미호강 수위는 29.87m).
-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제방 철거는 시공사의 독단적인 '무단 절개'가 아닌 '계획된 공사'인 것으로 보임. 하천점용허가 기관으로서, 설계에 반영된 기존 제방 철거가 하천 안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점검 계획을 제시해야 함에도 선제적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음.
- (충청북도) 참사 발생 이전에 핵심적인 안전 사항이 누락된

하천관리 점검을 실시하거나 풍수해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청주시) 기존 하천 제방의 절개 등 하천 관련 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지 않았음.
- (위 기관 공통)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해 대비 회의 등을 진행한 바 없음.
- 다만, 관련 기관의 장의 법적 책임 유무 및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의 진술이 상호 배치되는 등의 측면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임.
- (前 행복청장 이상래 증인)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발주청은 행복청이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고 진술함.
- (前 환경부장관 한화진 증인) 임시 제방은 안전점검의 대상으로 하천의 유지·보수 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진술함.
- (충북도지사 김영환 증인) 미호천이 해방 이후 범람하거나 월류한 경우가 없었고, 임시 제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함.
- (청주시장 이범석 증인) 국가하천인 미호강의 하천관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이고,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천공사가 끝나서 준공 고시 이후 이관

되었을 때만 청주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고 진술함.

-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수해 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 「하천법」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는 하천관리 점검을 해왔고, 미호천교 확장공사 및 하천정비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2022년 및 2023년 모두 화장실, 수목 등 핵심적인 안전 사항 외의 것만을 점검하고, 동일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인용하여, 충북도지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도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 기소된 청주시장과 달리 충북도지사가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조항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충북도지사가 위반했다는 의견과 제1호의 의무 위반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

라도 동 조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공소 사실과 비교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현재 충북도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고소인들의 항고 절차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절차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차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힘(검찰총장직무대행 노만석 증인).

(2) 미흡한 전파·보고체계와 지하차도 통제 미 실시 문제

-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임시 제방의 유실로 범람한 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시키 전에 해당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전, 관련 사항에 대한 주요 전파 흐름]

전파 주체	전파 대상	전파 내용
금강홍수통제소	→ 경찰청 등 67개 기관	홍수경보 발령 (계획홍수위 70% 도달)
	→ 청주시(흥덕구)·행복청 등 5개 기관	하천범람 위험수위 (계획홍수위 100%) 도달 전파 * 흥덕구청 유선 전파
(주)이산 감리단장	→ 청주시(민원콜센터) 최초 신고	주민대피 필요성 전파
	→ 행복청(광역도로과 주무관)	미호강 상황 전파
	→ 경찰(112)	주민대피 필요성 전파
前 행복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미호강 상황 전파, 주민대피 및 교통 통제 필요성 전파 * 충청북도 네 차례 전파
	→ 청주시	
	→ 흥덕구	
	→ 오송읍	
주민	→ 경찰(112)	궁평지하차도 통제 필요
소방당국	→ 청주시	임시제방 유실 미호강 범람 전파

(자료 : 기관별 보고자료 및 국정조사 질의·답변 내용 취합)

※ 참사 당일(23.7.15.) 04:10 ~ 08:10 사이에 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전파 흐름만을 제시함.

- 전파 흐름과 관련하여 금강홍수통제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아닌 흥덕구에 유선으로 전파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수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홍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흥덕구에 알렸다고 진술함(금강홍수통제소장 조효섭 증인).
-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과 그에 따른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권한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위와 같이 해당 상황이 전파되었으나, 보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었음.

- 참사 발생 전에 미호천 범람 위험이나 주민대피 필요성에 대해 충북도지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 질의가 있었는데, 참사 이전에 관련 정보 전달 및 보고를 들은 바가 없으며, 참사 직후 오전 9시 44분 경에 비서실장으로 부터 처음 참사 소식을 인지했다고 진술함(충북도지사 김영환 증인).

- 최초 前 행복청 광역도로과 주무관 성훈수 증인이 네 차례 걸쳐 전파한 내용을 접수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으로부터 충북도지사까지의 보고 여부 또는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해당 전파가 ‘상황을 알고 있으라’는 취지로 이루어져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고(충북도지사 김영환 증인), 전파한 내용을 접수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은 세 차례 전화를 받았으나 ‘미호강 범람 위험이 있어 이를 청주시와 경찰에 알렸고 충청북도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통화하여 언급된 기관에서 초동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이한울 증인).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상황을 전파한 성훈수 증인은 ‘상황을 알고 있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 주민대피와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청북도에 전파하는데 취지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충청북도 자연재난과로 접수된 참사 직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사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충북도지사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자연재난과 이한울 주무관에게 접수된 재난 상황이 보고체계를 따라 보고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음(前 청주지방검찰청 수사본부장 박영빈 증인).
- 추가적으로 참사 당일 오전 6시 20분부터 이루어진 재난상황 대책회의 중에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었음(前 충청북도재난안전실장 박준규 증인).
-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참사 직전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내용이 충북도지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맞는지 에 대한 의혹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충청북도 중간관리자들과 달리 최초 전파 내용을 접수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무관을 기소유예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위와 같이 임시제방의 유실에 따른 미호강의 범람 사실과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전파 및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궁평2지하차도의 통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침수이전에 해당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등을 통제하는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침수가 시작될 당시 CCTV 등을 통한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설치된 CCTV 6대를 통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직원이 출발하여 25~30분 후에 도착하였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해당 시간 동안 별도의 궁평2지하차도 진입 통제나 교통 통제는 실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확인 이후 별도의 경찰에 대한 신고나 협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었음 (前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석식 증인).
- 재난상황대책회의에서 기상특보를 점검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계획홍수위를 점검하는 등 매뉴얼 상의 조치를 취했다면 궁평2지하차도 도로통제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 문제

①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대책 미흡

- 임시제방의 월류가 발생하여 범람한 미호강과 침수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와 관련하여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음.
- (미호강 관련) 2023년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는 홍수취약지구

일제조사가 진행하였는데, 제방절개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2021~2023년 기존 제방이 절개된 미호강을 충청북도가 홍수취약지구로 제출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궁평2지하차도 관련) 2023년 충청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 풍수해 대비 집중 관리 터널·지하주차장에 궁평2지하차도를 표기하고 있으며, 직전연도인 2022년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면서 궁평2지하차도 진입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에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에 취약한 위험도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②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미비한 대응

-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2023년 7월에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 대처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23.7.9.~7.27.)이었고, 참사가 일어난 7월 15일 이전인 7월 13일 20:30부로 중대본 대응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었으나, 참사 직전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대응도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충청북도) 참사 전날 최고 단계의 비상근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충청북도 재난대책본부에 전파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을 벗어나지 않고 재난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여 모든 재난 대응 업무를 통제해야 했다는 의견이 있었음(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증인).

- 이에 대해 충청도지사가 관할로 복귀한 참사 전날 오후 11시경 이루어진 충청북도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미호강 인근 궁평2 지하차도 관련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당시 기상 상황이나 도내 주요 댐 관리 등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음(前 충청도 재난안전실장 박준규 증인).
- (청주시) 참사 직전 미호천교 인근에 설치된 CCTV(1대)와 관련하여 청주시는 홍수경보 및 계획홍수위 도달 전파에도 불구하고 미호천 방향으로 해당 CCTV를 점검하지 않아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1)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체계 개선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재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상황이 보고되는 과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방 대응이 지연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충북도지사에게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도 미호강의 범람, 궁평2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의 필요성이 보고되지 않았고, 충청북도의 재난 상황 전파에 대한 보고체계가 미흡했다고 진술함(충북도지사 김영환 증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해당 망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재난 상황의 긴급 전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관 간 통화가 전체 통화시간 대비 0.9%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기교신 여부를 점검하는데 활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과 관련한 훈련·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간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반복·연속된 재난 신고에 대한 감지 및 신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고전화의 경우 해당 통화
에 대한 녹음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게 사전에
정해진 유관 기관에게 재난안전통신망, SMS, 유선 등 여러
수단을 중첩적으로 활용하여 전파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및 유관
기관별로 최초 신고 이후의 재난 대응을 위한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집중호우·홍수로 인한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오송 지하철도 참사와 같이 집중호우·홍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사까지 이르는 과
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하천의 범람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책
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호강에 대해서 환경부, 충청북도 등 관련 기관은 제방 유실로 범람한 구간이 하천관리 취약구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참사 이전에 화장실과 수목만을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동 법령에 따르면 하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책무가 부과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점검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되어야 함.
- 집중호우 등 지하차도 통제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명확한 통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에게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일정한 강우 수준을 기준으로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하차도 침수심 통제 기준과 관련하여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가 기준의 상한을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재난 예방·대응 과정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들의 권한이나 관할이 중복되거나, 관련 법령들에서 각기 권한 및 관할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 기관이 필요한 역할 수행을 회피하거나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하천법」의 경우,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 주체를 하천관리청으로 정하고 있는데,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를 위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일정한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하천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혼선을 빚어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미호강 하천 폭 확대를 위한 하천정비공사(‘하천공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된 상황에서 ‘하천공사’에 대한 하천관리청은 환경부장관이고 하천공사가 끝나서 준공 고시가 된 이후 이관되었을 경우 충북도지사로부터 재위임을 받은 청주시장에게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고(청주시장 이범석 증인),

이에 대비하여 ‘하천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하천의 유지·보수 주체는 지자체(청주시)임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는 답변(환경부차관 금한승 답변), 하천의 유지·보수에는 안전점검이 포함되고 미호강의 임시 제방은 안전점검의 대상이므로 지자체에 관리 책임이 있으며 현행법 상으로 충북도지사의 소관인데 조례에 의해 청주시장에게 재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음(前 환경부장관 한화진 증인).

- 따라서, 미호강 하천 폭 확대를 위한 하천정비공사(‘하천공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하천공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관리 책임이 유지되고 준공 후에야 시·도지사로 이관되는지 혹은 시·도지사가 ‘하천의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 소재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사의 선행적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확장공사 중의 기존 제방의 절개 및 부실한 임시제방의 축조와 관련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법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됨.
- 참사 이후 환경부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기존 하천 제방의 절개 및 임시제방의 축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향후 유사한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의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또한,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설계도에만 반영되고 허가 신청서에서는 명시되지 않은 제방 절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설계도 및 신청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사 당시 지하철도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에 비추어 재난 상황 시에 도로 통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임.
- 궁평2지하차도 진입 통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로법」에 의하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도지사)에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경찰에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진술이 있었음(前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석식 증인).
- 「도로법」은 천재지변 시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재난 상황 하에서 도로의 교통 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각 법률에서 중복·중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호 책임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4) 기타 사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관련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기금에 전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등을 실질화하여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신속하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훈련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를 실질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대상기관별로 재난 대응 체계의 설계·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현행 제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를 평가 대상으로 하여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평가 결과 산출에 있어 정성적인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 재난관리역량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재난원인조사와 추후 재난백서 발간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동 법에서는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연계하여 백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재난백서의 경우 그 조사 또는 작성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되어야 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지고, 재난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국회의 역할이 필요함.
 - 유가족 간담회 시 재난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참사 유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음(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 발언).

- 한편, 시민사회 측면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 전반적인 안전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오송지하차도참사유가족 발언).

4.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1) 피해자 및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지원 필요

-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의견을 경청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참사 이후 충북도지사는 유가족을 세 번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청주시장은 유가족을 한 번 만났다고 진술함(김영환·이범석 증인).
-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유가족 대표는 충청북도는 추모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고, 청주시에서 마련한 전담 직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발언함.
- 또한,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공사(금호건설) 역시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비롯한 지원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한편, 현재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오송 지하철도 참사 관련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및 유가족의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한 경청과 의견 수렴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임.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일 오송 지하철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힘(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증인).

- 또한,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추모 현판 관련)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북도지사가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현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추모비 관련) 도청에 희생자 추모비를 설립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충북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충북도청에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설립이 어려워진 상황임.
- 추가적으로, 참사 유가족 외에 참사로부터 생존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의 소통 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려는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추모 현판, 추모비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모두 필요함.

(2)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참사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임.

- 피해자 및 유가족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내용과 적절한 방식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가족 간담회 시 유가족 대표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심리지원을 바라며,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등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자격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발언함.
- 특히 피해자 심리지원 결과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광역 심리 지원센터(충청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공주에 소재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증인).
- 또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각각 유가족 등의 심리치료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내용이 유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아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과 상담 지원의 경우 자부담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재검토하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참사로부터 생존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리상담 및 치료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시 현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한 국회·정부의 역할 수행

- 유가족 간담회를 통해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국회·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관련) 피해자 및 유가족 입장에서 가해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3의 기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법제화 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 관련) 오송 지하철도 참사 당시 분향소, 장례 절차가 유가족의 몫이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참사에 대해서 지원 관련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시정·처리요구 사항

(1)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 관련

- (조사대상기관 공통)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각 기관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심각한 바, 각 기관은 이번 참사의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참사에 이르게 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도로확장공사 관련 기존 하천 제방의 절개 및 임시 제방의 설치·관리, 전반적인 미호강 하천 관리, 지하차도 진입 통제,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등 본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참사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대검찰청) 본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재수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함.
- 참사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위 등에 대해 다수 질의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를 접수한 충청북도 자

연재난과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 전파를 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를 알고 있다는 진술 등 전파 및 보고와 관련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한편, 위의 문제 제기가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기소 당위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유가족 등 고소인들의 항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동 절차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재발방지 대책마련 관련

- (조사대상기관 공통) 각 기관은 향후 유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송 지하철도 참사에 대한 재난원인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와 함께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보고할 것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 (정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본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대책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계획 및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이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4) 기타 사항

- (소방청)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 금호건설) 참사가 발생한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6. 위증 및 불출석등 고발의결사항

(1) 위증고발 관련사항

성명	직위	주요 고발사유
김영환	충북도지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등의 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의 제방 절개는 검찰 공소장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되어 명백한 허위 진술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으나,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가 갖고 있는 미호강 관련 유일한 CCTV는 충청북도 재난상황실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궁평2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도로사업소 CCTV도 사고 당일 8시 35분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심지어 즉시 충북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허위 진술임 - 9월 10일 기관보고에서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고...”라고 주장했으나, 9월 1일 행안위에서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충북도가 제출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2건으로서 명백한 허위 진술임

(2)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사항: 해당 없음

7. 기타 논의사항

- 재난 예방·대응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인력 확보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의 배치 등 전반적인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하여 입법 취지 및 문언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